

目 次

第 1 篇 西大門區 沿革 及 現況	25
■ 西大門區 沿革	27
■ 西大門區 現況	29
■ 文化財 現況	31
第 2 篇 西大門區 議會 院構成	33
■ 區議會 開院過程	35
■ 機構 及 組織	37
■ 西大門區議會 院構成	38
第 3 篇 本 會 議	47
■ 第1回 臨時會	49
■ 第2回 臨時會	53
■ 第3回 臨時會	63
■ 第4回 臨時會	65
■ 第5回 臨時會	77
■ 第6回 臨時會	84
■ 第7回 定期會	91
第 4 篇 特別委員會 會議	119

▣ 豫算決算 特別委員會('91 追更)	121
▣ 請願審查 特別委員會	126
▣ 監查 特別委員會	130
▣ 豫算決算 特別委員會('92 本豫算)	149
▣ 條例審查 特別委員會	160
第5篇 議政活動 및 行事	163
▣ 初代議員 當選 記念植樹	165
▣ 區議員, 區廳幹部 交禮會	166
▣ 議政세미나 開催	167
▣ 其他 活動 및 行事	168
第6篇 現況 및 統計	171
▣ 議會 施設	173
▣ 基礎議會 議員選舉	174
▣ 集會 및 會期	176
▣ '91議案 處理狀況	178
▣ 陳情書 處理	183
第7篇 議員主要經歷	185
附 錄 議會關聯諸規定	195

第 1 篇

西大門區 沿革 及 現況

▨ 西大門區 沿革

▨ 西大門區 現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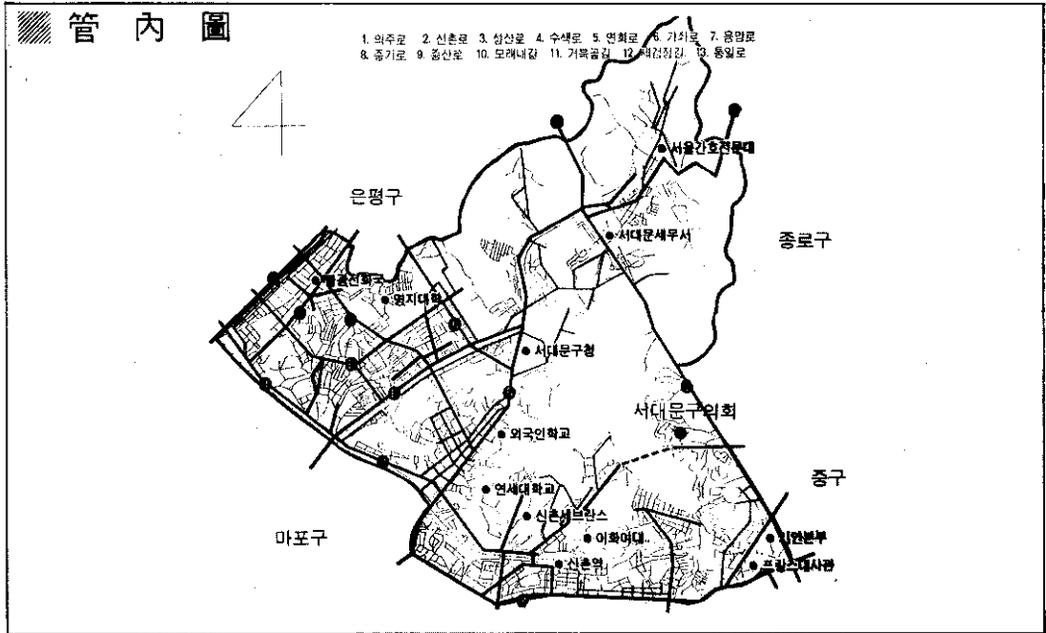
▨ 文化財 現況

— 西大門區 沿革 —

年 月 日	根據法規	變 遷 過 程
石器 時代		○ 部族끼리 群落集團生活 (新村에서 發煙性 黑曜石 및 玉髓石器 等 遺物이 發見됨)
三國 時代		○ AD 553年 新羅 新州에 編入
統一 新羅		○ AD 668年 漢山州에 編入
高麗 時代		○ AD 983年 陽州에 編入
朝鮮 時代 (李太祖 3年)		○ 漢城府의 5部中 西部에 속하고 廳舍所在는 瑞麟坊(現 鍾路區 瑞麟洞 附近)이었다.
1940. 7. 1		○ 京城府 西部出張所 設置—58個洞 管轄
1943. 7. 1		○ 區制實施의 前提로 京城府 西大門事務所設置 事務所 所在地는 京城府 蛤田 27番地였다.
1943. 6. 10		○ 區制의 實施(府와 町의 中間機關) 京城府에 7個區(中區, 鍾路區, 東大門區, 城東區, 西大門區, 龍山區, 永登浦區)設置 西大門事務所를 西大門區 役所로 改稱
1944. 10. 23	總督府令 第350號	○ 麻浦區役所 新設(23個町 管轄) — 京城府 8個區
1945. 10. 16		○ 西大門區役所는 35個町 管轄
1949. 8. 13	大統領令 第159號 第161號	○ 西大門區役所를 西大門區로 改稱 (初代 區廳長 任命) ○ 京畿道 高陽郡 恩平面, 延禧面 18個里 (恩平面 11里, 延禧面 7里 面積 46km ²)를 西大門區로 編入—53個洞 管轄 恩平出張所 設置—18個里 管轄

年 月 日	根據法規	變 遷 過 程
1964. 6. 1	法 律 第 1640號	○ 行政區域 變更으로 西大門區 老姑山洞斗 大峴洞 一部 地域이 麻浦區에 編入되고 麻浦區 阿峴洞 一部地域이 西大門區로 編入
1973. 7. 1	法 律 第2596號 大統領令 第6548號 市 條 例 第748號	○ 京畿道 高陽郡 神道面 舊把撥里, 津寬內里, 津寬外里를 西大門區에 編入 麻浦區 阿峴洞 一部地域이 西大門區로 編入 ○ 麻浦區 東橋洞, 西橋洞 各 一部가 西大門區에 編入 ○ 津寬洞 新設(41洞→42洞)
1975. 10. 1	大統領令 第7816號	○ 區 管轄區域 變更 － 西大門 一部를 鍾路, 中區, 麻浦, 龍山에 編入 － 麻浦區 東橋洞 一部를 西大門에 編入
1979. 10. 1	大統領令 第9360號	○ 恩平區 新設로 西大門區에서 分區됨 (碌磻洞 外 12個洞 恩平區 管轄)
1983. 12. 1	市 條 例 第1814號	○ 現 行政區域

西大門區 現況



地域特性

西大門區는 東經 126° 와 北緯 37° 에 位置한 比較的 溫暖한 地帶로서 서울特別市 鍾路區 萬歲門 碑閣 道路元標로 부터 半徑 5km내에 位置하며 主部分이 林野地, 分地, 丘陵의 三地域으로 大別할수 있으며 林野地는 仁旺山(338m) 鞍山(296m) 等 諸峰이 '우뚝 솟아있어 弘恩, 弘濟地區의 盆地를 이루고 있다. 連延한 溪谷一帶에는 自然의 調和와 아울러 山地秀麗한 仙境을 이루고 漢江을 向하여 서서히 減하고 있어 이는 區全體의 1/3을 차지하고 있으며 洗劍川을 元流로 흘러 내리는 弘濟川과 佛光川(延署川과 碌磻川)은 漢江을 向해 나란히 흐르고 있다. 西大門區는 대체적으로 平原은 거의없고 地域住民의 大部分은 山脈, 支峰, 麓下의 丘陵地帶에 發達 形成되었다.

都市機能의 多核化 現象으로 住宅地로 부터 業務文化 中心地로 탈바꿈하는 忠正地域과 商業, 流通, 教育의 副道心役割을 擔當한 新村地域, 住民中心의 加佐地域, 住民商業中心의 弘恩地域 등으로 西大門區의 生活圈이 多核으로 發展되고 있다.

區政與件

- 人口數 …… 127,136 家口 392,586名(市全體의 3.9%)
- 面積 …… 17.7km²(市 605.4km² 全體의 2.9%)
 - 住居地域：15.8km²(89.3%)
 - 商業地域：0.2km²(1.1%)
 - 綠地地域：1.7km²(9.6%)
- 住宅 …… 62,219戶(普及率 48.9%)
 - 單獨住宅：41,172戶
 - 共同住宅：21,047戶
- 行政區域 …… 22洞 589統 4,696班
- 組織與人力
 - 3室 5局 27課 86係 22洞 1保健所
 - 1,354名(區 679, 保健所 77, 洞 598)

文化 福祉施設

- 教育施設 …… 56個所(國校 18, 中·高 29, 大學 9)
- 社會福祉施設 …… 74個所(老人亭 47, 어린이집 17, 其他 10)
- 醫療機關 …… 277個所(綜合病院 2, 一般病院 8)
- 文化財 …… 8個所(獨立門, 神道碑 等)

財 政：1991年度

【總規模 521億】

- 一般會計……………507億 ('90年度 對比 23% 增加)
 - 歲入：自體收入 215億 依存收入 292億
(財政自立度 42.4%)
 - 歲出：一般行政費 223億, 社會福祉費 138億, 地域開發費 127億
其他 19億
- 特別會計…………… 14億 ('90年度 對比 14% 減少)

— 文化財 現況 —

區 分	指定番號	文 化 財	位 置 및 住 所
史 蹟	第 32 號	獨 立 門	獨立門 公園
史 蹟	第 33 號	迎恩門 柱礎石	上 同
史 蹟	第 275 號	스팀슨 홀	延世大學校內
史 蹟	第 276 號	언더우드 홀	上 同
史 蹟	第 277 號	아펜젤러 홀	上 同
有 形 文化財	第 17 號	普渡閣 白佛	弘恩2洞 8番地 (옥천암 앞)
有 形 文化財	第 41 號	花山君 神道碑	北加佐2洞 75番地 122號
有 形 文化財	第 68 號	奉元寺 大雄殿	奉元寺 境內 (’91年10月 火災로 燒失)
無 形 文化財	第 48 號	丹 靑 (만봉 이치호 스님)	奉元寺
無 形 文化財	第 92 號	太 平 舞 (강선영 씨)	弘濟洞 330番地
無 形 文化財	第 86 號	문 배 주 (이경찬 옹)	延禧洞 81番地 31號
無 形 文化財	第 50 號	영 산 재 莊 嚴 — 정지광 스님 梵 貝 [박희덕 스님 김구회 스님 作法舞 — 이재호 스님 梵 樂 — 장태남 스님	奉元寺

第 2 篇

西大門區 議會 院構成

▨ 區議會 開院過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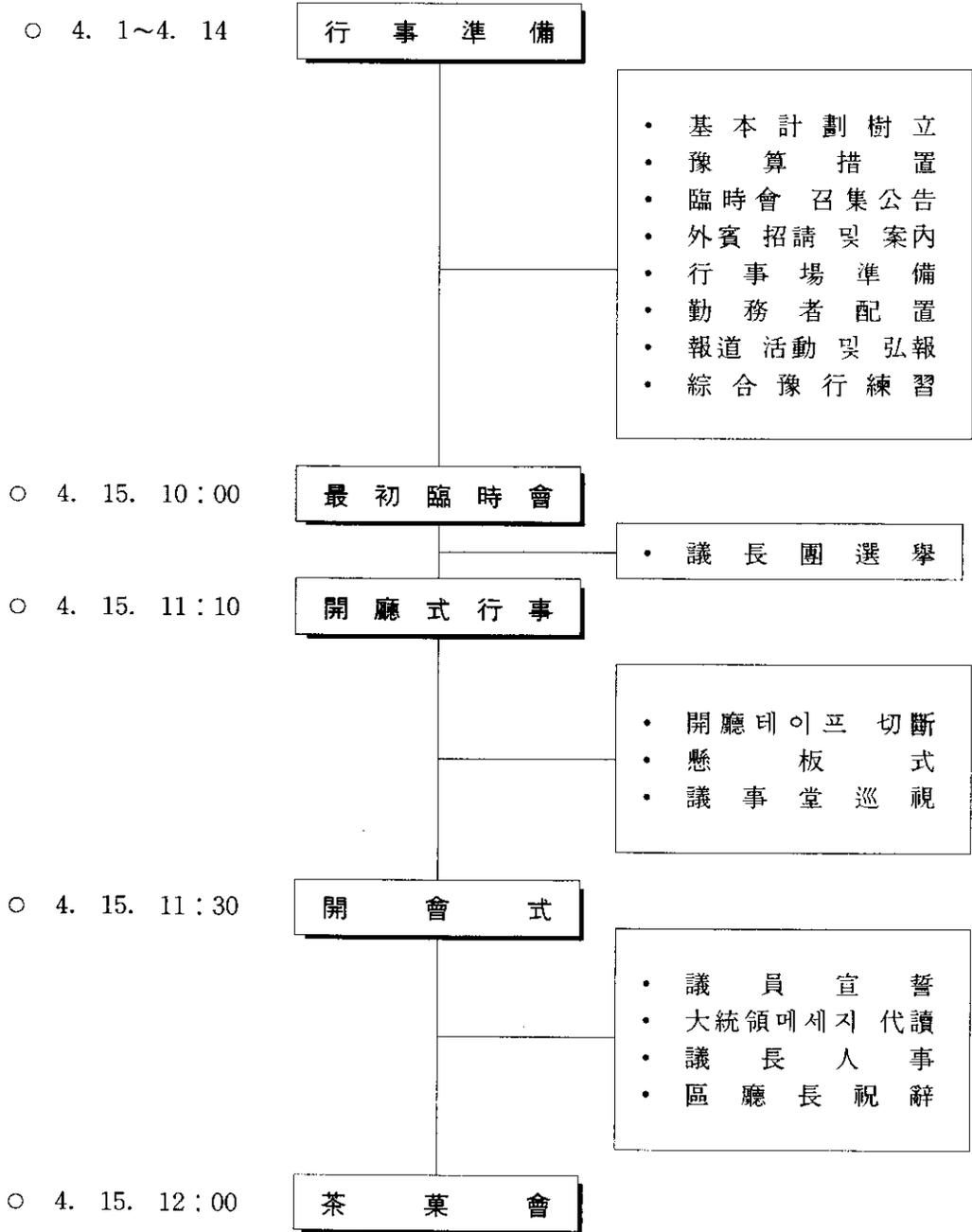
▨ 機構 及 組織

▨ 西大門區議會 院構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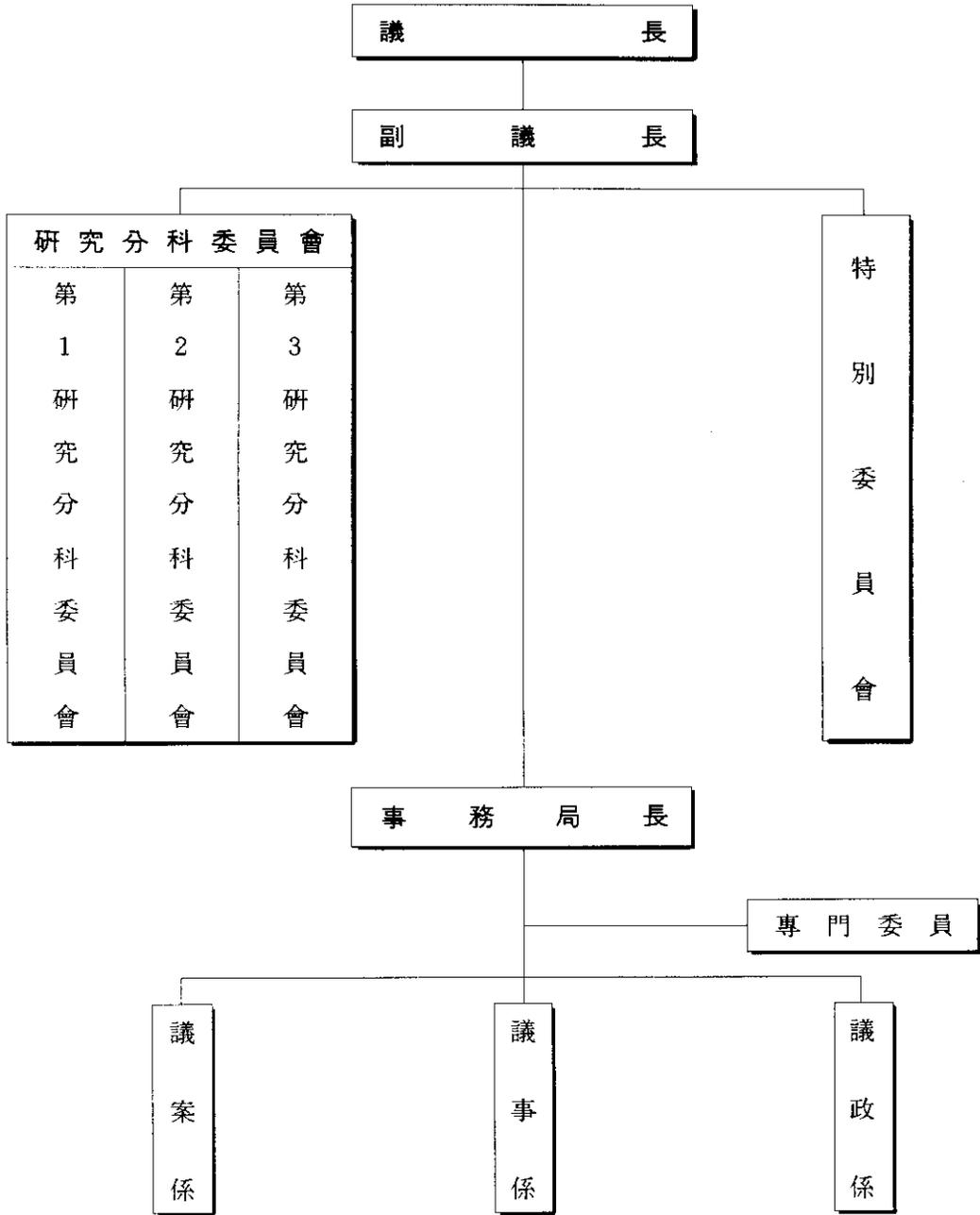
區議會 開院過程

年 月 日	推 進 內 容
1990. 1. 24	西大門區 峴底洞 山 5-5 區議會議事堂 確保를 爲한 保健所 廳舍 增 築 決定
1990. 3. 26	區議會 議事堂 着工
1990. 12. 26	區議會 議事堂 竣工
1990. 12. 27	區議會 開院 推進班 構成 諸 準備 着手
1990. 12. 31	與, 野의 合意로 國會에서 地方自治法 改正 公布
1991. 3. 8	基礎地方議會 議員選舉 公告
1991. 3. 13	基礎地方議會 議員選舉 立候補者 登錄 마감
1991. 3. 26	基礎地方議會 議員選舉(投票)
1991. 3. 27	當選人 決定 및 公告
1991. 3. 30	區議會 議事堂 內部施設 完工
1991. 4. 3	當選人 登錄
1991. 4. 12	議事堂周邊 造景工事完了
1991. 4. 15	西大門區議會 開院 및 最初 臨時會議 開議

開院推進節次



機構 及 組織



西大門區議會 院構成

西大門區 議會 議員 登錄

- 登錄期間：1991年4月1日~4月3日(3日間)
- 接受場所：西大門區議會事務局
- 登錄書類：登錄申請書外8種
- 登錄狀況：當選者29名 全員登錄完了

開 院

集 會 公 告

- 集會公告日：1991年4月9日
- 開會日時：1991年4月15日10:00
- 集會要求者：西大門區廳長孫長鎬
- 集會根據：地方自治法第39條第1項

議 長. 副 議 長 選 舉

- 投票日時：1991年4月15日10:10~11:07
- 投票方法：無記名投票
- 投票結果
 - 議 長：鄭田村議員(滄川洞)
 - 副議長：金銀天議員(弘恩3洞)

▨ 開 廳 式

- 日 時 : 1991年 4月 15日 11:10
- 場 所 : 廳舍 현관 앞마당
- 經 過 報 告 : 議會事務局長 全 萬 鎮
- 테 이 프 切 斷 : 10名
 - 〔 議長, 副議長, 議員2,
 - 區廳長, 國會議員2, 警察署長, 區政諮問委員長, 老人會長
- 懸 板 揭 添 : 議長, 區廳長

▨ 開 會 式

- 日 時 : 1991年 4月 15日 11:30
- 場 所 : 本會議場

【議員 宣誓】—議長 先唱

本議員은 法令을 遵守하고 西大門區民의 權益과 福利를 增進하며 區政의 健全한 發展을 위하여 議員의 職務를 성실히 遂行할 것을 西大門區民 앞에 嚴肅히 宣誓합니다.

1991年 4月 15日 西大門區議會 議員 一同

經過報告 要旨

- 1990年 1月 24日 當時 西大門區 峴底洞 산5-5番地 現位置에 新築中이던 保健所 廳舍를 增築기로 決定
'90年 3月 26日 區議事堂 新築工事を 着工하여 施工 9個月만인 '90年 12月 26日 竣工
- 1990年 12月 31日 與 野 合意로 地方自治法이 改正·公布되어 '91年 6月 30日까지 基礎地方議會를 構成토록 함에 따라 開院準備 推進
'90年 12月 27일부터 '91年 3月 30日까지 議事堂 內部施設工事を 完了
'91年 4月 4일부터 4月 12日까지 議事堂周邊 造景工事を 끝냄으로써 모든 西大門區議會 開院準備 完了
- 區議會議事堂 確保에 所要된 豫算은 總 4억 6천 2백만원으로 建物增築工事に 3억원, 放送音響施設 等 內部施設工事に 1억 5천만원, 周邊造景工事に 1천 7백만원이 所要
- 區議會議事堂은 延 建坪 312坪으로서 地下1層, 地上4層 規模로 建立된 西大門區 保健所 廳舍中 3, 4層을 使用
- 主要施設로서 3層에 小會議室, 議員室, 議長室, 副議長室, 事務局事務室이 갖추어져 있고 4層에 本會議場, 傍聽席, 議員休憩室, 資料準備室 等の 施設을 갖추고 있음.
- 敷地確保가 困難하여 專用議事堂을 建立하지 못하였으나 이곳에 마련된 區議會 議事堂이 앞으로 地方自治 時代에 副應하고 40萬區民을 위한 議政活動의 보금자리와 사랑방으로서의 그 機能을 다할것을 確信함.

(市. 郡. 區議會 開院에 즈음하여)

오늘 區議會의 歷史的인 開院을 祝賀합니다.

30년만에 다시 地方自治의 時代를 열게 된 것은 온 國民의 기쁨이며 보람입니다.

우리나라 選舉史上 가장 깨끗하고 公明한 選舉에 의해 議員 여러분이 選出된 것은 여러분의 矜持일 뿐 아니라 地方自治의 밝은 앞날을 期約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區부터 住民이 選出한 議會를 構成함으로써 진정한 民主主義를 實現할 確固한 바탕을 마련했습니다. 저는 區議會가 住民의 여망에 副應하는 活動을 펼쳐 나감으로써 民主主義를 굳건히 뿌리내려 주기를 期待합니다.

우리 國民은 새로 出帆하는 區議會가 地域의 發展과 住民의 福祉를 實現하는 진정한 代議機構가 되어 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議員 여러분의 獻身的인 努力으로 住民으로부터 신뢰받는 自治行政을 具現하고 地域 共同體의 和合을 다져 民主發展의 새로운 章을 열어주기 바랍니다.

地方自治는 住民의 參與속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國民 여러분께서도 여러분 고장의 議會와 그 일꾼들이 많은 일을 誠實히 할 수 있도록 聲援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員 여러분과 區議會의 훌륭한 活動으로 오늘이 진정한 地方自治의 時代를 연 날로 記錄될 것으로 確信하면서 議員 여러분의 健勝을 祝願합니다.

1991年 4月 15日

【議 長 開 會 辭】

尊敬하는 西大門區議會 同僚 議員 여러분
우리는 오늘 第1代 西大門區議會의 開院을 위하여 여기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는 憲法과 地方自治法에 依據하여 構成된 西大門區議會가 우리區의 區民은 물론이요, 온 國民의 關心과 큰 期待속에 住民 代議政治의 새로운 章을 여는 歷史的인 자리인 것입니다.

本 議員은 이 歷史的인 第1代 西大門區議會 議長으로서 開會辭를 하게 된 것을 크나큰 榮光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앞에 住民自治의 創造的 役割과 時代的 使命感으로 尊敬하는 同僚議員 여러분과 同居同樂하게 된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며 우리를 이곳에 보내주신 西大門區民 앞에 깊은 感謝를 드립니다.

尊敬하는 同僚議員 여러분!

여러분 한사람 한사람이 眞實로 區民의 權益과 福利를 위하여 머리를 맞대고 함께 할때 우리 區民들은 우리 모두를 眞實한 奉仕者로 判斷하실 것입니다.

親愛하는 同僚議員 여러분!

內外的으로 매우 重要한 이時期에 여러모로 不足한 本人이 議長의 職務를 올바로 行할수 있고 없고는 오직 同僚議員 여러분의 뜨거운 支持 與否에 달려 있으며 特히 議員 여러분의 높은 經綸에 依支하는 바가 큼니다.

第1代 西大門區 議會 議員으로서 우리 區民에 대한 우리의 責任은 실로 莫重하며 그 責任은 서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議員여러분과 全 區民에게 恒常 神의 加護가 있기를 衷心으로 祈願하면서 開會辭를 맺고자 합니다.

感謝합니다.

【區廳長 祝辭】

尊敬하는 區議會議長, 그리고 議員 여러분!

지난 3月 26日 選舉에서 區民의 絶對的 支持를 받고 當選되어 우리 西大門區 初代區議會 議員이 되신 여러분에게 40萬 區民과 함께 眞心으로 祝賀드리며, 初代區議會를 開院하는 이자리에 區廳長으로써 祝辭를 하게된 것을 榮光으로 생각하며 감개무량함을 禁치 못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西大門區 地域살림을 함께 이끌어 갈 區議會가 開院하는 뜻깊은 날 입니다.

區議會的 開院을 始作으로 地方化時代는 더 한층 우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地方化時代를 맞아 地方自治가 제대로 定着되기 위해서는 中央權限의 地方移讓과 財政擴充 等 여러가지 要件도 必要하지만 眞正 必要한 것은 地域 住民 스스로가 내고장 發展이 나에게 달려 있다는 透徹한 主人精神과 責任意識인 自治意識의 涵養입니다.

住民의 意識속에 이러한 精神을 심어 주실 분은 바로 이자리에 계신 區議會議員 여러분이십니다. 우리는 지금 30年間 中斷되었던 地方自治制를 다시 出發시키는 歷史의 重要한 轉換點에 서 있습니다.

民主主義의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 점을 다시한번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地方自治가 풀뿌리 民主主義라면 窮極의인 主人은 地域住民이며, 住民의 代表인 議員여러분은 民主主義의 풀뿌리가 잘 자라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民主主義는 저절로 되는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것이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슬기와 힘으로 이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來日의 問題가 아니고 오늘의 問題이며, 다음 世代의 問題가 아니라 바로 우리 現 世代의 責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課業은 어느 特定人의 힘이나 어느 特定集團의 偏見的인 외침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스스로 實踐하고, 責任을 다할때 完成되리라 생각합니다. “白紙 한장도 맞들면 낫다”는 格言을 새삼 생각해 봅니다.

더불어 함께 잘사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모아서 研究하면 檢討하고 實踐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議員 여러분들의 經綸과 高見에다 우리 區廳 公務員들의 行政經驗을 함께 하여 올바른 方向으로 이끌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議員 여러분!

여러분께서 이미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區는 오래전에 마을이 形成된 歷史와 傳統을 가진 뿌리깊은 고장이며, 鞍山과 白蓮山 그리고 仁旺山의 精氣가 서린 살기 좋고 아름다운 고장입니다.

名門大學인 延世大, 梨花女大 등 56개의 各級學校가 所在하는 教育, 文化의 中心地이기도하며, 自主獨立精神의 象徴인 獨立門이 있는 歷史의 산고장이기도 합니다.

우리區 1천여 全職員은 一致團結하여 이 地域을 더욱 살기 좋고 快適하며, 아름다운 고장으로 만들기 위해 努力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複雜한 現代社會의 多樣해진 區民의 欲求에 副應하기 위해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열심히 奉仕하고 있음에도 풀리지 않는 難題들이 쌓이는 것

이 오늘의 現實입니다. 우리 職員들의 不足한 것은 도와주시고 모르는 것은
깨닫게하며 잘못된 것은 일깨워 주심으로써 더욱 열심히 일해 나갈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付託드립니다.

區議會 議員 여러분!

이번 基礎議會 選舉는 國民的 期待와 呼應속에 由來없는 公明選舉를 통한
새로운 選舉文化 定着의 可能性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을 契機로 앞으로 있
을 廣域議會 選舉도 完璧한 選舉管理와 民主市民의 意識變化를 통하여 公明하
게 치름으로써 今年을 選舉革命의 元年으로하고 地方自治制 實施와 더불어 住
民 모두가 한 家族이 되도록 區政을 具現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開院되는 西大門區議會가 永遠히 發展해 나가면서 基礎民主主
義의 뿌리가 활착되어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를 바라며, 議員님들의 家庭에 幸
福과 平安이 깃들고 하시는 事業 더욱 繁昌하시기를 바라면서 祝辭에 갈음하
고자 합니다.

感謝합니다.

1991年 4月 15日

第 3 篇

本 會 議

- 第1回 臨時會
- 第2回 臨時會
- 第3回 臨時會
- 第4回 臨時會
- 第5回 臨時會
- 第6回 臨時會
- 第7回 定期會

本會議

概 觀

地方自治制가 30年만에 復活됨에 따라 1991年 3月 27日 基礎地方議會 議員選舉가 實施되었고 4月 15日에는 一齊히 基礎自治團體 議會가 開院되어 最初臨時會議을 始作으로 6차례의 臨時會議와 1차례의 定期會議를 開催함으로써 基礎議會의 面貌를 갖추고 議會와 自治團體間의 相互理解와 協力을 摸索하는 한편, 議員 質疑向上에 努力함으로써 地域住民의 代議機構로 議會役割의 位相을 定立하였다.

第1回 臨時會

- 會 期 : 1991年 4月 15日~16日(2日間)
- 集會要求者 : 西大門區廳長 孫長鎬

1. 概 況

第1回 臨時會議는 1991年 4月 15日 最初召集 要求者인 西大門區廳長의 集會要求로 公告되어 西大門區議會 院構成과 議長, 副議長을 選出하고 開廳式을 가졌다.

初代 議長으로 選出된 鄭田村 議長의 司會로 開議하고 議員宣誓, 大統領메세지 朗讀, 議長 開會辭, 區廳長 祝辭 順으로 進行되었다.

第1次 本會議가 끝난다음 4층 로비에서 區民代表와 有關團體長, 管內機關長, 地域區 國會議員과 政黨代表, 區廳 幹部들이 參席하여 簡單한 茶菓로 開院을 祝賀하였다.

會期는 2日間으로 2次 會議는 議會關聯條例를 議決하고 總務局長의 區政報告가 있었다.

2. 議會活動

【議長·副議長 選出】

1991年 4月 15日 構成된 西大門區議會 最初臨時會가 孫長鎬 區廳長의 集會要求로 開會되어 이날 第1次 本會議에서 年長者인 全聖章 議員의 司會로 議長·副議長 選出을 위한 投票를 實施하였다. 그 結果 議長에는 鄭田村 議員, 副議長에 金銀天 議員이 各各 當選되었다.

得票狀況은 다음과 같다.

議長 選出

在籍 議員 : 29人	總投票數 : 29票
鄭田村 議員 : 16票	成明濟 議員 : 10票
全在煥 議員 : 3票	

副議長 選出

在籍 議員 : 29人	總投票數 : 29票
金銀天 議員 : 15票	具滋億 議員 : 7票
林在鮮 議員 : 5票	成明濟 議員 : 1票
無效 : 1票	

【區政報告】

金柄沙 總務局長이 區政報告를 하는中, 區廳長이 直接 報告를 하고 議員의 質疑에 答辯해야 한다는 金平洛 議員의 緊急動議로 약 2分間 中斷되었으나 議長이 區廳長의 不參事由를 說明하고 약 30分만에 區政報告를 마쳤다.

3. 重要案件 處理經過 및 結果

가. 條例案

◆ 서울特別市西大門區議會議員의 日費와 旅費의 支給에 관한 條例案

1) 提 案

이 條例案은 李文馥議員 外 6人으로 부터 發議되었는데 그 提案理由와 主要骨子是 다음과 같다.

【提案理由】

地方自治法 第32條 및 同法 施行令 第65條의 規定에 의하여 議員에 대하여 支給할 日費와 旅費의 支給에 관한 必要한 事項을 規定하기 爲함 임.

【主要骨子】

- ① 議員이 議會에 出席하는 境遇 會期中에 限하여 日費를 支給 1日 3萬원
- ② 議員이 公務로 旅行하는 時 旅費支給
 - 〔 國內 旅費 : 別表 1基準
 - 〔 國外 旅費 : 別表 2基準

2) 審議 및 結果

이 條例案은 1991年 4月 16日 第1回(臨時會) 第2次 本會議에 上程되어 李文馥議員의 提案說明이 있는 다음 原案대로 議決하였다.

◆ 서울特別市西大門區議會決算檢査委員選任運營 및 實費辨償條例案

1) 提 案

이 條例案은 金鍾彩 議員 外 6人으로부터 發議되었는데 그 提案理由와 重要骨子是 다음과 같다.

○ 質問 分野別

計	清掃	水道	都市計画	交通	社會福祉	再開發	人事	都市ガソ	道路整備	建築	TV難視聽	環境公害	生活體育	財務	民防衛	洞行政	其他
85	1	5	12	5	12	6	2	5	1	12	2	4	6	4	1	1	6

○ 質問要旨

議員名	件名	議員名	件名
全在煥	○ 금화APT 再建築	鄭田村	○ 名物거리 商業地域指定方案
	○ 玉川洞, 靈泉間 道路 延長 工事 推進關係		○ 滄川洞 100番地 一帶(13統) 風致地區 解除
尹益洙	○ 高地帶 수도물 供給對策	全聖章	○ 滄川洞 13番地 一帶 TV難視聽 解消策
	○ 裏面道路有料駐車場化		○ 京義線 鐵道邊 騒音防止
尹益洙	○ 天然洞 금화APT 撤去 時期	全聖章	○ 滄川洞 30-18~30-61區間 都市計劃 早期 施工
	○ 再開發地域 貫入者 對策		○ 滄川洞 1, 19統 高地帶地域 都市가스 供給 早期施行
尹益洙	○ 靈泉市場 現代化 再建築 方案	全聖章	○ 127-1 市内버스 運行中斷에 따른 交通對策
	○ 國有財産處分 關係議員 合同調查 方案		○ 道路鋪裝 後 車線을 標示하지 않아 事故憂慮 對策要
尹益洙	○ 自動車 進入路 開設	全聖章	○ 北阿峴洞 1-525(4統)一帶 風致地區 解除計劃
	○ 市民APT(5層)의 現行分離 收去 制度上 問題점이 있어 改善要		
尹益洙	○ 市民APT 수도물 制限給水 對策		

議員名	件 名	議員名	件 名
全 聖 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阿峴洞~大新洞境界~奉元寺間 道路. 많은 交通量으로 事故危險·擴張 및 新規開設計劃 ○ 北阿峴3洞 山1番地 高地帶一帶의 管末地域 給水對策 ○ 福水泉 약수터 整備計劃 ○ 公課金 調査員 現況과 增員計劃 ○ 20年以上 國有財産의 占有에 대한 對策 및 無利子 拂下 可能與否 ○ 市有地拂下 名義移轉問題 	丁 和 鎮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弘濟 3, 4地區 再開發計劃 不合理 ○ 公害 測定場所 現況 ○ 서울女商 建物 使用計劃 ○ 上記財産이 市 또는 區財産 與否
		金 廷 炫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延禧 1洞 西部地域의 都市 가스 供給要請 ○ 延禧洞 109, 187番地 一帶 風致地區 解除可能與否 ○ 延禧洞 182番地(24統)一帶 住居環境 改善地區 指定要
		宋 榮 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忠正路3街 3-195番地 一帶 수도물制限給水 解消 要望 ○ 漢洞國校앞 鐵路邊 防音壁 設置 要望 ○ 老人亭 및 공부방新築 要望 ○ 금화APT 22, 23棟 移住 또는 現地 再建築要望 ○ 忠正路洞 都市가스 供給 措置要望 ○ 商街建物 1層 駐車場 店鋪로 無斷變更을 放置하는 理由 ○ 道路의 양쪽에 無斷 駐停車를 團束치 않는 理由
趙 敏 行	○ 洞職員의 人事管理 問題點		
李 文 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各洞의 幼兒園 施設, 어린이놀이터保有 및 管理實態 (施設, 人員) ○ 各洞의 遊休公有地 活用實態 ○ 各洞 약수터 및 體育施設保有 管理實態 		
崔 容 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弘恩洞 5-3 再開發 區域의 貰入者 對策 ○ 再開發 地域內 道路 補修 對策 ○ 弘恩 1洞 都市가스設置 建議 		

議員名	件 名	議員名	件 名
宋榮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道路의 擴張 後 管理方法 ○ 駐車미터기 設置하여 管理할 計劃 ○ 弘恩3洞 山26-155文化會館 新築에 관한 件 ○ 建築許可에 관한 件 ○ '92年度 財政確保에 관한 件 ○ 마을버스 問題에 관한 件 	成明濟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弘恩洞 5-24 地上 安全燈 設置 ○ 弘恩洞 5番地앞 交通 危險 標示板 設置 ○ 약수터 運動機構設置 ○ 약수터 水質檢査 建議 ○ 약수터 保安燈 設置 및 改修 ○ 弘恩洞 9-625앞 다리 住民 負擔으로 橋梁設置 可能與否 ○ 橋脚補修 및 다리擴張 ○ 非保護 信號燈을 自動信號燈으로 交替 建議 ○ 空地 駐車場活用 方案 ○ 都市가스管 施設推進 委員會 構成 ○ 마을버스의 高地帶 零細民 密集地域經由 延長運行 希望 ○ 延長運行을 위하여 私有地 補償 後 道路擴張 必要 ○ 道路鋪裝 補修要望 ○ 弘恩2洞 廳舍增築建議 ○ 弘恩2洞 18-19統 地域增改 築 可能토록 公園綠地 解除 要望 ○ 區 管內 無許可建物 現況과 對策
金永一	○ 中高等學校 誘致의 件		
鄭日出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建築 認許可에 따른 民願發生 問題 ○ 無許可建物 管理問題 ○ 再開發에 따른 APT問題 	이	
鄭炳八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公園綠地 解除, 開發制限地域 解除에 관한 事項 ○ 小公園施設 計劃에 관한 事項 		
曹甲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西大門 再開發事業 推進現況과 事業完了時 稅入豫想 現況 ○ 土地紛爭에 관한 對策 ○ 弘濟洞 山40番地 一帶(백련 연립앞)私道 通行不便 對策 ○ 백련연립 再建築에 대한 對策 ○ 마을버스 駐車施設에 관한 件 		

議員名	件 名	議員名	件 名
成 明 濟	○ 託兒所 設置計劃 ○ 유진商街 街角擴張 ○ 弘恩國校 後門道路 整備 ○ 不法 專用車庫 原狀復舊 ○ 弘恩國校 뒤 駐車場 確保 ○ 蹴球場 入口道路 鋪裝 및 街路燈 設置 ○ 生活保護對象者 選定 制度 改善 ○ 建物옥담 竣工後 撤去 ○ 마을金庫 擴張	林 在 鮮	○ 區民會館 建立規模 및 附帶 設備 內容 ○ 高速化道路 管內進入 問題
		具 滋 億	○ 西大門區 管內 防空壕 現況 및 管理狀況에 따른 問題 ○ 其他 事項
		金 源 珠	○ 用途 變更 ○ 地域 問題
		金 平 洛	○ 都市整備局 및 建設國業務 全般에 관한 事項

3. 重要 案件處理 經過 및 結果

가. 條例案

◆ 서울特別市西大門區地方雇傭職公務員人事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1) 提 案

이 條例案은 1991年 6月 19日 西大門區廳長이 提出하였는데 그 改正理由와 主要骨子는 다음과 같다.

【改正理由】

- 雇傭職의 技能職 轉換에 따른 職名 削除
- 6級以下 一般職 및 技能職 公務員 停年이 延長됨에 따라 雇傭職中 勤務期間 未達로 技能職으로 未轉換된 者의 勤務上限 年齡도 延長하려는 것임.

【主要骨子】

- 1種의 18個 職種中 防犯員을 除外한 18個 職種은 削除
- 2種의 14個 職種은 全部 削除
- 輕勞務職 使喚은 現行과 같음
- 第25條 勤務上限 年齡 第1項을 別表와 같이 改正

【別表】

1種	2種	輕勞務	勤務上限 年齡
防犯員			53歲
		使喚	23歲

2) 審議 및 結果

이 改正條例案은 1991年 6月 26日 第2回 臨時會議 第1次 本會議에 回附되어 總務課長의 提案說明이 있는 다음 表決 在席議員 29名中 贊成 22名으로 原案 可決되었다.

◆ 서울特別市西大門區戶籍過怠料賦課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1) 提 案

이 改正條例案은 1991年 5月 1日 西大門區廳長이 提出하였는데 그 改正理由와 主要骨子は 다음과 같다.

【改正理由】

法律 第4298號(1990. 12. 31)戶籍法이 改正되어 戶籍過怠料가 引上되고 戶籍法施行令이 廢止됨에 따라 西大門區戶籍過怠料賦課徵收條例를 改正코자 하는 것임.

【主要骨子】

- 戶籍法 第130條 該當 過怠料 2萬원을 5萬원으로 變更
- 戶籍法 第131條 該當 過怠料 4萬원을 10萬원으로 變更

- 戶籍法施行令이 廢止됨에 따라 施行令 關聯條項 廢止
- 戶籍過怠料 賦課 對象 35個項에서 30個項으로 變更

過怠料賦課對象除外事項

- ① 遺言의 效力이 생긴 後 지체없이 入養申告를 아니한者(戶籍法第69條)
- ② 裁判確定日로부터 1月以內에 婚姻無效申告를 아니한者(戶籍法第78條)
- ③ 相續開始를 안날로부터 1月以內 診斷書 添附 相續申告를 아니한者
(戶籍法第97條)
- ④ 申告義務 事實을 안날로부터 1月以內 戶主變更申告를 아니한者
(戶籍法第98條)
- ⑤ 戶主相續人의 胎兒死産 申告 不履行者 (戶籍法第99條)

2) 審議 및 結果

이 改正 條例案은 1991年 6月 26日 第2回 臨時會 第1次 本會議에 上程되어 市民奉仕室長의 戶籍業務 現況 報告와 提案 說明이 있는 다음 鄭日出 議員, 曹甲鉉 議員, 具滋億 議員, 趙敏行 議員, 朴正來 議員, 金平洛 議員, 林在鮮 議員, 金鍾彩 議員의 質疑, 答辯 및 討論을 거친 다음 表決, 在席議員 29名 中 贊成 16名으로 原案 可決되었다.

나. 承認案

◆ 區有雜種財產處分承認申請의件

1) 提 案

이 承認案은 1991年 6月 17日 西大門區廳長이 提出하였는데 그 提案 理由와 主要 骨子は 다음과 같다.

【提案理由】

○ 區有雜種財產 一部를 住民, 再開發組合, 民營住宅事業者 等 7件이 買受申請되어 地方財政法施行令 第78條 및 區有財產管理條例 第6條에 의한 公有財產審議委員會 審議結果 保存價値가 없어 賣却對象으로 決定되었기 議會의 賣却承認을 받고자 提案한 것임.

【主要骨子】

○ 財產現況 : 總 7件 998.7m²

種別	一連 番號	當初 財產造成 및 取得內譯			現用途	管理實態	綠故者 有無
		年月日	目的	價格			
土地	1	88. 5. 1	承 繼	不明	道路	再開發事業 地區內道路	使用許可 無
"	2	91. 4.15	用途廢止	"	마당	占 有	道路占用許可
"	3	88. 7.20	承 繼	"	空地	非 占有	使用許可 無
"	4	91. 4. 3	用途廢止	"	집포및 空地	一部占有	道路占用許可
"	5	88. 8. 9	承 繼	"	空地	非 占有	使用許可 無
"	6	90. 7.13	都市計劃道路 事業後殘與地	"	마당	占 有	使用許可 無
"	7	90.12.29	承 繼	"	점포	占 有	使用許可 無

2) 審議 및 結果

이 承認案은 1991年 6月 26日 第2回 臨時會議 第1次 本會議에 上程되어 財務課長의 提案說明이 있는 다음 宋榮于 議員, 金源珠 議員, 金鍾彩 議員, 具滋億 議員의 質疑·答辯後 宋榮于 議員의 本件 審議日 延長要請 動議와 金鍾彩 議員의 再請으로 表決한 結果 贊成 21名으로 延期되어 第3次 本會議에 再上程 財務課長의 補充說明 後 表決, 在席議員 29名中 22名의 贊成으로 原案대로 承認하기로 可決하였다.

다. 決議案

◆ 西大門區議會議員倫理綱領에 관한 決議案

1) 提 案

이 決議案은 1991年 6月 11日 宋榮于 議員 外 7人으로 부터 發議되었는데 그 主文과 提案理由는 다음과 같다.

【主 文】

西大門區議員으로서

- 人格涵養과 資質向上에 努力하고
- 公益優先 精神으로 職務를 誠實히 遂行하며
- 不正한 利得을 圖謀하거나, 不當한 影響力을 行事하지 아니하며
- 忠實한 討論으로 最善策을 導出하는 議會風土 造成과
- 他人의 名譽를 尊重하고 議員品位를 損傷하지 않으며 區民에 대하여 責任을 다 하고자

西大門區議員의 倫理綱領을 制定할 것을 決議함.

【提案理由】

- 우리 議員은 發展하는 現代 行政에 能動的으로 對處하고 地方化 時代に 副應하는 議員으로서 誠實한 職務遂行과 品位維持를 위하여 우리 議員이 指向하여야 할 倫理的 指標를 制定하여 區民에게 밝히고 區民의 奉仕者로서 最善을 다하기 위함임.

2) 審議 및 結果

이 決議案은 1991年 6月 26日 第2回 臨時會議 第1次 本會議에 上程되어 宋榮于 議員의 提案說明 後 鄭日洙 議員의 反對發言 다음 表決, 在席議員 28名 中 贊成 11名, 反對 10名으로 過半數를 넘지 못하여 否決되었다.

라. 其他案

◆ 西大門區議會研究分科委員會構成과運營에 관한規程案

1) 提 案

이 規程案은 1991年 6月 21日 左斗行 議員 外 5人으로 부터 發議되었는데 그 提案理由와 主要骨子は 다음과 같다.

【提案理由】

- 區廳 業務를 研究分科別로 分離하여 議員의 擔當制를 實施함으로써 專門的 知識을 活用하여 發展的이며 效率的으로 議政活動을 展開하고자 함.

【主要骨子】

- 研究分科委員會 數 : 所管別 3個 研究分科委員會
- 研 究 委 員 數 : 分科別 11人 以內
- 機 能
 - 議案의 立案 및 案件의 研究檢討
 - 地域開發 및 行政改善에 관한 研究
 - 議政資料 蒐集 및 集團民願 解消에 관한 研究
 - 議員들은 分科(分野)別로 對 區民質問과 請願書, 陳情書 調查, 行政事務監查 및 調查實施, 條例案 研究審査, 一般案件審査 等を 研究
- 組織 構成
 - 議長, 副議長도 研究分科 委員이 될 수 있다.
 - 所管別로 該當 研究分科委員會에 委員長을 두고 委員長 補佐를 擔當할 總務 1名을 둔다.
 - 研究分科委員會 委員 按配는 1~2 希望制 分布로 優先하며 단, 集結될 境遇 議長에게 權限을 委任한다.

2) 審議 및 結果

이 規程案은 1991年 6月 26日 第2回 臨時會議 第1次 本會議에 上程되어 左斗行議員의 提案說明이 있는 다음 原案대로 滿場一致 可決하였다.

第3回 臨時會

- 會 期 : 1991年 7月 22日(月曜日)
- 集會要求者 : 鄭赫柱 議員 外 11人

1. 概 況

第3回 臨時會議은 1991年 7月 8日 市·道議會의 最初集會가 決定됨에 따라 教育委員選出을 市·道議會의 最初集會日 부터 1月 以內에 實施토록한 規定(地方教育自治에 관한 法律 附則 第2條)에 의하여 基礎議會에서 2名의 教育委員候補者를 選出 市·道議會에 通報토록 되어있는 바, 教育部에서 實施한 教育委員選出에 대한 教育內容과 指針을 基準으로하여 教育委員 候補로 登錄한 5名의 立候補者 中 2名을 選出하기 위한 節次와 方法을 定하고 이에따라 教育委員候補를 選出하기 위하여 1991年 7月 11日 鄭赫柱 議員 外 11人의 召集要求로 臨時會議을 開催하게 되었다.

2. 議會活動

【서울特別市教育委員 候補者 選出】

서울特別市 教育委員會委員을 選出하기 위하여 1991年 7月 8日 市議會 議長 名義로 議會 揭示板에 公告하고 7月 9일부터 7月 18일까지 立候補者 登錄을 받은 結果 教育經歷者 3名, 非經歷者 2名 總 5名이 登錄하였다.

이들 候補者의 簡單한 所見發表 後 投票를 實施하여 1次 投票에서 朴定緒 候補者가 2次 投票에서 李基亨 候補者가 各各 選出되었으며 結果는 다음과 같다.

○ 1次 投票

在席議員	總 投票數	候補者別 得票數				
		朴定緒	李基亨	張仁淑	吳恒植	李英雨
29人	58票	17票	15票	15票	9票	2票

○ 2次 投票

在席議員	總 投票數	決 選 候 補 者	候 補 者 別 得 票 數	
			李基亨	張仁淑
29人	29票	2名	16票	13票

3. 重要案件 處理 및 結果

◆ 서울特別市教育委員會委員候補者選出方法및節次案

1) 提 案

이 案은 1991年 7月 15日 鄭赫柱 議員 外 6人으로부터 發議되었는데 그 提案理由와 主要骨子は 다음과 같다.

【提案理由】

- 地方教育自治法 第5條의 規定에 의하여 西大門區議會의 議決로 推薦하는 서울特別市教育委員會候補者 2名의 選出을 위한 節次와 方法을 定하고자 함.

【主要骨子】

- 地方教育自治法 第8條 및 施行令 第3條의 規定에 의하여 立候補者中 投票에 의거 2名의 候補者를 選出하여 市議會에 推薦
- 選出方法：無記名投票 實施 1名 以上은 반드시 教育및 教育行政經歷者를 選出
- 候補者의 決定
 - 議會의 一般 議決 定足數 適用
 - 1次 投票時 過半數 以上의 得票者가 없을 境遇 決選 投票
 - 決選投票에서도 過半數 以上의 得票者가 없을 境遇 多得票者 選出

2) 審議 및 結果

이 案은 1991年 7月 22日 第3回 臨時會議 第1次 本會議에 上程되어 鄭赫柱 議員의 提案說明과 金源珠 議員의 提案說明에 대한 贊成發言 및 鄭日洙 議員, 李文馥 議員의 教育委員 選出에 관한 身上發言이 있는 다음 表決하여 在席議員 29名中 贊成 28名 棄權 1名으로 原案可決 되었다.

第4回 臨時會

- 會 期 : 1991年 8月 13日~8月 19日(7日間)
- 集會要求者 : 西大門區廳長

1. 概 況

第4回 臨時會議는 '91年度 追加更正豫算案 承認을 爲해 1991年 8月 2日 集會要求로 1991年 8月 13日 開會되어 8月 19日까지 7日間の 會期를 가졌다.

會期中 豫算決算特別委員會와 2個의 請願審査特別委員會를 構成하여 委員選任 및 委員長을 選出하고 活潑한 特委活動을 하였으며 條例改正案과 承認案을 處理하면서 3차례 本會議를 열었다.

그리고 7月 15日字 서울시 人事發令에 의해 赴任한 都明正 新任 西大門區廳長의 人事말씀이 있었다.

2. 議會 活動

【福水泉약수터 保存請願 特委構成】

- 第1次 本會議時 議長의 提議로 第3研究分科委員會 委員으로 構成할 것을 議決하였는데 그 名單은 다음과 같다.

委員長 : 林在鮮 議員 幹 事 : 朴老鉉 議員

委 員 : 全在煥 議員, 趙敏行 議員, 全聖章 議員, 姜碩宗 議員

金永一 議員, 成明濟 議員, 鄭日出 議員

【北部幹線道路 開設에 따른 請願特委 構成】

- 第1次 本會議時 議長의 提議로 第2研究分科委員會 委員으로 構成할 것을 議決 하였는데 그 名單은 다음과 같다.

委 員 長：左斗行 議員 幹 事：金平洛 議員
委 員：宋榮于 議員, 李鳳洙 議員, 金廷炫 議員, 丁和鎮 議員
 鄭炳八 議員, 鄭日洙 議員, 郭載滿 議員

【豫算 決算 特別委員會 構成】

第1次 本會議時 議長이 第1分科 4名, 第2分科 3名, 第3分科 3名, 總 10名의 議員을 推薦하여 特委를 構成하도록 提議하였으나 金鍾彩 議員의 反對 發言과 左斗行 議員의 贊成 發言에 이어 鄭赫柱 議員의 豫決特委委員 再調整 要請發言이 있는 다음 10 分間 停會하였다.

續開하여 表決하였으나 贊成 5名, 反對 9名으로 議決되지 못하고 다시 討論에 들어가 全聖章 議員, 金源珠 議員, 林在鮮 議員, 左斗行 議員, 曹甲鉉 議員, 成明濟 議員, 金平洛 議員의 意見이 奔奔하여 13時07分 中食을 위해 停會하고 14時38분에 續開하여 崔容完 議員의 動議에 의해 議長의 提議案대로 10名의 議員을 豫決特委委員으로 選任할 것을 議決하였다.

그 名單은 다음과 같다.

鄭赫柱 議員, 具滋億 議員, 尹益洙 議員, 朴正來 議員, 左斗行 議員,
李鳳洙 議員, 宋榮于 議員, 林在鮮 議員, 趙敏行 議員, 鄭日出 議員

【新任區廳長 人事】

저는 지난 7월 15日자로 서울시 人事發令에 의해 西大門區廳長의 重責을 맡게 된 都明正입니다.

오늘 歷史的인 地方自治의 産室인 이 議事堂에서 議員여러분을 만나뵙고 人事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40萬 區民의 福祉와 地域社會의 發展을 위해서 微力이나마 熱과 誠을 다하겠습니다만, 區民의 代表者이신 議員여러분께서 忠言과 助言을 아끼지 않고 聲援해 주시기를 當付 드리겠습니다.

저희 西大門區는 제가 아직 赴任한지 一淺해서 現況을 잘 把握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山地와 丘陵이 많은 既存 市街地로써 生活環境이 그렇게 滿足스러운 水準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봐 집니다.

그러나 鞍山이나 仁旺山, 白蓮山 등 秀麗한 自然環境을 가지고 있고 또 獨立門, 무악재, 統一路 등 歷史와 傳統의 地域이고, 私立名門學校의 施設이 集中된 教育의 中心地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特性을 잘 살려 議員여러분의 좋은 忠言을 바탕으로 해서 地域社會의 發展을 위해서 열심히 努力하겠습니다.

몇가지 제가 느낀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요번 追加更正 豫算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西大門 地域의 長期發展을 위한 基本計劃을 年內에 마련할까 합니다. 그래서 住民 여러분들이 西大門의 未來의 비전을 아시고 이에 발맞춰서 地域建設에 參與하실 수 있는 基盤을 마련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전에도 말씀올렸습시다만 再開發事業 등 住居環境改善 事業을 促進하고 또 在來市場의 現代化나 老朽한 上下水道 施設物의 整備 등을 통해서 快適하고 品位있는 都市環境을 가꾸는데 力點을 두고자 합니다.

그리고 地域社會의 建設은 地域住民들이 和合하고 參與하는 바탕에서만 그 成果가 極大化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面에서 西大門區民이 이 地域을 내故郷으로 느끼고 地域發展에 參與할 수 있는 契機를 마련하기 위해서 내故郷 西大門가꾸기 運動을 展開할까 합니다.

그래서 地域內的 文化財를 發掘하고 또 民族祝祭를 開發하고 區民의 날이나 區를 象徵하는 象徵物을 制定하는 등 地域住民들이 한데 뭉칠수 있는 求心點을 마련해 나갈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自治地方化 時代를 맞이해서 民主的이고 區民이 和合하고 參與하는 區政을 遂行하는데 最善의 努力을 다하고자 합니다.

특히 地域與件上 여러가지 集團民願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 이런 集團民願을 하나하나 차분하게 풀어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와같은 모든 課題는 區廳長을 中心으로 傘下職員의 努力만으로는 解決할 수 없는 問題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議員여러분의 아낌없는 聲援과 協助를 付託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臨時會에서 追加更正豫算案이 上程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赴任한지 一淺해서 아직 豫算內容에 대한 소상한 把握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諒解를 해주신다면 저희 該當 局長들이 提案說明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議員여러분의 아낌없는 聲援을 付託올리고 여러분의 家庭에 늘 健康과 幸運이 充滿하시기를 祈願드리면서 簡單히 人事에 大하겠습니다.

3. 重要 案件 處理 經過 및 結果

가. 條例案

◆ 서울特別市西大門區地方別定職公務員人事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1) 提 案

改正條例案은 1991年 7月 15日 西大門區廳長이 提出하였는데 그 改正理由와 主要 骨子는 다음과 같다.

【改正理由】

- 西大門區議會의 開院에 따라 議會의 圓滑한 運營을 위하여 幹事를 補佐하고 議員 活動을 支援하기 爲한 專門委員의 任命 資格基準을 定하기 爲함.

【主要骨子】

- 專門委員의 職級은 別定職 5級相當
- 專門委員의 職務內容은 議案審議 및 議事進行의 補佐
- 任用資格
 - 4年制 大學卒業者로서 關聯分野 經歷 3年 以上인 者
 - 6級以上 公務員으로서 行政經歷 10年 以上인 者
 - 其他 任命權者가 위 資格에 準한다고 認定한 關聯分野 經歷者

2) 審議 및 結果

이 改正 條例案은 1991年 8月 13日 第4回 臨時會議 第1次 本會議에 上程하여 總務課長의 提案說明이 있는 다음 表決, 在席議員 27名 中 贊成 18名으로 原案可決 되었다.

◆ 서울特別市西大門區公共用地에編入된私權制限土地에대한
綜合土地稅의不均一課稅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1) 提 案

이 改正條例案은 1991年 7月 10日 西大門區廳長이 提出하였는데 그 改正理由와 主要骨子は 다음과 같다.

【改正理由】

現行 公共用地 概念에 관한 條例의 規定이 公用收用 對象으로 告示된 것을 말한다고 했으나 公共收用 對象與否 告示는 土地收用 段階에서 告示하게 되는 바 順序가 맞지 않아 概念에 이를 削除하여 課稅免除 正當性 與否 論難의 素地를 없애고자 함.

【主要骨子】

- 公共用地 概念에서 “施設用地로 指定하여 共用收用 對象으로 告示한 것을 말한다”로 改正하여 不必要한 部分을 削除
- 改正事項 適用은 1991年度 課稅 基準年度부터 適用한다.

2) 審議 및 結果

이 改正 條例案은 1991年 8月 13日 第4回 臨時會議 第1次 本會議에 上程하여 稅務1課長의 提案 說明이 있는 다음 表決, 在席議員 27名 中 贊成 19名으로 原案대로 可決되었다.

나. 豫算案

◆ '91年度 追加更正豫算案

1) 提 案

이 追加更正豫算案은 1991年 8月 2日 西大門區廳長이 提出하였으며 1991年 8月 13日 第4回 臨時會議 第1次 本會議에서 總務局長의 提案說明이 있었으며 提案說明 要旨와 追更豫算案 概要는 다음과 같다.

【提案 說明 要旨】

- 區政 살림살이에 필요한 財政은 自體歲入이 이번의 追更豫算規模를 包含하여 全體所要豫算의 47.4%인 237억 1,800만원에 不過하고 나머지 52.6%인 263억 2,400만원은 서울특별시의 財政補助金과 調整交付金으로 充當하므로서 서울市自治區中에서 財政規模가 제일작아 脆弱한 實情임.
- 追加更正豫算案 編成方向은 '90會計年度 決算結果 發生한 純歲計 剩餘金과 서울特別市에서 交付된 調整交付金을 財源으로하여 첫째, 法令 指針變更 等에 따른 法定經費의 追加分에 대한 補填임.
- 區議會 議員 및 事務局職員을 包含한 人件費 不足과 什器購入費 等 議會運營費를 反映하였으며 司正長官會議時 大統領 指示事項과 關聯된 衛生 및 建築分野 公務 遂行活動費를 現實化하였고 둘째, 市의 政策方向을 區單位에서 實現하기 위한 施設事業임.
- 環境美化員子女 學資金 確保 等の 厚生福祉增進, 交通할아버지의 奉仕活動 等 老人社會福祉參與의 擴大와 裏面道路의 幹線 補助機能體制 改善을 위한 駐停車禁止 交通安全標示를 設置하고, 下水道 준설과 같은 水防對備事業 그리고 環境汚染防止事業 等에 重點을 두며 셋째, 地方化時代에 맞는 地域特殊事業으로 區單位 都市基本計劃 樹立을 위한 用役費와 都市整備諮問委員會의 運營強化, 民願相談官 運營改善에 따른 實費報償額을 現實化하고 어린이公園 2個所의 施設을 完全整備 코자 하며 넷째, 새秩序 새生活運動의 活性化 推進으로 不法 駐停車 深夜頽廢營業 等 各種 不法無秩序의 整備 및 團東關聯經費와 統長에 대한 都市새마을教育

關聯經費를 反映하였으며, 其他 市民不便解消을 위한 主要施策事業 및 地域特性 伸張을 위한 必須事業을 推進토록 하였다.

【追更 豫算案 概要】

一般會計는 追更 豫算案 75억8천2백만원을 包含하여 5백억4천2백만원으로써 今年度 既定 豫算보다 17.8%가 增加한 水準이며 새마을所得 特別會計의 豫算規模는 追更 豫算案 2억1천8백만원을 包含한 3억9천8백만원으로 既定 豫算對比 120%가 늘어난 規模이다.

먼저 歲入에서 一般會計財源은 '90年度 決算 純歲計 剩餘金 33억6천4백만원과 서울特別市 調整交付金 42억1천8백만원이며, 새마을所得特別會計財源은 '90年度새마을所得 支援事業 決算剩餘金 2억1천8백만원으로 이번 追更 豫算 編成으로 인하여 住民이 追加로 負擔해야 할 負債나 使用料 負擔은 전혀없다.

다음은 歲出豫算으로 '91年度 第1回 一般會計 追更 豫算案 75억8천2백만원을 種別로 살펴보면 議會費 2억4천4십4만원, 一般行政費 5억6천9십9만원, 社會福祉費 4억1천2백2십2만원, 產業經濟費 110만원, 地域開發費가 83%인 62억6천5백16만원, 地域防衛費가 766만원으로 編成되었다.

그리고 豫備費는 法에서 定한 豫算額의 1/100以上이 되도록 9,358만원을 反映하였고 반면에 既定 豫算에 編成된 班長報償金 1억9백5십2만원은 指針變更에 따라 削減 調整하였다.

2) 審議 및 結果

이 追加更正 豫算案은 1991年 8月 22日 第4回 臨時會議 第3次 本會議에서 豫算決算特別委員長의 審査結果 報告가 있는 다음 鄭日洙 議員의 修正案 贊成發言과 鄭日出, 金平洛, 郭載滿, 宋榮于 議員의 討論에 이어 豫算決算特別委員會의 修正案을 滿場一致로 可決하였다.

修正案의 內容은 다음과 같다.

(1991年度追加更正豫算案修正案)

I 歳出豫算修正

1. 調整規模…403,150千円

- 削 減 : 403,150千円
- 増 額 : 403,150千円

2. 會計別 修正内譯

가. 一般會計

減 額	増 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延禧洞 140-10부터 140-12間 道路開設 工事費 350,000千円 ○ 駐車團束活動 特別辦公費 17,625千円 ○ 除雪모래함 設置費 8,875千円 ○ 大新洞 老人亭 改築設計費 1,650千円 ○ 西大門區誌 發刊費 25,000千円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豫 備 費 : 403,150千円
總計 403,150千円	總計 403,150千円

II 豫算總則 修正事項 : 該當 事項 없음

III 1991年度 第1回 追加更正豫算案 修正調書

【一般會計】

豫 算 科 目				修正豫算	豫算案 (當初)	修正額 (増,減)	修 正 内 容
款	項	細目	目				
建設 事業 費	建設 管理	地域 開發	施設費	8,948,854千円	9,298,854千円	△350,000千円	延禧洞140-10~140-12道路開設工事業費 全額削減 350,000千円
		道路 管理	施設費	584,443千円	593,318千円	△8,875千円	除雪모래함 設置 8,875千円 削減

豫算科目				修正豫算	豫算案 (當初)	修正額 (増,減)	修正内容
款	項	細項	目				
	都市 計劃	都市 整備	特別 辦公費	21,825千圓	39,450千圓	△17,625千圓	駐車團束活動費(區·洞職員) 5000圓×235名×15日 : 17,625千圓 削減
企劃 行政 費	企劃 管理	文化 公報	需用 費 及 手 數 料	296,923千圓	321,923千圓	△25,000千圓	西大門區誌 印刷費 25,000千圓 全額削減
福祉 事業 費	一般 社會 福祉	家庭 福祉 行政	施設 附帶 費	1,650	3,300	△1,650	大新洞 老人亭 改築 設計費 1,650千圓削減
豫備費	豫備費	豫備費	豫備費	915,820	512,670	403,150	豫備費403,150千圓増額

IV 削減事由

科 目				歳出内容	削減事由
款	項	細項	目		
建設 事業費	建設 管理	地域 開發	施設費	延禧洞140-10부터 140-12區間 道路開設工事	-當初 1995年度 計劃事業으로 現在 時急한 工事が 아님으로 事業不要
	都市 計劃	都市 整備	特別 辦公費	駐車 團束 活動費 (區·洞職員)	-區·洞 公務員의 過多한 團束事務參與로 固有事務 遂行에 蹉跌이 憂慮되는 바 活動日數를 50% 減縮
	建設 管理	道路 管理	施設費	除雪 모래함 設置	-91. 11月경 導入되는 除雪車輛의 活用으로 幹線邊設置 모래함不要
福祉 事業費	一般 社會 福祉	家庭 福祉 行政	施設 附帶 費	大新洞 老人亭 改築 設計費	-公共施設設計를 區廳人力(建築課營繕部署)을 利用 設計하여 豫算節減
企劃 行政費	企劃 管理	文化 公報	需用 費 及 手 數 料	西大門區誌 發刊	-資料 및 原稿監修後에 必要한 經費로 追後 本豫算에 編成 施行

다. 承認案

◆ 定數物品取得承認의件

1) 提 案

이 承認案은 1991年 8月 2日 西大門區廳長이 提出하였는데 그 提案理由와 主要骨子は 다음과 같다.

【提案理由】

地方財政法 第95條 및 施行令 第113條 第2項의 規定에 依據 中型乘用車 外 12種 47件의 定數物品을 追更豫算에 編成하여 取得하고자 함.

【主要骨子】

- 取得品目：中型乘用車, 中·小型乘用車, 小型乘合車, 에어컨디쇼너, 응접셋, 카메라, 電子複寫機, 文書細斷機, 비디오카메라, 팩시밀리, 標準多機能事務器機, 모터사이클
- 總 13種 47件 112,595,000원
 - － 新規取得：13種 41件 94,595,000원(重型乘用車 外 12種)
 - － 對替取得：1種 6件 18,000,000원(電子複寫機)

2) 審議 및 結果

이 承認案은 1991年 8月 13日 第4回 臨時會 第1次 本會議에 上程되어 財務局長의 提案說明이 있었고 金平洛 議員의 質疑에 대한 答辯이 있는 다음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서 審査토록 回附되어 豫決特委 第5次 會議時 財務課長의 提案說明 後 委員들의 質疑 答辯이 있었다.

委員長이 第3次 本會議에 審査結果를 報告하고 原案대로 可決되었다.

◆ 區有雜種財產賣却處分承認의件

1) 提 案

이 承認案은 1991年 8月 2日 西大門區廳長이 提出하였는데 그 提案理由와 主要骨子は 다음과 같다.

【提案理由】

區有 雜種財產(土地)에 대한 買受申請이 있어 地方財政法 施行令 第78條 및 區有財產 管理條例 第6條에 의거 公有財產 審議委員會 審議結果 保存價値가 없어 賣却對象 “適正”으로 決定되었기 處分承認 申請을 하였다.

【主要骨子】

- 區有 雜種財產을 占有한 자가 買受申請한 土地는 建物敷地로 活用토목 占有者에게 賣却.(2필지 50m²)
- 一宅地 未滿의 小規模 公지를 隣接土地 所有者가 買受申請한 境遇에는 隣接地所有者가 建物敷地로 活用토목 賣却.(2필지 56m²)

2) 審議 및 結果

이 承認案은 1991年 8月 13日 第4回 臨時會 第1次 本會議에 上程되어 財務局長의 提案說明이 있었고 具滋億 議員, 左斗行 議員의 質問答辯에 이어 丁和鎭 議員의 賣却 保留發言이 있는 다음 表決하였다.

在席議員 27名 中 贊成 11名, 反對 14名으로 否決되었다.

第5回 臨時會

- 會 期 : 1991年 10月 7日~10月 9日(3日間)
- 集會要求者 : 金鍾彩 議員 外 10人

1. 概 況

第5回 臨時會議은 西大門區議會徽章程 制定 및 議員身分證規則을 改正하고자 1991年 9月 30日 金鍾彩 議員 外 10人의 集會要求로 10月 7日 開會되어 3日間으로 會期를 議決하였다.

會期中 議會關聯 規程制定 및 規則改正이 있었고 區廳長이 提出한 條例改正과 第4回 會議에서 構成된 2個 請願審查特委의 審査報告가 있었으며 2차례의 本會議을 열었다.

2. 議會活動

【弘恩2洞 印章多量 放置의 件】

1991年 8月 22日 第4回 臨時會 第3次 本會議에서 金永一 議員이 議事進行 發言中 弘恩2洞 洞事務所 倉庫에서 發見된 木圖章 220個를 들고나와 發見된 經路와 區廳에서 自體調查하여 答辯한 內容을 說明하고 이 事項에 대한 真相糾明을 위하여 調查特別委員會를 構成할 것을 要求하였다.

그러나 研究分科委員會가 構成되어 있으므로 該當 研究分科委員會에서 調查한 後 決定토록 하자는 議長의 提案으로 第1研究分科委員會에서 事實糾明에 着手하여 第5回 臨時會 第1次 本會議에서 李文馥 議員이 報告를 하였다.

그 內容은 다음과 같다.

(報告要旨)

- 8月 23日 MBC-TV 및 主要日刊紙의 言論資料를 갖고 1分科委員 9名 全員이

參席하여 區廳 總務局長과 監査室長으로 부터 自體調査 經緯를 聽取하고 調査를 熱議하였음.

- 8月 24日 鄭赫柱 委員長 外 4名의 委員이 弘恩2洞을 訪問 圖章이 發見된 倉庫와 發見者 장삼례 女人을 面談한 結果 '91年 7月 7, 8日 倉庫整理를 하던 中 캐비닛뒤에 신문몽치에 싸여있는 圖章을 發見 이를 8日間 張女人집에 保管하였다가 當時 新民黨 西大門乙地區黨 林春元 國會議員 事務室에 전달하게 되었는데 張女人은 '90年度 自活保護者로 策定되었다가 '91年 自活保護對象者에서 脫落된 事實이 있음.
- 8月 30日 1分科委員長 및 議員 5名이 區廳을 訪問, 總務局長 및 調査係長으로 부터 그간의 自體調査 經緯를 報告받았음. 그 內容은 刑事的인 問題는 아직 終結事項이 아니기 때문에 매듭짓지 못하고 自體懲戒委員會 開催結果 重懲戒로써 洞長, 事務長, 擔當者 3名을 處罰
洞長, 事務長은 大統領과 市長 表彰이 있어 輕懲戒로 處理되었음을 報告받았음.
- 9月 8日 1分科 2次모임을 갖고 搜查機關의 進行狀況을 探問結果 큰 問題點이 發見되지 못했다는 事實에 區廳傘下 全職員에 대한 圖章文化에 관한 教育의 必要性을 總務局長에게 建議하였음.
- 9月 28日 區廳長, 總務局長으로 부터 全職員에 대한 教育實施 說明이 있었으며 5回 臨時會議時 責任者의 謝過發言을 要求하였음.
10月 4日 鄭赫柱 委員長 外 세議員이 西部警察署를 訪問 그간의 內査에 대한 說明을 듣고 公文으로 依賴하였으나 搜查終結이 되지 않아 資料를 流出할 수 없다 하여 分科委員會를 開催 2次 訪問을 決議.
- 10月 5日 委員長 外 6名이 西部警察署長을 訪問 擔當刑事로 부터 檢察廳 西部支廳에 報告한 調査資料를 公開, 不正選舉活用 및 就勞事業費 着服에 관한 嫌疑事實을 發見치 못하였다는 說明이 있었음.
- 區廳에서도 더 以上の 調査內容은 없어 議員의 身分으로 調査의 어려움과 限界點이 있다는 것을 認識하며 同僚議員과 金永一 議員의 諒解를 구하고 公職者에게 警覺心을 불러 일으켰다는데 自慰하면서 報告를 마침.

3. 重要 案件 處理 經過 및 結果

가. 條例案

◆ 西大門區保健所酬價條例中改正條例案

1) 提 案

이 改正條例案은 1991年 8月 22日 西大門區廳長이 提出하였는데 그 改正理由와 主要骨子は 다음과 같다.

【改正理由】

- 最近 “예상 및 등줄쥐”의 分泌物 및 排泄物로 인하여 發生되는 流行性出血熱의 豫防을 위한 有料接種事業이 西大門保健所酬價條例의 手數料中 有料接種項目에 明示되지 아니하였기 이를 改正 流行性出血熱 豫防接種과 手數料徵收 根據를 新設하여 國民健康 增進을 圖謀코자 함.

【主要骨子】

- 西大門區保健所 酬價條例 第2條(手數料 診療費) 第2項의 4에 流行性出血熱 豫防 接種의 手數料 및 診療費를 徵收할 수 있는 根據를 新設함.

種 目	單 位	金 額
라. 장티프스	경구용 1인분 또는 주사기	별 칩
마. 유행성 출혈열	0.5ml 1회분	
바. 렙토스피라증	1ml 1회분	

2) 審議 및 結果

이 改正 條例案은 1991年 10月 7日 第5回 臨時會議 第1次 本會議에 上程하였으나 保健指導課長의 人事移動으로 提案說明을 하지 못하고 第2次 本會議에서 新任課長의 提案說明이 있는 다음 表決, 在席議員 28名 全員贊成으로 原案 可決되었다.

◆ 西大門區地方別定職公務員人事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1) 提 案

이 改正條例案은 1991年 9月 11日 西大門區廳長이 提出하였는데 그 改正理由와 主要骨子は 다음과 같다.

【改正理由】

- 區 職制改編으로 增員되는 別定職 公務員 任用을 위한 資格基準을 追加新設하기 위한 것임.

【主要骨子】

- 9級相當으로 되어있는 公課金 要員中 8級相當 任用資格 基準을 追加 함.
- 構內食堂 給食管理 營養士를 別定職 8級相當으로 任用할 수 있는 資格基準을 新設함.
- 屋外廣告物 管理을 위한 廣告物 管理員을 別定職 7級相當으로 任用할 수 있는 資格基準을 新設함.

2) 審議 및 結果

이 改正 條例案은 1991年 10月 7日 第5回 臨時會議 第1次 本會議에 上程하여 總務課長의 提案說明이 있는 다음 宋榮于 議員, 鄭日出 議員, 朴正來 議員의 贊反討論이 있었고 宋榮于 議員의 動議로 研究分科委員會에서 審査 後 上程하기로 하여 第2次 本會議에 다시 上程, 總務課長의 補充說明이 있는 다음 第1研究分科 委員長의 審査說明이 있었고 全聖章 議員, 宋榮于 議員, 左斗行 議員, 尹益洙 議員, 鄭日出 議員의 質問答辯에 이어 表決, 在席議員 27名中 贊成 22名으로 原案可決 되었다.

나. 承認案

◆ 區有雜種財產賣却承認申請의件

1) 提 案

이 承認案은 1991年 9月 9日 西大門區廳長이 提出하였으며 그 提案理由와 主要骨子是 다음과 같다.

【提案理由】

- 區有 雜種財產(土地)에 대한 買受申請이 있어 地方財政法 施行令 第78條 및 區有財產 管理條例 第6條에 의거 公有財產審議委員會 審議結果 保存價値가 없어 賣却對象 “適正”으로 決定되었기 賣却하고자 함.

【主要骨子】

- 區有雜種財產을 占有한 者가 買受申請한 土地는 建物敷地로 活用토록 占有者에게 賣却(4필지 98m²)
- 1宅地 未滿의 小規模 空地를 隣接土地 所有者가 買受申請한 境遇에는 隣接地 所有者가 建物敷地로 活用토록 賣却(6필지 182m²)

2) 審議 및 結果

이 承認案은 1991年 10月 7日 第5回 臨時會議 第1次 本會議에 上程되어 財務課長의 提案說明이 있는 다음 金廷炫 議員, 具滋億 議員, 左斗行 議員의 質疑와 討論 後 一括하여 表決, 在席議員 27名 中 贊成 25票로 可決되었다.

다. 規則案

◆ 西大門區議會議員身分證規則中改正規則案

1) 提 案

이 改正規則案은 1991年 10月 1日 金源珠 議員 外 6人이 發議하였는데 그 改正理由와 主要骨子は 다음과 같다.

【改正理由】

- 現行 地方議會 議員身分證은 基礎議會 構成 前 內務部에서 全國 地方議會 議員身分證의 統一을 기하기 위한 準則案에 의해 制定된 바 規格 및 制式·紙質 등이 未洽하며 地方議員 身分과 品位에 거리감이 있어 改正코자 함.

【主要骨子】

- 現行 橫으로 構成된 規格을 從으로 하며
- 寫眞의 規格은 30×25mm에서 48×39mm로 함.
- 바탕색은 하늘색으로 하며 前面의 바탕글씨를 削除하고 後面에 徽章模型을 표한다.

2) 審議 및 結果

이 案은 1991年 10月 7日 第5回 臨時會議 第1次 本會議에 上程되어 金源珠 議員의 提案說明이 있는 다음 改正案대로 滿場一致 可決되었다.

라. 其他案

◆ 서울特別市西大門區議會徽章規程案

1) 提 案

1991年 10月 5日 金鍾彩 議員 外 10人이 發議하였는데 그 提案理由와 主要骨子は 다음과 같다.

【提案理由】

- 서울특별시 西大門區議會를 象徵하는 徽章規程을 制定하여 議會旗 및 議會議員이

佩用할 배지 等 西大門區議會를 象徴하는 標識으로 使用코자 함.

【主要骨子】

○ 模 型

外 形 : 無窮花 形象

中 央 : 圖形과 “議”자 標示

色 相 : 無窮花 形象과 “議”자는 金色
圓內바탕은 흰색

○ 規 格

議會旗 : 가로 210cm×세로 140cm

배 지 : 無窮花型 직경 1.75cm

원형직경 0.75cm

2) 審議 및 結果

이 規程案은 1991年 10月 7日 第5回 臨時會議 第1次 本會議에 上程되어 金鍾彩 議員이 第1研究分科委員會에서 討議한 內容과 提案說明이 있는 다음 滿場一致로 可 決되었다.

第6回 臨時會

- 會 期 : 1991年 11月 8日~11月 15日(8日間)
- 集會要求者 : 西大門區廳長 都明正

1. 概 況

第6回 臨時會議은 條例改正을 위하여 1991年 10月 31日 西大門區廳長의 集會要求로 1991年 11月 8日 開會하여 8日間の 會期를 가졌다. 會期中에 區廳長 提出 條例案 改正과 '92年度 定數物品 取得承認, 議員發議 決議案과 建議案을 議決하였으며 慶南 巨濟郡議會와 姊妹結緣 推進을 承認하였다.

第6回 會議를 끝으로 1991年度 臨時會 會期 30日을 모두 마쳤다.

2. 議會活動

【議員 세미나 實施】

議員 資質 向上과 定期會議 期間中 審議하게 되는 豫算 및 決算, 區行政事務監査에 對備코자 專門人을 招請하여 3회에 걸쳐 세미나를 實施하였다.

그 內容은 다음과 같다.

○ 세미나 開催 內容

日 時	場 所	主 題	講 師
91. 11. 8 15:00~18:00	區 議 會 本會議場	• 豫算·決算審議枝法 및 行政會計	明知專門大稅務會計科 教授 朴 玉 順
91. 11. 15 17:00~19:00	스 위 스 그랜드호텔	• 地方自治와 民主主義 • 地方自治의 本質과 傾向 • 外國의 地方自治 比較	漢陽大地方自治研究所 教授 趙 昌 鉉

日 時	場 所	主 題	講 師
91. 11. 19 10:00~17:00	區 議 會 本會議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地域開發政策의 方向과 地方議會議員의 役割 • 豫算審議 主要內容과 着眼事項 • 效率的인 區政監查 實務 知識과 着眼事項 	地方議會研究所研究委員 國會事務處立法審議官 豫算決算委員會 國會事務處 監查室

3. 重要案件 處理經過 및 結果

가. 條例案

◆ 西大門區體育振興協議會條例中改正條例案

1) 提 案

이 改正 條例案은 1991年 10月 24日 西大門區廳長이 提出하였으며 그 改正理由와 主要骨子는 다음과 같다.

【改正理由】

- 國民體育振興法 第5條의 規定에 의하여 서울特別市體育振興協議會條例가 改正 公布 施行됨에 따라 區體育振興協議會條例를 改正하기 위함.

【主要骨子】

○ 構 成(第3條)

- 副議長 : 管內 所在 教育廳長 또는 學校長
- 委 員
 - 〔 當然職 一 區 生活體育協議會 會長
 - 〔 委囑職 一 地域社會 體育振興에 이바지 할 수 있는 官吏, 公共機關의 長, 企業體, 其他團體의 代表者 中에서 議長이 委囑

○ 會議(第6條)

- 定期會議 : 半期別 1回 開催
- ┌ 議員 過半數 出席으로 開議
└ 委員의 代理 參席 不可

○ 幹事와 書記(第7條)

- 幹 事 : 1人
- 書 記 : 生活體育課長으로 指定
- 會議錄 : 第4項에 規定한 會議錄의 作成, 管理를 第3項에 插入

2) 審議 및 結果

이 改正條例案은 1991年 11月 8日 第6回 臨時會議 第1次 本會議에 上程되어 總務課長의 提案說明이 있는 다음 鄭赫柱 第1研究分科委員長이 分科委員會 討論結果 改正의 必要가 있다는 報告에 이어 鄭日出 議員, 宋榮于 議員, 趙敏行 議員, 左斗行 議員, 金鍾彩 議員, 李文馥 議員, 金平洛 議員의 質疑·答辯 後 表決. 在席議員 29名 中 贊成 16名으로 可決되었다.

◆ 西大門區行政權限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

1) 提 案

이 改正條例案은 1991年 10月 31日 西大門區廳長이 提出하였는데 그 改正理由와 主要骨子는 다음과 같다.

【改正理由】

- 受任事務의 一部中 市長의 承認을 얻은 摘出物 處理業者 指定 및 指導 監督業務를 保健所長에게 再委任토록 함.

【主要骨子】

- 委任事務中 “36. 寄生蟲 豫防을 위한 收去”란 다음에 “37. 摘出物 處理業者 指定 및 指定取消 等 指導監督”業務를 다음과 같이 新設

事 務 名	根 據 法 令	委任種類	受任機關
37. 摘出物處理業者 指定 및 指定取消 等 指導監督	醫療法 第17條 摘出物 等 處理規程 第3條 및 第9條	再委任	保健所長

2) 審議 및 結果

이 改正 條例案은 1991年 11月 8日 第6回 臨時會議 第1次 本會議에 上程되어 社會福祉課長의 提案說明이 있은다음 林在鮮 第3研究分科委員長이 分科委員會 討論結果 改正의 必要性이 있다는 報告 後 異議없이 滿場一致로 原案可決되었다.

나. 承認案

◆ 1992年度定數物品承認要請의件

1) 提 案

이 承認案은 1991年 10月 29日 西大門區廳長이 提出하였으며 그 提案理由와 主要 骨子는 다음과 같다.

【提案理由】

- 地方財政法 第95條 및 施行令 第113條 第2項의 規定에 의거 新規取得 電動打字機 外 20種 100件, 對替取得 複寫機 外 13種 62件의 定數物品을 '92年 豫算에 編成하여 取得하고자 함.

【主要骨子】

- 總 35種 162件 : 1,536,669,000원
 - ┌ 新規取得 : 21種 100件 1,097,205,000원
 - └ 對替取得 : 14種 62件 439,463,000원

2) 審議 및 結果

이 承認案은 1991年 11月 25日 第6回 臨時會議 第2次 本會議에 上程되어 財務課長의 提案說明이 있는 다음 鄭赫柱 第1研究分科委員長이 分科委員會에서 審査한 內容을 說明하고 申請한 原案대로 承認하자는 報告에 이어 金平洛 議員, 李文馥 議員, 全聖章 議員, 金鍾彩 議員, 郭載滿 議員, 全在煥 議員, 左斗行 議員의 討論이 있는 後 表決.

在席議員 28名 中 贊成 21名으로 原案 承認되었다.

다. 決議案(建議案)

◆ 西大門區條例審査特別委員會構成에 관한決議案

1) 提 案

이 決議案은 1991年 11月 1日 鄭日洙 議員 外 6人이 發議하였는데 그 主文과 提案理由는 다음과 같다.

【主 文】

- 地方自治法 第50條, 51條 및 서울特別市 西大門區議會 委員會條例 第2條의 規定에 의하여 서울特別市 西大門區에서 施行中에 있는 條例를 整備하기 위하여 서울特別市 西大門區 條例審査 特別委員會를 構成한다.
- 委員數는 9人으로 한다.
- 委員의 任期는 1年으로 한다.

【提案理由】

- 行政便宜主義로 되어있는 不必要하고 改正이 時急한 各種條例를 地域實情에 맞게 調整하여,
- 住民生活의 便益과 行政遂行을 보다 效率的으로 推進하기 위한 것임.

2) 審議 및 結果

이 決議案은 1991年 11月 15日 第6回 臨時會議 第2次 本會議에 上程되어 鄭日洙 議員의 提案說明이 있는 다음 左斗行 議員의 補充發言 後 表決.

在席議員 28名 中 贊成 27名으로 可決되었으며, 特委委員構成은 12月 定期會議 時에 構成키로 하였다.

◆ 自動車稅및담배消費稅의區稅轉換建議案

1) 提 案

이 建議案은 1991年 11月 5日 鄭日出 議員 外 9人이 發議하였는데 그 主文과 提案理由는 다음과 같다.

【主 文】

- 現行 地方稅法 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 市·郡稅로 徵收賦課되고 있는 自動車稅와 담배消費稅를 市·郡과 同一한 基礎地方自治團體인 自治區에서는 同法 第5條의 規定에 의하여 特別市 및 直轄市稅로 賦課 徵收되고 있어 自治財政의 擴充을 위하여 特別市 및 直轄市稅로 되어 있는 自動車稅와 담배消費稅를 區稅로 轉換될 수 있도록 地方稅法 關係規程을 改正하여 줄 것을 建議함.

【提案理由】

- 西大門區의 財政自立度는 42.7%로 財政基盤이 貧弱하여 長期的인 地域發展計劃과 住民福祉事業의 推進에 蹉跌이 豫想되는 바 區稅의 稅入을 높힘으로서 補助金 및 調整交付金의 依存度를 낮추고 財政自立度를 높여 實質的인 地方自治 具現을 可能하게 하기 위함.

2) 審議 및 結果

이 建議案은 1991年 11月 15日 第6回 臨時會議 第2次 本會議에 上程되어 鄭日出 議員의 提案說明이 있는 다음 異議없이 滿場一致로 建議文을 採擇하였다.

建 議 文

- 우리 서울特別市 西大門區議會 議員一同은 30年만에 맞이하는 地方自治時代에 40萬 西大門 區民과 함께 微力을 結集하여 地域發展과 基礎民主主義 實現에 邁進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내고장 發展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高貴한 뜻이 結實을 맺기위하여는 무엇보다도 財政이 隨伴된 事業이 많이 施行되어야 할 것이며, 그러기 위하여는 먼저 財政自立度의 基盤擴充이 先行되어야 地域實情에 맞는 實效性 있는 計劃이 可能할 것입니다.
- 西大門區를 비롯한 多數의 自治區 財政自立度는 財政基盤이 貧弱하여 長期的인 地域開發計劃과 住民福祉事業의 推進에 많은 隘路와 苦衷을 받고있는 實情으로 區稅의 稅入財源을 늘리고 交付金 等の 依存度를 낮추어 實質的인 地方自治가 實現될 수 있도록 制度的 補完이 要請되고 있습니다.
- 現行 地方稅法 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 市·郡稅로 徵收되고 있는 自動車稅와 담배消費稅를 市·郡과 同一한 基礎 地方自治團體인 自治區에서도 賦課徵收할 수 있도록 地方稅法을 改正함으로써 基礎團體間의 財政的 均衡을 圖謀하고 自立精神 涵養에 寄與할 수 있도록 改善策을 建議합니다.

1991. 11.

서울特別市 西大門區議會 議員一同

第7回 定期會

- 會 期 : 1991年 12月 2日~12月 31日(30日間)
- 召集根據 : 地方自治法 第38條

1. 概 況

第7回 定期會議는 西大門區議會 開院以後 첫번째의 定期會議로써 地方自治法 第38條의 規定에 의하여 1991年 12月 2日에 召集되었다.

會期 30日로 7次의 本會議와 1992年度 豫算案, 1990年度 決算 및 豫備費支出 承認案審查를 위한 豫算決算特別委員會와 行政事務監査를 위한 監査特別委員會, 區廳長提出 條例案의 事前審查를 위한 條例審查特別委員會가 設置運營되었다.

이번 定期會議에서는 區廳長을 비롯한 各局長이 出席하여 1992年度 豫算案 提案說明과 平素 議員들의 議政活動에서 導出된 問題點 및 建議事項에 대한 深度있는 質問答辯과 決算檢査 委員인 李文馥 議員의 1990年度 歲入歲出決算書에 대한 檢査報告가 있었으며 1992年度 歲入歲出豫算案, 1990年度 決算 및 豫備費 支出承認案, 金平洛議員 外 15人 發議 水道量水器 分離設置에 관한 建議案, 行政事務監査結果 是正要求 및 建議事項 移送에 관한 案과 區廳長 提出 西大門區 都市가스事業基金 設置條例案 等 12個 條例案을 審議 議決하였다.

2. 議會活動

【區政質問】

第7回 定期會議 第1次 本會議에서 區廳 各局長 및 關係公務員이 出席한 가운데 1991年 12月 4日부터 12月 6日까지 3日間 19名의 議員이 區政 全般에 걸쳐 豫算審

議와 區政監査를 對備한 深度있는 質問을 하였으며 그 現況과 質問 要旨는 다음과 같다.

○ 一般 現況

質 問 議 員 數	質 問 件 數	質問所管別		答辯類型		備 考
		區 廳	서울市	書 面	出席答辯	
19	87	85	2水道事務		87	

○ 所管部署別

總 計	區 所 管 業 務							市傘下 機 關 (水道)
	總務局	財務局	市民局	都市整備局	建設局	保健所	監査室	
87件	23	4	13	24	17	1	3	2

○ 議員 質問要旨

議 員 名	質 問 要 旨	議 員 名	質 問 要 旨
李文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營業許可와食品衛生에 관한 件 ○ 無許可住宅 救濟方法 ○ 長期 竣工未畢에 대한 向後 對策 ○ 支障電柱 向後對策 ○ 苦衷處理委員會 運營 ○ 새秩序 새生活 實踐方向提 示 ○ 江南, 江北의 水質比較現況 	全聖章	<ul style="list-style-type: none"> 發生 現況 ○ 環境美化員 循環勤務制度改 善 ○ 保安燈 修理에 관한 問題點 ○ 洞 行政車輛 使用擴大 要望 ○ 醫療保險 組合職員 勤務 指 導監督 ○ 洞事務所 小規模事業 不振 에 대한 對策 ○ 마을버스運行 問題點
全聖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新築住宅 竣工檢查 後 民願 	成明濟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弘濟川覆蓋 및 周邊圈開發

議員名	質問要旨	議員名	質問要旨
成明濟	<p>計劃과 議會의 協助事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保存價値가 없는 雜種區有 財產에 대한 拂下로 稅入 擴充 計劃 ○ 屋外 한글看板 設置를 위한 特定區域 指定 英文看板制 限 方案 計劃 ○ 自生 地域市場의 活性化方 案 ○ 유진商街앞 共用駐車場 牽 引車輛 保管場所로 變更한 事由 	宋榮于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2年 豫算事業中 城山路, 統一路 道路整備時 아스콘 工事 可能與否 ○ 議會議事堂이 保健所建物과 함께 쓰고있어 有機的인 協 助 問題와 能率性 未洽 施 設補完 및 別途建築 必要 ○ 統長 任期制 條例制定 要望 ○ 중근당 別館과 서울特別市 第1別館사이 再開發地域은 再開發遲延으로 私有財產權 에 대한 侵害가 擡頭, 解除 또는 財產稅課稅免除 檢討 ○ 忠正路洞 어린이놀이터 및 공부방이 없음 設置時期는 ○ 洞廳舍 位置 市民利用不便 移轉要望
全在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天然洞所在 市民아파트27棟 撤去 後 共用駐車場 設置要 望 ○ 天然洞 靈泉市場入口 안보 藥局앞 건널목 直進信號와 左回轉 可能도록 措置要望 ○ 天然洞 裏面道路의 電柱와 突出電柱 移轉 要望 ○ 天然洞 마을버스 不當料金 徵收(150원)是正對策 講究 ○ 街路燈 故障頻煩 補修를 위 한 技能職 公務員 採用改善 ○ 天然洞 80-1 ~ 109-2 道路 70m 擴張要望 	左斗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區議會議事堂 別途 建築 ○ 區民會館 事業計劃과 用途 變更 ○ 區廳舍 駐車場狹小 對策 講究 ○ 西大門保健所 位置 再檢討 ○ 高陽市 新設로 인한 交通 병목現象 對備 및 新村~水 色間 電鐵擴張 建議

議員名	質問要旨	議員名	質問要旨
左斗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梨花女大 構内 區有地 管理實態 ○ 연궁派出所建物(區有地)現況 	崔容完	<ul style="list-style-type: none"> 長期計劃의 內容과 豫算編成 ○ 公開行政推進을 위한 住民對話의 날 制定, 認許可事項의 不法行爲 對策 ○ 衛生業所 91年度 團束現況 및 行政處理結果
金源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마을所得事業 支援 ○ 豪華住宅 및 建築許可 未竣工 實態 ○ 89~90年 寄附滯納實態 	鄭赫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加佐1洞 廳舍敷地 買入 ○ 公務員 非違事實 摘發 및 處理內容 ○ 各種委員會 後援金 支援內譯 ○ 民防衛教育教官 手當支給 內譯 ○ 區·洞職員 人事問題
鄭日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大型建築物에 대한 適法許可 ○ 工事契約事務의 效率的 處理方法 ○ 民間團體支援 適法性 	朴正來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區廳, 區民, 區議會 合同懇談會 開催方案 講究
鄭日出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大氣汚染 實態 ○ 障礙人 支援 促進 ○ 生活保護對象者 保護 ○ 幼稚園 및 幼兒園 運營 ○ 어린이놀이터 施設管理 ○ 清掃代行業體 指導 ○ 사천교 高架道路 覆蓋 	金廷炫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駐車團束公務員 服裝着用 團束 ○ 駐車團束過怠料收入 用途 ○ 施設管理工團 運營 街路 駐車場 區廳運營
趙敏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洞職員 士氣振作 	具滋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區 財政自立에 대한 問題 ○ 統長選任과 任期 ○ 區廳 人事의 問題點
鄭炳八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弘恩洞 9-507 一帶 小公園 幼兒園設置 ○ 弘恩2洞 管內 水害被害 道路 補修 ○ 西部幹線道路 建設에 관한 問題點 		
崔容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地域發展協議會 構成 및 		

議員名	質問要旨	議員名	質問要旨
具滋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都市計劃에 따른 私有財産 權 制限의 問題點 ○ 土地形質變更, 地目變更, 風致地區, 公園用地解除 ○ 都市計劃決定後 道路 未開設 對策 	林在鮮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南加佐2洞 241-1부터 169-7間 道路開設 및 都市計劃決定 早期施行 ○ 交通設備(信號體系)에 대한 質問
金平洛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再開發業務 推進 ○ 建築許可 및 竣工檢査 ○ 駐車違反 團束 問題點 ○ 道路 및 下水道工事に 관한 事項 ○ 어린이놀이터, 小公園에 관한 事項 ○ 文化會館 및 體育센터建立 		
尹益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阿峴2洞 市民아파트地域 再開發對策 ○ 北阿峴2洞 236-53 一帶 14世帶 替費地使用料 負擔 ○ 保安燈 管理 問題點 ○ 清掃行政 改善 方案 ○ 北阿峴2洞 210一帶 給水對策 		

【1991年度 行政事務監査】

第7回 定期會議 第1次 本會議에서 地方自治法 第36條의 規定에 의하여 1991年度 西大門區 行政事務監査計劃과 特別委員會構成 議決이 있었는데 監査特委는 議長, 副議長을 除外한 全 議員을 3個特委로 構成하여 區廳으로 부터 監査資料를 提出받아 3日동안 委員會別로 區政監査를 實施하고 監査結果를 第7次 本會議에 報告한 後 是正要求 및 建議事項을 區廳에 移送하여 處理토록 議決하였으며 本會議에서 議決로 承認된 監査計劃은 別紙와 같다.

【條例審査特別委員會構成】

第6回 臨時會 第2次 本會議에서 條例審査特別委員會 構成에 관한 決議案을 議決하고 委員選任에 대하여는 다음 會期로 미루어진 後 第7回 定期會 第2次 本會議에 條例審査特別委員會委員 選任의 件을 上程하여 議長이 推薦한 9名의 議員에 대한 表決結果 在席議員 21名 全員 贊成으로 選任이 可決되었다.

選任된 條例審査特別委員會 委員은 다음과 같다.

趙敏行 議員	成明濟 議員	朴老鉉 議員	李鳳洙 議員
崔容完 議員	郭載滿 議員	金平洛 議員	鄭炳八 議員
具滋億 議員			

條例審査特別委員會는 第1次 委員會에서 委員長과 幹事를 選任한 後 第2次 特別委員會를 開議하여 區廳長으로부터 提出된 條例案 12件을 審査하여 第7回 定期會 第6次 本會議에 修正案과 審査結果를 報告한 後 定期會 會期中 活動을 終了하였다.

【別 紙】

1991年度 區政監査 計劃

1. 目 的

地方自治法 第36條의 規定에 의하여 區政監査를 實施함으로써 區政運營의 實態를 正確히 파악하여 議政活動에 寄與하고 1992年度 豫算案 等の 深度있는 審議를 위한 資料 및 情報의 獲得을 目的으로 함.

2. 監査時期：1991年 12月 9日(월)~12月 11日(수)：3日間

3. 監査實施

○ 對象機關：區廳 5局 1所 3室 27課

○ 對象業務：地方自治法 第9條에 規定된 地方自治團體의 事務

{固有事務+團體委任事務(機關委任事務除外)}

※ 監査對象事務의 範圍는 “서울特別市西大門區議會行政監査및調査에 관한條例” 附則의 規定에 의하여 1991. 4. 15 以後의 業務에 限함.

4. 監査委員의 編成

○ 研究分科委員會 全 委員을 監査委員으로 編成

○ 研究分科別 所管 事務에 限하여 監査 實施

第1監査特別委員會	議 員 名	監査 對象 分野	備 考
委 員 長 幹 事 委 員 委 員 委 員 委 員 委 員 委 員	鄭 赫 柱 金 鍾 彩 具 滋 億 曹 甲 鉉 李 文 馥 崔 容 完 朴 正 來 尹 益 洙 金 源 珠	總務局, 財務局, 文化 公報室 市民奉仕室, 監査室에 屬하는 所管 業務	第1研究 分科委員會

第2監査特別委員會	議 員 名	監査 對象 分野	備 考
委 員 長 幹 事 委 員 委 員 委 員 委 員 委 員 委 員	左 斗 行 金 平 洛 鄭 日 洙 鄭 炳 八 宋 榮 于 金 廷 炫 李 鳳 洙 丁 和 鎮 郭 載 滿	都市整備局, 建設局에 屬하는 所管 業務	第2研究 分科委員會

第3監査特別委員會	議 員 名	監査 對象 分野	備 考
委 員 長 幹 事 委 員 委 員 委 員 委 員 委 員 委 員	林 在 鮮 朴 老 鉉 金 永 一 趙 敏 行 姜 碩 宗 鄭 日 出 全 聖 章 全 在 煥 成 明 濟	市民局, 保健所에 屬하는 業務. 他 研究分科에 屬하지 않는 事項	第3研究 分科委員會

5. 監査場所

監 査 場 所		備 考
研究分科 委員會別	場 所	
第1研究分科委員會	企劃狀況室	
第2研究分科委員會	地下狀況室	
第3研究分科委員會	平統事務室	

6. 監査 事務 補助者

區 分	特別委員會	職 級	性 名	備 考
事務 補助	第 1 監査 特別委員會	地方行政 主事補	金 潤 兌	
		地方行政 書 記	金 吉 綠	
	第 2 監査 特別委員會	地方行政 主 事	孫 判 銖	
地方行政 主事補		韓 潤 澤		
地方行政 書 記		金 向 敏		
第 3 監査 特別委員會	地方行政 主 事	李 琮 煥		
	地方行政 主事補	安 鎮 錫		
	地方行政 書 記	安 勝 峻		
速 記 士		技 能 職	張 春 子 李 英 順 成 耆 州 朴 美 羅	
案內表決士		技 能 職	朴 玄 珠	

7. 監査 方法 吳 節次

○ 方 法

- 業務報告 聽取
- 書類提出
- 現地確認
- 關係人 出席, 證人 意見陳述

○ 受監 節次

- 監査實施 宣言 吳 委員長 人事
- 分科委員會別 該當 局長 人事 吳 區 幹部 紹介
- 業務報告 吳 質問 答辯
- 關係人 出席 意見陳述(補助機關)
- 現地 確認實施
- 監査結果 講評 吳 終了 宣言

○ 監査報告書 作成提出

- 監査終了 後 監査特別委員會에서 報告書 採擇, 委員長이 本會議 報告

3. 重要案件 處理經過 및 結果

가. 條例案

◆ 서울特別市西大門區都市가스事業基金設置條例案

1) 提 案

이 條例案은 1991年 11月 14日 西大門區廳長이 提出하였으며 制定理由와 主要骨子は 다음과 같다.

【制定理由】

- 西大門區의 都市가스 補給擴大와 住民生活 便益增進을 위하여 都市가스 事業基金을 設置 造成하여 需用家 및 都市가스 事業者에게 使用家 施設資金 및 供給者 施設資金을 安定的으로 融資하기 위함.

【主要骨子】

- 都市가스 事業基金 造成은 西大門區 一般會計 出損金과 基金運用 收益으로 한다.
- 基金의 用途는 既存住宅 또는 新築되는 單獨住宅의 使用施設 設置費와 其他區廳長이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供給施設 및 使用施設 設置費로 한다.
- 基金의 運用管理를 위하여 區廳長이 都市가스 事業基金計座를 別途設置하고 基金은 市中銀行에 委託 管理한다.
- 基金의 融資對象은 需用가와 一般 都市가스 事業者로 하며 利子率은 需用家 施設資金 年利 8%(3年 均分償還), 供給者 施設資金 年利 8%(3年거치 5年 分割償還)로 한다.

- 施行期間은 都市가스 補給率 70% 達成時까지로 하며 條例施行에 관한 必要한 事項은 規則으로 定한다.

2) 審議 및 結果

이 條例案은 第3研究分科 委員會에서 條例制定 理由와 妥當性, 基金管理 및 運用과 融資比率 等 全般的인 事項을 審議한 바 있으며 基金支援을 需用家 80% 供給者 20%의 比率로 惠澤이 갈 수 있도록 推進토록 하고 區廳 原案대로 議決, 第6次 本會議에 報告한 바 質問討論을 省略하고 異議없이 可決되었다.

◆ 서울特別市西大門區行政權限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

1) 提 案

이 改正 條例案은 1991年 12月 4日 西大門區廳長이 提出하였으며 改正理由와 主要骨子는 다음과 같다.

【改正理由】

- 毒劇物에 관한 法律의 廢止와 有害化學物 管理法이 制定됨에 따라 서울特別市 西大門區 行政權限 委任條例 規程에 의하여 保健所長에게 再委任 遂行되어 온 毒劇物 販賣業에 대한 事務가 區廳 環境課로 移管되는 바 同 條例 委任事務 25欄의 削除 改正을 爲함.

【主要骨子】

서울特別市西大門區行政權限委任條例 別表 25欄을 削除 改正

2) 審議 및 結果

이 改正條例案은 第6回 臨時會議 第2次 本會議의 議決로 設置된 條例審査 特別

委員會 第2次 會議에서 提案說明과 質問討論을 거친 後 原案議決되었으며 第7回 定期會議 第6次 本會議에서 條例審查特別委員會 委員長 成明濟 議員의 審查報告가 있는 後 表決結果 區廳 原案대로 可決되었다.

◆ 서울特別市西大門區稅減免에 관한改正條例案(9件)

1) 提 案

서울特別市 西大門區稅 減免에 관한 改正條例案은 서울特別市 西大門區 中古自動車 賣買業者의 賣買用 中古乘用車에 대한 區稅課稅免除 및 不均一課稅에 관한 條例中 改正條例案 外 8件의 改正條例案으로 1991年 12月 6日 西大門區廳長으로 부터 提出되었으며 改正條例案別 改正理由와 主要骨子は 다음과 같다.

- 서울特別市西大門區中古自動車賣買業者의賣買用中古自動車에대한區稅課稅免除및不均一課稅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改正理由】

中古自動車 賣買業者의 商品用 中古自動車에 대하여 區稅課稅 免除에 관한 本條例의 施行期間이 1991年 12月 31日로 滿了됨에 따라 適用時限을 3年 延長하기 爲 함.

【主要骨子】

適用時限을 1994年 12月 31日까지로 한다.

- 서울特別市西大門區國家有功者所有土地,建物및自動車의課稅免除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改正理由】

國家有功者 等に 관한 法律에 適用을 받는 傷夷軍警에 대한 補綴用乘用車에 대하여 對象基準이 地方稅法의 改正으로 인하여 自動車의 分類가 氣筒數에 관한 基準이 없 어지고 排氣量 基準으로 됨에 따라 이를 一致시키고 國家有功 傷夷者의 級數 및 該 當番號가 條例條文 本文에 引用되었던 것을 削除하여 別添 添附 理解가 쉽도록 條文 을 整理하고 條例의 施行期間이 1991年 12月 31日로 滿了되는 것을 3年 延長하여 國 家有功者에 대한 稅制惠澤을 繼續 賦與하기 爲함.

【主要骨子】

國家有功者 中 重傷夷者에 대한 補綴用 乘用車의 免許稅 免稅對象을 4氣筒以下 自 動車에서 2000cc以下 自動車로 改正 課稅免除 對象이 되는 傷夷者에 대한 級數 및 該當番號를 條例條文에 直接 規定하던 것을 削除하고 免除對象을 上枝系統 傷夷者를 追加하여 國家有功者 禮遇 等に 관한 法律施行令 別表3에서 引用한 表를 만들어 添 附.

1991年 12月 31日로 施行期間이 滿了되는 條例의 適用時限을 1994年 12月 24日까 지로 延長함.

○ 서울特別市西大門區地方公社等에대한區稅課稅免除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改正理由】

地方公企業法의 規程에 의하여 設立된 地方公社 및 公團에 대하여 서울特別市가 設立한 法人으로서 公共事業 遂行에 必要한 資金支援 等を 해주면서 地方稅를 課稅 하게 됨은 不合理하여 課稅 免除條例에 의하여 財産稅 및 事業所稅를 減免하고 있는 바 施行期間이 없는 것을 1994年 12月 31日까지 適用時限을 延長하기 위함.

【主要骨子】

事業所稅(財産割)를 免除하고, 다음 各號의 法人에 대하여는 事業所稅(從業員割)를

免除한다.

1. 서울特別市 地下鐵公社
2. 서울特別市 施設管理公團
3. 서울特別市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公社
4. 서울特別市 都市開發公社

條例의 適用時限을 1994年 12月 31日까지로 한다.

○ 서울特別市西大門區賃貸住宅建設에대한區稅不均一課稅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改正理由】

60m²以下로 區劃된 10世帶 以上の 아파트, 聯立住宅, 集團住宅 및 5世帶 以上の 多世帶 賃貸住宅에 대하여 財産稅 및 綜合土地稅의 100분의 50을 輕減適用하는 內容으로 된 本條例의 施行期間이 1991年 12月 31日로 滿了됨에 따라 適用時限을 3年間 延長하기 위함.

【主要骨子】

條例의 適用時限을 1994年 12月 31日까지로 한다.

○ 서울特別市西大門區都市整備整頓에다른區稅課稅免除條例中改正條例案

【改正理由】

現行 條例內容中 다른 條例를 引用한 條文이 市條例에서 自治區條例로 移管되어 이에 關聯된 條文을 整理하고 施行期間이 없던 것을 1994年 12月 31日까지 適用時限을 定하기 위함.

【主要骨子】

條文에 引用된 서울特別市 無許可建物 整備事業 補償金支給 條例가 西大門區 無許

可建物 整備에 대한 補償金支給條例로 移管됨에 따른 條文整理.

附則에 施行期間이 없던 것을 1994年 12月 31日까지로 適用期間 定함.

○ 서울特別市西大門區公共用地에編入된私權制限土地에대한綜合土地稅不均一課稅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改正理由】

公共用地로 都市計劃時 決定이 된 以後 長期間 事業施行이 되지 아니하므로 인하여 私權이 制限된 土地에 대하여 綜合土地稅를 課稅함에 있어 “地籍告示後 5年 經過後” 輕減하던 것을 “地籍告示 即時”로 하고 鐵道邊 施設綠地를 追加課稅免除 基準을 擴大하고 條例의 施行期間도 今年末로 滿了되는 것을 3年 延長하기 爲함.

【主要骨子】

“地籍告示된 後 5年 經過된”을 “地籍告示된 土地와 鐵道法 第76條의 規定에 의하여 建築 등이 制限된”으로 課稅免除 時期와 公共用地에 鐵道邊 施設綠地 追加 擴大 適用時限을 1994年 12月 31日까지 3年間 延長

○ 서울特別市西大門區새마을事業基金支援을위한區稅課稅免除條例中改正條例案

【改正理由】

새마을聚落構造 改善事業에 따라 聚落構造 改善建物에 대한 財産稅 및 事業所稅 등을 5年間 免除하는 本條例의 施行期間이 1991年 12月 31日로 滿了됨에 따라 適用時限을 3年 延長하기 爲함.

【主要骨子】

條例의 適用時限을 1994年 12月 31日까지 延長함.

○ 서울特別市西大門區社會教育施設에대한區稅課稅免除條例中改正條例案

【改正理由】

모든 國民에게 平生을 通한 社會教育 機會를 賦與하기 위한 社會教育法의 規程에 따라 登錄된 社會教育 專用施設에 대하여 財產稅 및 綜合土地稅를 免除하는 條例 內容中 博物館法 廢止로 “博物館法의 適用을 받는 博物館 및 準博物館施設”을 “博物館 및 美術振興法의 適用을 받는 博物館 및 美術館施設”로 하고 施行期間이 1991年 12月 31日로 滿了됨에 따라 適用期間을 3年間 延長하기 爲함.

【主要骨子】

條例條文中 “博物館 및 美術振興法의 適用을 받는 博物館 및 美術館施設”로 內容 變更

條例의 適用時限을 1994年 12月 31日까지 延長

○ 서울特別市西大門區駐車場에대한區稅課稅免除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改正理由】

駐車規模 20臺以上の 露外駐車場에 대하여 設置 當時 財產稅 및 綜合土地稅 및 事業所稅를 5年間 免除하여 주고있는 本條例의 內容中 駐車專用 建築物이 없는 露天駐車場에 대한 課稅免除 基準을 判斷하는 方法을 明確히 定하고 條例의 施行期間이 1991年 12月 31日로 滿了됨에 따라 施行期間을 3年 延長하기 爲함.

【主要骨子】

- 駐車用 建築物이 없이 駐車用 土地에 設置된 露天 駐車場에 대하여 都市計劃稅 免除基準이 되는 1年間 駐車場 收入金額이 當該 土地의 公示地價의 7%以上이 되어야 하는 바 收入金額 算定基準日字를 直前年度 6月 1日부터 當該年度 5月

31일까지로 定함.

- 事業開始 期間이 1年 未滿인 境遇 1日平均 金額에 365日을 곱한 金額을 年間 收入金額으로 함.

2) 審議 및 結果

서울特別市 西大門區 中古自動車 賣買業者의 賣買用 中古自動車에 대한 區稅課稅 免除 및 不均一課稅에 관한 條例中 改正條例案 外 8件의 區稅減免 및 不均一課稅에 대한 改正條例案은 第6回 臨時會議 第2次 本會議의 議決로 設置된 條例審查 特別委員會 第2次 會議에 回附되어 豫備審查를 爲한 提案說明과 質疑討論을 거친 後 原案議決되었으며 第7回 定期會議 第6次 本會議에 一括上程되어 條例審查特別 委員長 成明濟 議員의 審查報告가 있는 後 表決結果 異議없이 區廳 原案대로 可 決되었다.

◆ 서울特別市西大門區區稅條例改正條例案

1) 提 案

이 條例案은 1991年 12月 19日 西大門區廳長이 提出하였으며 改正理由와 主要 骨子は 다음과 같다.

【改正理由】

地方稅法이 1991年 12月 14日 法律 第4415號로 改正 公布됨에 따라 法令과 條例의 規定과 重複되거나 不一致하는 部分을 削除 및 修正하여 1992年 1月 1日부터 施行하기 위함.

【主要骨子】

(上位法과 重複條項 削除)

- 免許稅의 “納稅義務者 및 課稅標準稅率”條項
- 財産稅의 “納稅義務者條項, 大型船舶에 대한 輕減條項, 現況賦課條項, 稅率條項, 課稅基準日 및 納期條項, 徵收方法 等 條項”
- 綜合土地稅의 “課稅對象 및 納稅義務者條項, 課稅標準 및 稅率條項, 現況賦課, 課稅基準日 및 納期, 賦課徵收, 稅額調整, 少額不徵收條項, 非課稅 및 減免適用者의 申告事項, 供覽 및 異議申請, 課稅臺帳備置條項”削除
- 事業所稅의 “納稅義務者, 課稅標準事項, 從業員割納稅義務申告 및 加算稅 條項, 免稅点條項”削除
(上位法과 一致 또는 委任 받은 事項)
- 綜合土地稅의 申告期限의 延長: 10日에서 30日
- 財産割 事業所稅의 課稅單位 變更: 3.3m²당 500원에서 1m²당 250원

2) 審議 및 結果

이 改正條例案은 第6回 臨時會議 第2次 本會議의 議決로 設置된 條例審查特別委員會 第2次 會議에서 提案說明과 質問討論을 거친 後 原案 議決되었으며 第7回 定期會議 第6次 本會議에 上程되어 條例審查特別委員會 成明濟 委員長의 審査報告後 異議없이 區廳 原案대로 可決되었다.

◆ 서울特別市西大門區公印條例案

1) 提 案

이 條例案은 1991年 12月 19日 西大門區廳長이 提出하였으며 提案理由와 主要骨子は 다음과 같다.

【提案理由】

事務管理規程(大統領令 第13390號 91. 6. 19) 및 同規程 施行規則(總理令 第395號

91. 9. 30)이 制定 公布됨에 따라 現行 “서울特別市西大門區官印規則”을 廢止하고 “서울特別市西大門區公印條例”를 制定함으로써 公印官守 및 管理에 忠實을 基하기 爲한 管理方法을 定하기 爲함.

【主要骨子】

- 公印의 備置 및 官守에 관한 基本原則을 定함(官守部署 指定)
 - 西大門區廳長 職印 : 市民奉仕室長
 - 事業所長 職印 : 文書取扱 部署長
 - 洞 長 職印 : 一般事務用-事務長, 民願事務用-民願主任
- 公印의 彫刻, 種類, 規格, 登錄, 公告와 印影의 印刷使用 細部規定 및 書式

2) 審議 및 結果

이 條例案은 第6回 臨時會議 第2次 本會議의 議決로 設置된 條例審查特別委員會 第2次 委員會에서 提案說明과 質疑討論을 거친 後 金平洛 議員의 修正動議에 대하여 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修正案을 採擇, 第7回 定期會議 第6次 本會議에 上程하였으며 條例審查特別委員會 成明濟 委員長의 審查報告와 崔容完 議員의 補充說明을 들은 後 修正案을 異議없이 可決하였으며 修正案의 理由와 主要骨子是 다음과 같다.

【修正理由】

公印이 印刷된 用紙의 管理를 強化하기 爲한 條文 修正과 條文新設

【主要骨子】

- 公印 印刷用紙 管理臺帳에 枚數를 確認 捺印토록 함.
- 公印이 印刷된 用紙에 一連番號를 賦與

【修正案】

서울特別市西大門區公印條例案에대한修正案

서울特別市西大門區公印條例中 다음과 같이 修正한다.

案 第3條(印影의保存)2項中 “處理課의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印의 印影을 印刷하여 使用하는 때에는 別紙 第4號 書式의 公印 印刷用紙 管理臺帳을 備置하고 그 使用內譯을 記錄維持하여야 한다”를 “處理課의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印의 印影을 印刷하여 使用하는 때에는 別紙 第4號 書式의 公印 印刷用紙 管理臺帳을 備置하고 그 使用內譯을 記錄, 維持하며 特히 印刷된 枚數를 確認 捺印하여야 한다.”

案 第13條(印影의保存) 第3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③ 公印이 印刷된 用紙는 一連番號를 賦與한다.

나. 豫算案

◆ 1992年度歲入·歲出豫算案

1) 提 案

1992年度 歲入·歲出豫算案은 地方自治法 第35條 및 第118條 2項 規定에 의하여 1991年 11月 30日 西大門區廳長으로 부터 提出되었으며 提案理由와 主要骨子 는 다음과 같다.

【提案理由】

豫算은 1會計年度에 있어 地方自治團體가 收入·支出의 豫定額 또는 計劃案이며 地方自治團體가 遂行하여야 할 財政活動의 指針내지는 事業計劃을 나타내는 것으로 關聯法規에 의거 議會의 承認을 얻기 위함.

【主要骨子】

○ '92 歲入·歲出豫算案 規模

(單位：千圓)

會計別		'92豫算額	'91豫算額	增 減	%	備 考
總 計		60,165,969	51,978,289	8,187,680	15.3	
一般會計		58,976,985	50,627,380	8,349,605	16.5	
特別會計	計	1,188,984	1,350,909	161,925	12.0	
	醫療保護基金	1,072,709	952,995	119,714	12.6	
	새마을所得特別支援事業	116,275	397,914	281,639	70.8	

2) 審議 및 結果

- 1992年度 歲入·歲出豫算案은 第7回 定期會議 第1次 本會議에 報告되어 總務局長의 提案說明을 들은 後 第2次 本會議에서 豫算決算特別委員會 構成의 件이 上程되어 議長이 推薦한 10名의 議員(李文馥, 金鍾彩, 金源珠, 曹甲鉉, 丁和鎮, 金廷炫, 宋榮于, 姜碩宗, 全在煥, 金永一)에 대한 選任與否를 表決한 바 在席議員 全員의 贊成에 따라 豫算決算特別委員會 委員을 選任하였다.
- '92年度 豫算案의 審議를 위하여 1991年 12月 12日부터 12月 23日까지 8次의 委員會를 開會하여 室, 課別 所管豫算案에 대한 提案說明과 質疑 答辯을 實施하고 深度있는 審議를 거쳐 修正 및 削減에 대한 範圍를 定하고 第9次 委員會에서 計數調整小委員會를 構成 討論을 거쳐 確定한 1992年度 豫算案 修正案을 委員會 議決로 可決하였다.

豫算決算特別委員會의 豫算案 修正內容은 다음과 같다.

【一般會計】

—歲入·歲出 總計額은 變動事項 없음(總 58,976,985천원)—

削 減：歲出豫算의 8個 事業費 中 614,644천원

增 額 他 事業費 增額：368,838천원

豫 備 費 增額：245,806천원

- 1991. 12. 26 第6次 本會議에서 丁和鎭 豫算決算特別委員長의 審査經過와 豫算案 修正案에 대한 委員會 議決事項 報告가 있는 後 崔容完 議員外 10人이 發議한 豫算決算 特別委員會 修正案에 대한 修正動議를 優先 上程하여 動議議員의 提案說明을 들은 後 動議 成立에 대한 異議與否를 提議한 바 三請으로 成立되었으며 崔容完 議員外 10人이 發議한 修正動議案의 動議理由와 主要骨子는 다음과 같다.

(修正 動議案)

【動議理由】

統·班長 士氣 振作策의 一換으로 支援되는 서울新聞 購讀 補助는 統·班長 定員의 70% 範圍에서 豫算이 策定된 것임.

豫算決算特別委員會의 서울新聞購讀 補助豫算 削減은 統·班長의 士氣振作에 逆行되는 것이므로 區廳長 提出 豫算案대로 修正

【主要骨子】

豫算決算特別委員會 議決豫算案 修正案(歲出)中 削減調整된 서울新聞 購讀 補助額 197,640천원을 本豫算案과 同一하게 222,840천원으로 調整

○ 이어 鄭日出 議員의 修正動議案에 대한 改議動議가 있어 三請으로 議題 成立되었다.

本會議는 두 議題를 表決한 結果 豫算決算特別委員會 修正案에 대한 修正動議는 在席議員 23名 中 贊成 15名으로 可決되었으며, 改議動議는 贊成 6名으로 否決되었다.

本會議 討論中 金永一 議員의 豫算案 再審査 動議가 提案되어 三請으로 議題 成立되어 表決한 結果 在席議員 23名 中 贊成 5名, 反對 15名으로 否決되었다.

質疑를 終結한 後 1992年度 歲入·歲出 豫算案에 대하여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서 修正한 事項과 崔容完 議員 外 10人이 發議 可決된 修正動議案 外의 事項은 區廳長 提出 原案대로 承認할 것을 表決한 結果 在席議員 22名 中 贊成 16名으로 豫算案은 承認可決되었다. 本會議에서 可決된 豫算案 修正案은 다음과 같다.

(1992年度 歲入·歲出豫算案 修正案)

1. 豫算案 修正案 規模

○ 歲 出

(單位：千圓)

區 分	1992豫算(案)	修 正 額			修 正 案
		削 減 額	增 額	增 () 減	
一般會計	58,976,985	589,444	589,444	0	58,976,985
特別會計	1,188,984	0	0	0	1,188,984
計	60,165,969	589,444	589,444	0	60,165,969

2. 修正內譯(一般會計)

【歲 出】

－ 削 減	總	589,444 千圓
○ 廳舍유리창 洗滌(總務課)		9,179 千圓
○ 쓰레기處理 環境美化員單價(清掃課)		152,797 千圓
○ 西大門獨立公園廳舍暖房運營費(公園綠地課)		22,944 千圓
○ 危險施設物 및 災害對策 補修費(土木課)		50,000 千圓
○ 北阿峴2洞 삼지마당造成(公園綠地課)		250,000 千圓
○ 성산로, 의주로, 통일로 整備(土木課)		100,000 千圓
○ 複寫用紙 購入(全部署)		4,524 千圓
－ 增 額	總	589,444 千圓
○ 地域新聞(4種) 部數 調整(文化公報室)		9,828 千圓
○ 退職手當 및 貸與 獎學金負擔(總務課)		42,884 千圓
○ 냉천동 우물 補修費		5,000 千圓
○ 山林 害蟲救濟 人件費		7,754 千圓
○ 道路管理 人夫費(土木課)		13,052 千圓
○ 支障電柱 移設費(土木課)		8,250 千圓
○ 弘濟3洞 삼지마당造成(公園綠地課)		250,000 千圓
○ 下水施設 管理人夫賃(下水課)		32,070 千圓
○ 豫備費		220,606 千圓

3. 豫算科目別, 事業內容別 修正内譯

(歲出)…削減

豫算科目	事業內容	'92豫算案	修正案	增減
章 · 款 · 項				
200000 一般行政費	廳舍			
22000 內務行政費	유리窓	29,804	20,625	△9,179
22100 內務行政	洗滌等			
30000 社會福祉費	쓰레기			
33000 環境綠地費	處理處	6,512,774	6,359,977	△152,797
33100 環境衛生				
33200 公園綠地	公園管理署費 公官運營	148,512	125,568	△22,944
50000 地域開發費	危險施設物			
51000 建設事業費	災害對策費 補修費	50,000	0	△50,000
51100 建設管理	北阿峴2洞 峯造	250,000	0	△50,000
	城山路, 州路, 統義步 道整備	1,380,000	1,280,000	△100,000
20000 一般行政費	民願室			
22000 內務行政費	運複寫用紙 購入	8,951	8,056	△895
22100 內務行政				
22200 洞行政 指導	複寫用紙 購入	21,981	19,783	△2,198
23000 財務行政費	電子複寫 用紙			
23100 地方收入 管理		12,296	11,066	△1,230
30000 社會福祉費	複寫用紙 購入			
32000 保健衛生費		1,441	1,297	△144
32100 保健管理				
削減計		8,416,334	7,826,890	△589,444

4. 事業內容別 修正事由

○ 削減…589,444千원

(單位：千원)

事業內容	削減額	削減事由
廳舍유리窓 洗滌 等	9,179	年6회에서 分期 1回實施 總4回로 回收 調整
쓰레기 處理	152,797	環境美化員의 單價調整
西大門 獨立公園의 廳舍煖房官署 運營費	22,944	實 煖房日數 調整(105→75日)
危險施設物 및 災害對策 補修費	50,000	豫備費로 執行이 可能
北阿峴2洞 삼지마당 造成	250,000	
城山路, 統一路, 義州路, 步道整備	100,000	區間 物量 調整
複寫用紙購入費	4,524	10% 物資節約으로 豫算節減

○ 增額…589,444千원

(單位：千원)

事業內容	增額	增額事由
其他 需用費 및 手數料	9,828	地域新聞 4種 部數調整 (216部→432部)
機關運營費	42,884	退職手當 및 貸與獎學金 負擔增加
냉천동우물 補修費	5,000	住民宿願事業의 解決
綠地管理 基本經常費	7,754	山林害蟲 救濟 事業 擴大
道路管理	21,302	道路管理人夫賃 및 支障電柱移設 費用 增額
弘濟3洞 삼지마당 造成	250,000	
下水事業	32,070	下水施設管理 人夫賃 調整
豫備費	220,606	歲出削減額中 事業費增額除外額

◆ 1990年度 歲入·歲出 決算案, 豫備費支出 承認案

1) 提 案

1990年度 歲入·歲出決算案 및 豫備費支出 承認案은 1991年 11月 30日 西大門 區廳長으로부터 地方自治法 第5條의 規定에 의하여 提出되었으며 提案理由와 主要骨子는 다음과 같다.

【提案理由】

地方自治法 第125條 및 同施行令 第47條의 規定에 의하여 決算檢査가 完了된 1990年度 歲入·歲出決算 및 豫備費支出 承認案에 대하여 地方財政法 施行令 第38條의 規定에 의하여 議會의 承認을 받기 위함.

【主要骨子】

○ 1990年度 一般會計 및 特別會計의 決算 總括

- 歲入豫算額 44,238,730,160원, 收 納 額 46,203,352,869원
- 歲出豫算額 42,471,863,000원, 歲出豫算現額 44,238,730,160원
- 支 出 額 35,843,322,550원 (差引殘額 10,360,030,319원)
- 翌年度 會計別移越
 - 事 故 移 越 : 2,430,887,930원
 - 補助金執行殘額 : 44,000,602원
 - 純歲計 剩餘金 : 7,885,141,787원

○ 1990年度 一般會計 決算

- 歲入豫算額 41,101,796,000원, 收 納 額 44,832,347,399원
- 歲出豫算額 41,101,796,000원, 歲出豫算現額 42,868,663,160원

－ 支 出 額 34,778,345,030원 (差引殘額 10,054,002,369원)

－ 翌年度 會計別移越

┌	事 故 移 越 : 2,430,887,930원
└	補助金執行殘額 : 44,000,602원

－ 純歲計 剩餘金 : 7,579,113,837원

○ 1990年度 特別會計 決算

－ 收入豫算額 1,370,067,000원, 收 納 額 1,371,005,470원

－ 歲出豫算額 1,370,067,000원, 歲出豫算現額 1,370,067,000원

－ 支 出 額 1,064,977,520원 (差引殘額 306,027,950원)

－ 翌年度 會計別移越

┌	事 故 移 越 : 0원
└	補助金執行殘額 : 0원

－ 純歲計 剩餘金 : 306,027,950원

○ 豫備費 支出規模

－ 一般會計 豫備費支出

┌	承認額 254,009,000원, 支出額 222,053,580원,
└	不用額 31,955,420원

2) 審議 및 結果

1990年度 歲入·歲出決算案 및 豫備費 支出承認案은 1991年 12月 31日 第3次 豫算決算 特別委員會에서 金光秀 財務局長의 提案說明과 決算檢查委員인 李文馥 議員의 檢查報告가 있는 後 決算 및 豫備費 支出事項에 대한 問題點을 1992年度 豫算審議時 反映할 것과 豫算執行時 參考하여 改善할 것을 促求키로 하고 區廳長 提出 原案대로 承認議決하였으며 12月 26日 第7回 定期會議 第6次 本會議에서 委員長 審查經過 報告 後 承認與否를 表決한 바 在席議員 全員の 贊成으로 承認 可 決되었다.

다. 建議案

◆ 水道量水器分離設置에 관한 建議案

1) 提 案

이 建議案은 1991년 11월 8일 金平洛議員 外 15인이 發議하였는데 그 主文과 提案理由는 다음과 같다.

【主 文】

서울特別市給水條例 第4條第1項의 專用給水 “1戶 또는 1個所에 대한 給水로서 專用하는 것”이라고 明示하여 (壹)水栓 (壹)量水器만을 設置케 根據하고 있는 바, 同條例 第16條(量水器의 設置)第3項을 新設 “需要者의 申請에 의하여 量水器를 分離設置할 수 있다”로 改正을 建議토록 한다.

【提案理由】

- 서울特別市 水道事業所에서 現在 施行하고 있는 壹 水栓 壹 量水器는 어느法, 條例, 規則, 指針에도 明示되어 있지 않은 違法 不當한 事項
- 한 建物에 여러 業種이 存在할 境遇 負擔이 제일 높은 業種으로 指定, 下等의 關聯이 없는 業種도 被害를 보는 바 需用者의 負擔原則에 違背
- 한방울의 물도 아껴 써야하는 節約의 次元에서도 使用量의 使用者 負擔 事項으로 現 韓國電力公社에서 使用하고 있는 것과 같이 量水器를 需要者 要求대로 別途 設置케 하여 使用業種, 使用家口마다 負擔케 하는 適法, 正當한 料金負擔으로 40萬 區民의 生活便益을 圖謀코자 함.

2) 審議 및 結果

이 建議案은 1991년 12월 4일 第7回 定期會議 第3次 本會議에 上程되어 金平洛議員의 提案說明이 있는 다음 異議없이 滿場一致로 建議文을 採擇하였다.

建 議 文

- 現行 서울特別市給水條例 第4條1項에는 專用給水 “1戶 또는 1個所에 대한 給水로서 專用 하는 것”이라고 明示하여 일(壹)수전 일(壹)量水器만을 設置토록 根據하고 있는 바 이는 同一 給水栓을 使用하는 多數의 家口 또는 業種이 다른 需要者의 正當한 使用料金 適用에 適正한 基準을 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不當한 料金の 負擔은 使用者의 便宜를 沮害하고 있습니다.
- 需用者別 使用量을 計量하기 위하여 分離를 원하는 需要者에게 別途의 量水器를 設置할 수 있도록 하여 使用量 만큼의 水道料金を 負擔토록 함으로서 紛爭의 素地를 없이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물을 아껴쓰는 節約의 效果도 거둘 수 있다고 사료 됩니다.
- 이를 위하여 現行 서울特別市 給水條例 第116條(量水器의 設置)3項을 新設 “需要者의 申請에 의하여 量水器를 分離 設置할 수 있다”로 하여 주실 것을 建議합니다.

1991. 11. 15

서울特別市 西大門區議會 議員一同

第 4 篇

特別委員會會議

▨ 豫算決算 特別委員會('91 追更)

▨ 請願審查 特別委員會

▨ 監查 特別委員會

▨ 豫算決算 特別委員會('92 本豫算)

▨ 條例審查 特別委員會

特別委員會 會議

豫算決算特別委員會 ('91 追更)

1. 概 況

區議會가 開院된後 처음 構成된 特別委員會로서 '91年度 第1回 追加更正豫算이 1991年 8月 2日 西大門區廳長으로 부터 提出되어 1991年 8月 13日 第4回 臨時會 第1次 本會議에 上程, 豫算決算 特別委員會에 回附 審査토록 함에 따라 選任된 委員10人이 當日 豫算特委 第1次 會議를 開議하여 委員長·幹事를 選出하고 6次에 걸쳐 會議와 現場 確認等 活潑한 特委活動을 하면서 會期를 3日間 延長하여 審査하였다.

2. 委員長·幹事 選出

委員會 條例 第3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委員 中年長者인 鄭赫柱委員의 司會로 委員長에 宋榮于 委員을 選出하고 幹事 選出은 林在鮮 委員의 動議로 委員長의 口頭互薦에 의하여 尹益洙 委員을 幹事로 選出하였다.

委員長 選出 得票狀況은 다음과 같다.

在 席 委 員 : 9名	總 投 票 數 : 9票
宋 榮 于 委 員 : 7票	林 在 鮮 委 員 : 1票
朴 正 來 委 員 : 1票	

3. 審 查 概 要

- 1991年 8月 14日 豫決特委 第2次 會議에 上程하여 企劃豫算課長의 提案說明을 들은 다음 左斗行 委員, 朴正來 委員, 林在鮮 委員, 具滋億 委員 質疑에 企劃豫算課長, 土木課長, 下水課長, 總務課長의 答辯이 있었다.
- 1991年 8月 16日 第3次 會議에서 豫決特委 委員을 2個組로 編成 어린이公園 補修計劃現場(天然洞)과 道路開設計劃現場(延禧3洞)을 確認하였다.
- 1991年 8月 19日 第2次 本會議에서 豫決特委 審査期間 延長의 件을 上程하여 特委의 會期를 3日間 延長 8月 20日 計數調整을 하였으며
- 1991年 8月 21日 第6次 會議時 補充質疑에 대한 區廳關係者(財務課長, 企劃豫算課長, 下水課長, 土木課長)의 答辯을 들은 다음 林在鮮 委員의 修正動議案을 滿場一致로 可決하고 本會議에 報告하기로 하였다.

(修正內容)

'91年度 追加更正豫算案 一般會計 總 豫算金額 75억8천2백16만6천원 中에서 4억3백15만원을 削減하고 削減額 全額을 豫備費로 增額하였다.

削減內容은 다음과 같다.

- 延禧洞 140-10부터 140-12間 道路開設工事費 3억5천만원
- 駐車團束活動 特別辦公費 1천7백6십2만5천원
- 除雪모래函 設置費 8백8십7만5천원
- 大新洞 老人亭 改築 設計費 1백6십5만원
- 西大門區誌 發刊費 2천5백만원

1991年度 第1回 追加更正豫算案

審 查 報 告 書

1991年 8月 22日

豫算決算特別委員會

1. 審査經過

- 第1次 本會議 上程, 提案說明, 特別委員會構成, 委員選任 (91. 8. 13)
- 第1次 特別委員會 開議, 委員長, 幹事互選(91. 8. 13)
- 第2次 特別委員會 : 分野別 豫算說明 및 質疑(91.8. 14)
- 第3次 特別委員會 : 分野別 豫算說明과 質疑및 現地確認(91. 8. 16)
- 第4次 特別委員會 : 分野別 豫算說明및 質疑 計數調整(91. 8. 19)
- 第5次 特別委員會 : 豫算案 計數調整 및 討論 (91. 8. 20)
- 第6次 特別委員會 : 補充質疑 및 答辯, 修正案 發議議決(91. 8. 21)

2. 提案說明의 要旨

(提案說明者: 企劃豫算課長 全 沅 培)

가. 追加更正豫算案의 編成事由

- 1991年度 本豫算 編成以後 發生한 法律의 改正, 機構의 新設 物價의 上昇 等 豫測할 수 없는 事情으로 인하여 發生된 費用의 事業 豫算計上
- 住民의 建議나 民願事項을 檢討하여 當初 今年度 豫算에서 財政 形便上 計上하지 못하였던 福祉 및 建設事業 經費 計上
- 市の 政策方向을 區單位에서 實現하기 위한 施策事業費 計上
- 地方化 時代に 맞는 地域 特殊事業費 計上

나. 追加更正豫算案의 內容

(1) 一般會計

- 1991年度 第1回 一般會計 追加更正豫算案의 規模는 當初豫算보다 7,582,166(천원)이 增額된 50,042,380(천원)임.
- 歲入은 1990년도 純歲計剩餘金 3,364,166(천원)과 調整交付金 4,218,000(천원) 計 7,582,166(천원)을 財源으로 計上
- 歲出은 地方議會 開院에 따른 議會運營費 241,422(천원), 企劃 行政費 105,510(천원), 內務行政費 265,824(천원), 財務行政費 189,659(천원), 福祉事業費 223,722(천원), 保健衛生費 60,330(천원) 環境綠地費 128,127(천원), 產業經濟費 1,100(천원), 建設事業費 5,915,479(천원), 治水事業費 349,683(천원), 民防衛費 7,660(천원), 豫備費 93,580(천원), 總 7,582,166(천원)을 計上 합.

(2) 特別 會計

- 1991年度 第1回 特別會計 追加更正豫算案의 規模는 當初豫算보다 217,713(천원)이 增額된 397,914(천원)임.
- 歲入은 1990년도 純歲計剩餘金 217,713(천원)을 財源으로 計上
- 歲出은 새마을所得事業 低所得市民 一般融資金으로 計上

3. 修正 內容

(1) 一般 會計

(가) 歲出 調整

- 削減 403.150 千원
- 增額 403.150 千원

4. 修正案의 要旨

- 歲出豫算中 延禧洞140-120부터 140-12間 道路開設工事費 350,000천원은 不要不急한 工事로 該當事業費를 全額 削減
- 歲出豫算中 駐車團束活動 特別辦公費(區·洞職員)는 區·洞職員의 駐車團束 參與를 30日에서 15日로 줄여 固有業務를 圓滑히 遂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7,625천원을 削減
- 歲出豫算中 除雪모래함 設置費는 91年 11月頃 導入되는 除雪車의 活用으로 幹線邊 除雪모래함 設置 必要性이 없어 8,875천원을 削減
- 歲出豫算中 大新洞 老人亭 改築 設計를 建築課 營繕擔當者로 하여금 設計토록 하여 豫算을 節約코자 設計費用中 1,650천원을 削減
- 歲出豫算 中 西大門區誌 發刊 印刷費는 資料調査, 原稿監修 完了 後 必要經費로 92年度 本豫算에 編成함이 妥當하다고 判斷 25,000천원을 削減
- 削減額 總 403,150천원 全額을 豫備費에 增額

5. 審査 結果

【修正 議決】

- 表 決 : 在席 10人, 贊成 10人

請願審查特別委員會

福水泉약수터 保存에 관한 請願

請 願 要 旨

北阿峴洞 1-1616所在 福水泉약수터의 敷地所有者인 梨花學堂에서 都市計劃에 의한 教授研究室 新築決定에 따라 오랫동안 住民들이 利用하고 있는 약수터 및 體力鍛鍊場을 閉鎖할 計劃인 바 福水泉약수터의 保存을 바라는 請願임.

- 가. 接受 年月日 : 1991. 7. 31
 나. 請 願 者 : 西大門區 北阿峴洞 1-997 조복도 外 407人
 다. 紹介 議 員 : 全聖章 議員
 라. 所管 委員會 : 第3研究分科委員會

委員長	幹 事	委 員
林 在 鮮	朴 老 鉉	金 永 一 趙 敏 行 姜 碩 宗 鄭 日 出 全 聖 章 全 在 煥 成 明 濟

마. 審 查 經 過

- 1991. 8. 13 第4回 西大門區議會 第1次 本會議 上程 特別委員會 構成
- 第1次 請願審查特別委員會 開催(1991. 8. 27)
 紹介議員의 趣旨說明 聽取, 請願人, 關聯公務員出席 質問 答辯
- 第2次 請願審查特別委員會 開催(1991. 8. 29)
 區廳關係公務員 出席答辯, 梨花學堂關係者 意見聽取
- 第3次 請願審查特別委員會 開催 (1991. 10. 4)
 梨花學堂 財團理事長 面談動議 議決

- 梨花學堂 財團理事長 面談 및 學校側 讓步案 協議(1991. 10. 5)
- 梨花學堂 讓步案을 請願人 代表(조복도, 이일호)와 協議(1991. 10. 7)
- 第4次 請願審查特別委員會 開催(1991. 10. 9) 討論 後 意見書採擇 本會議 附議

바. 審 查 要 旨

- 適法한 都市計劃 事業 施行認可에 의한 教育施設 建築이라는 法規性和 長期間 利用하여 온 약수터를 保存코자 하는 社會通念上的 側面 考慮
- 梨花學堂側과 請願人의 讓步를 通하여 相互 受容할 수 있는 方案摸索
- 梨花學堂側의 鄭義淑 財團理事長과 議長, 請願特委委員의 懇談會 結果 學校側 最終讓步案 以上 要求는 私有財產權 侵害와 都市計劃事業 制限
- 請願人 代表에게 學校側의 立場과 讓步案을 傳達하였으나 受容 拒否
- 區廳長에게 處理토록 移送하여 再調整의 機會賦與

學校側 讓步案

- 建築敷地 下端 150坪 割愛 약수터施設 移轉設置
- 배드민턴장, 약수대, 세면대, 벤취 등 便宜施設과 담장設置

사. 審 查 結 果

- 福水泉약수터 保存에 관한 請願은 西大門區議會 請願審查規程 第9條에 의하여 “區廳長이 處理함이 妥當하다고 認定되는 請願”으로서 意見書를 採擇하여 本會議의 議決로 區廳長에게 處理토록 移送

【區議會 意見】

- 福水泉약수터 保存에 관한 請願을 圓滿히 處理하기 위하여 1991. 10. 5. 10:00 議長, 請願特委委員 4名 등이 梨花學堂을 訪問, 鄭義淑 財團理事長 外 3名을 對面하여 請願內容이 反映될 수 있도록 要請한 바

- 梨花學堂側은 當初 計劃대로 建築敷地 下端에 49坪 정도로 약수터를 移轉設置할 計劃이었으나 建築工事 中斷狀態의 深刻性を 考慮
敷地 150坪을 割愛하고 배드민튼장, 약수대, 세면대, 벤취의 設置와 周邊家屋에 대한 被害를 防止하기 위하여 담장 등을 自費로 設置하며 現 약수터를 永久 保存하기로 大幅讓步
- 1991. 10. 7. 11:00 請願人 代表 조복도 外 1人이 參席하여 梨花學堂 側의 意見を 提示하고 받아들일 것을 說得하였으나 住民들과의 相議 結果 大多數가 拒否하는 實情으로 合議不可
- 西大門區廳에서는 梨花學堂에서 提示한 意見を 基調로 하여 請願人과 充分히 協議 圓滿히 解決될 수 있도록 檢討되어야 할 것임.

北部幹線道路(都市高速化 高架道路) 開設에 따른 請願

請 願 要 旨

弘恩洞 429所在 협동연립 後面 弘濟川에 隣接하여 北部幹線道路의 高速化 高架道路가 開設될 時 煤煙, 騒音, 振動및 公害와 安全事故등 住居環境의 極甚한 被害가 豫想되므로 安全對策과 협동연립의 再建築을 바라는 請願임.

- 가. 接受 年月日 : 1991. 8. 6
- 나. 請 願 者 : 西大門區 弘恩洞 429 임 동렬 外 77人
- 다. 紹介 議員 : 具 滋億 議員

라. 所管 委員會 : 第2研究分科委員會

委員長	幹 事	委 員
左 斗 行	金 平 洛	金 廷 炫 鄭 炳 八 宋 榮 于 鄭 日 洙 李 鳳 洙 丁 和 鎮 郭 載 滿

마. 審 查 經 過

- 1991. 8. 13 第4回 西大門區議會臨時會議 第1次 本會議 上程 特別委員會 構成
- 第1次 請願審查特別委員會 開催(1991. 9. 5)
紹介議員 趣旨說明 聽取, 請願人, 關聯公務員 出席 質問 答辯

바. 審 查 要 旨

- 請願의 對象인 협동연립 後面 弘濟川 地上高速化 高架道路 區間은 가장 屈曲이 심하며 建物과 隣接하여 設置되는 關係로 公害와 安全이 극히 憂慮되는 地域이므로 同 區間의 防音壁設置는 上記事由를 充分히 勘案 特需設計 施工이 이루어져야 함.

사. 審 查 結 果

- 北部幹線道路 開設에 관한 請願은 西大門區議會 請願審查規程 第9條에 의하여 “區廳長이 處理함이 妥當하다고 認定되는 請願”으로서 意見書を 採擇하여 本會議의 議決로 區廳長에게 處理토록 移送

【區議會 意見】

- 西大門區廳長이 北部幹線道路의 事業施行者인 서울特別市와 協議하여 弘恩洞 429番地 區間 高架道路工事 時 區間與件이 맞는 特殊한 防音壁 設置에 따른 對策을 樹立해야 할 것이며,
- 협동연립의 再建築 問題는 西大門區廳長이 關聯法規 內에서 再建築을 할 수 있도록 最大한 行政支援을 하여줄 것을 要求함.

監査特別委員會

1. 概 況

地方自治法 第36條, 同 施行令 第16條의 規定에 의하여 定期會議 會期中 實施되는 西大門區廳에 대한 行政事務監査를 爲하여 第7回 定期會議 第1次 本會議는 監査特別委員會를 3個 研究分科委員會別로 構成토록 하고, 全體 監査計劃을 承認하여 區廳長에게 監査實施事項을 通報하였다.

監査特別委員會는 委員會別로 會議를 開催하여 西大門區行政事務監査 및 調査에 관한 條例 第8條의 規定에 依據, 書類提出 要求事項을 確定하고 議長을 經由 이를 區廳長에게 移送하였으며, 提出된 資料와 議政活動 中에 收斂된 民願을 바탕으로 1991年 12月 9日 부터 12月 11日(3日間)까지 區政 全般에 관한 監査를 實施하였다.

委員會別로 實施된 監査結果 導出된 指摘事項에 대한 是正要求와 改善을 要하는 事項에 대한 建議事項을 第7回 定期會議 第6次 本會議에 報告하여 區廳長이 處理토록 議決 移送하였다.

2. 監査 經過

行政事務監査를 爲하여 委員會別로 議決된 書類提出 要求現況과 監査實施結果 是正要求 및 建議現況은 다음과 같다.

○ 書類提出要求現況

計	第1監査特別委員會	第2監査特別委員會	第3監査特別委員會
123 件	45 件	46 件	32 件

○ 是正要求 및 建議現況

區 分	計	第1監查特委	第2監查特委	第3監查特委
計	73	37	13	23
是正要求件數	61	37	7	17
建議事項件數	12		6	6

3. 委員會別 監查活動狀況

第1監查特別委員會

1) 概 要

第1監查特別委員會는 第7回 定期會議 第1次 本會議에서 承認된 監查計劃에 依據 1991年 12月 9日 第1次 委員會를 開議하여 文化公報室, 市民奉仕室, 監查室, 總務局 財務局에 대한 行政事務監查 實施를 宣布하고 所管業務 現況報告는 油印物로 對替한 後 提出된 資料와 議政活動 中 收斂된 資料를 바탕으로 監查를 實施하였으며 12月 11日까지 3日間の 監查結果를 土臺로 是正要求 事項과 建議 事項을 議決, 監查結果 報告書를 作成 第7回 定期會議 第6次 本會議에 報告함으로써 特別委員會 活動을 終了하였다.

2) 第1監查特別委員會 構成

委員長	幹 事	委 員	監查對象 部署
鄭 赫 柱	金 鍾 彩	尹 益 洙 曹 甲 鉉 李 文 馥 崔 容 完 具 滋 億 朴 正 來 金 源 珠	文 化 公 報 室 市 民 奉 仕 室 監 查 室 總 務 局 : 5 個 課 財 務 局 : 4 個 課

3) 監査經過

第1監査特別委員會의 監査方法은 委員會 會議形態로 區政現案과 問題點에 대한 質問과 答辯順으로 監査를 實施하였으며 答辯이 未洽한 事項은 關聯書類의 提出, 擔當 公務員의 解明, 現場調查를 통한 確認 等を 並行實施하여 3日間の 짧은 日程에도 不拘하고 所管業務 全般에 걸친 監査를 效果的을 遂行하였다. 監査期間 中 追加로 提出 要求된 資料 및 確認狀況, 監査結果 是正을 要하는 事項과 建議事項은 다음과 같다.

○ 追加資料要求事項

要求委員	資 料 (書 類) 名
李文靄	① 모니터要員 活動狀況 ② 2回 以上 反復 陳情 處理結果 ③ 自體監査結果 無許可建物 및 保健衛生分野 指摘事項 ④ 監査院監査結果 11件의 指摘事項內譯 ⑤ 體育施設業 違反現況
曹甲鉉	① 91年度 文化公報室 豫算執行內譯 ② 民願審議 및 建築民願 調整手當 支出內譯
崔容完	① 弘報, 反共行事, 産業視察 所要經費內譯 ② 區廳長 統·班長激勵品 購入및 洞防衛協議會 會議費 支援內譯 ③ 豐林 2次아파트住民 綜合土地稅 賦課內譯
具滋億	① 西大門區消息誌 活用改善方案 ② 建築法違反 61件 內譯 ③ 有關團體 現況 및 名單 ④ 公務員 提案制度 運營實績 ⑤ 稅金關聯 訴訟現況 및 缺損處理 現況
金源珠	① 自體監査結果 處理簿 ② 住宅組合 具備書類 未備 8件 內譯 ③ 洞 綜合監査結果 措置事項 ④ 行政車輛 油類支給內譯 ⑤ 市長, 區廳長 指示事項 處理結果
金鍾彩	① 移動圖書館 運營 關聯資料
朴正來	① 市場에 賦課된 過怠料 收入內譯

○ 現地確認狀況

確認日時	確 認 場 所	確認委員	確 認 事 由
91. 12. 11 12:00 ~15:00	弘濟 4洞 事務所 延禧 3洞 事務所 北加佐2洞事務所	尹益洙 曹甲鉉 崔容完	새마을支援金 融資 實態 統, 班長 日刊紙購讀 實態 非常共同井戶 管理

監查實施結果報告書

第1監查特別委員會

1. 監查期間：1991年 12月 9日-12月 11日(3日間)
2. 監查對象部署：3室 9個課

室	總務局	財務局
文化公報室, 監查室 市民奉仕室	總務課, 企劃豫算課 國民運動支援課, 生活體育課, 民防衛課	財務課, 稅務1課 稅務2課, 土地管理課

3. 監查場所：西大門區廳 企劃狀況室
4. 部署別 重点 監查事項

部署別	監查事項	部署別	監查事項
文化公報室	○ 서울新聞購讀關係 (配達 및 配達料) ○ 弘報用圖書 購入	市民奉仕室	○ 歎願) 主務課 移送內譯 ○ 民願窓口 改善方案
監查室	○ 91 機關別 監查處理關係 ○ 建築民願調整手當關係 ○ 非違關聯 公務員處理 ○ 監查院監查關聯 追徵金 措置事項 ○ 住宅組合自體監查結果 ○ 各洞 市場의 過怠料徵收 ○ 洞行政監查結果 洞長 措置事項	總務課	○ 統・班長會議, 防衛協議會等 有關團體 茶菓費 執行 ○ 統・班長產業視察 ○ 洞長 人事委員會 關係 ○ 官邊職能團體 現況 ○ 防犯哨所運營 實態 ○ 行政車輛 油類 支給內譯 ○ 總務課 主管 行事實態 ○ 功績審查委員會運營 ○ 苦衷審查委員會運營
市民奉仕室	○ 民願室運營豫算執行 ○ 各種 民願書類(陳情 및		○ 不遇公務員融資事業 實態 ○ 統長 委解囑의 問題點

部署別	監查事項	部署別	監查事項
企劃 豫算課	○ '91 提案制度 運營實績 ○ 行政訴訟의 辯護人選任 手當支給 關係 ○ 行政訴訟에 따른 公務員 懲戒處分內譯 ○ 市長, 區廳長 指示事項 處理現況 ○ 豫算編成過程 ○ 主要業務 審查分析關係	民防 衛課	○ 共同井戶 維持管理 ○ 兵力動員 訓練 召集 ○ 住民申告網 管理 ○ 民防衛 教育訓練 實態
		財務課	○ 國, 公有地 賣買關係 ○ 先給金支給 實態 ○ 新聞公告料 支出關聯 ○ 定數物品管理 實態 ○ 契約審查委員會 運營 ○ 契約違反辨償金 徵收 ○ 區豫算執行(契約, 支出)
國民 運動 支援課	○ 移動圖書館 運營實態 ○ 새마을事業支援金融資 管理 ○ 마을金庫運營指導	稅務 1, 2 課	○ 住民稅賦課 徵收關係 ○ 過年度 滯納市稅 整理
生活 體育課	○ 洞體育大會 補助金支援 ○ 걷기大會 參加 改善	土地 管理課	○ 土地去來申告 現況 ○ 宅地超過所有 實態 ○ 不動產仲介業所 管理

5. 是正 및 處理要求事項

部署別	處理要求事項	部署別	處理要求事項
文化 公報室	○ 서울新聞 購讀件 - 財政自立도가 낮은 區에서 新聞購讀料를 年間18,000 千원의 支出은 無理이며 新聞購讀 豫算을 다른 項目으로 轉用 (開發, 福祉分野包含) - 新聞配達漏落 및 配達料 要求 是正 - 配達漏落代金 回收 要	監查室	○ 民願審議, 建築民願 調整 委員手當 支給 - 民願審議手當: 432만원 - 建築民願調整手當: 1,368 萬원은 過多策定 - 建築調整委員會: 3回開催 (11名 360,000원) - 民願審議委員會 (實績없음) - 92年度 他 豫算으로 轉用 要함 ○ 監查機能活性化 要함 ○ 監查院監查 後續措置未洽 (懲戒措置衡平性 缺如)
監查室	○ 停車場 用途變更 團束 - 徹底한 團束으로 他用途 使用 禁止		

市 民 奉 仕 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民願親切應待 - 옷는 얼굴로 積極的인 民願處理 要함. 	國 民 運 動 支 援 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弘報用 圖書購入費 計上 不適正 豫算額：1,200,000원 執行額： 168,000원
總 務 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公務員人事(昇進, 轉補)의 公正性 確保 ○ 北阿峴1洞 事務所 假設 建築物 增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附屬建物 改補修(16坪) 使用은 不當 ○ 統, 班長 資質에 관한 件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統,班長에 의한 民怨惹起 解消方案講究 - 統, 班長 交替時 人選管理 徹底 	生 活 體 育 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걷기大會 運營 - 展示行政으로 치우치고 있음. ○ 同好人 育成支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擴大實施 要함.
企 劃 豫 算 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事故移越 過多發生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主要業務審查分析 不振 - 精密한 展望과 細心한 分析 要함. ○ 公務員提案制度 活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豫算節減, 浪費要素의 發掘徹底 - 形式的인 制度運營止揚 ○ 機關長活動費 件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庶民을 위한 支援 注力 ○ 豫算編成上의 問題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包括豫算 策定 止揚 - 局, 室, 課別 識別 容易 作成 	民 防 衛 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共同井戶管理未洽：10個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增設 不要 ○ 民防衛訓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通知書의 確實한 傳達 - 依法措置事項없도록 改善
國 民 運 動 支 援 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移動圖書館 運營의 件 ○ 새마을事業支援金 對象者 選定 및 事後管理疏忽 ○ 弘報用圖書 購入 件 	財 務 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國, 公有財產管理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無斷占有地 發掘 徹底 - 占有面積 測量 徹底
		稅 務 1 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區稅 滯納者 管理未洽 ○ 各洞 市場의 過怠料賦課 徵收管理 改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保證人 等 確保
		稅 務 2 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高額 滯納者 管理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班常會報 等에 名單公開 方案 檢討
		土 地 管 理 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土地去來 許可申告 業務 改善 ○ 不動產仲介業者 指導監督 徹底

第2監査特別委員會

1) 概 要

第2監査 特別委員會는 第7回 定期會議 第1次 本會議에서 承認된 監査計劃에 의거 1991年12月9日 第1次 委員會를 開議하여 都市整備局 및 建設局에 대한 行政事務監査 實施를 宣布하고 都市整備局長으로 부터 所管業務報告를 始作하였는 바 짧은 監査日程을 勘案하여 建設局所管 業務報告는 油印物로 對替키로 하고 區政 現案에 대한 質問答辯을 實施하였으며 12月 11日까지 3日間の 監査結果를 土臺로 是正要求事項을 議決, 監査結果報告書를 作成 第7回 定期會議 第6次 本會議에 報告함으로써 特別委員會의 活動을 終了하였다.

2) 第2監査特別委員會 構成

委 員 長	幹 事	委 員	監 査 對 象 部 署
左 斗 行	金 平 洛	金 廷 炫 鄭 炳 八 宋 榮 子 鄭 日 洙 李 鳳 洙 丁 和 鎮 郭 載 滿	都市整備局：5個課 建設局：4個課

3) 監査經過

第2監査 特別委員會의 監査方法은 委員會 會議形態인 區政懸案과 問題點에 대한 質問 및 答辯順으로 監査를 實施하였으며 答辯이 未洽한 事項은 關聯書類調查 現地 確認 等を 並行함으로써 3日間の 監査日程을 効果的으로 遂行하였다.

監査期間 中 追加로 提出要求된 資料 및 現場確認狀況, 監査實施結果 是正을 要하는 事項과 建議事項은 다음과 같다.

○ 追加資料 要求事項

要求委員	資 料 (書 類) 名
左 斗 行	① 建築主 地籍測量 申請現況 ② 92年度 移越工事 內譯 ③ 洞別 小規模事業 豫算配定現況 ④ 土木工事に 따른 補償 內譯
金 廷 炫	① 延禧洞 51-60 양지빌라建築 許可書 寫本
李 鳳 洙	① 公共用地關聯 提訴現況 ② 監理士 行政措置內譯
鄭 炳 八	① 漢陽開發에 發注된 工事關聯 書類
金 平 洛	① 都市計劃 確認願 發給臺帳 ② 監查院 監查結果 指摘事項 ③ 建築士에 대한 行政措置 內譯

○ 現地確認狀況

確認日時	確 認 場 所	確認委員	確 認 事 由
1991. 12.11 15:15~ 16:40	- 文化會館 建築現場 - 北加佐洞 道路鋪裝 및 下水道工事現場 - 弘恩洞, 南加佐洞 形 質變更 現場	全委員	監查關聯 資料와 現場對 照 및 現況 把握

監查實施結果報告書

第2監查特別委員會

1. 監查期間：1991年 12月 9日~12月 11日(3日間)
2. 監查對象部署：都市整備局, 建設局
3. 監查場所：西大門區廳(地下狀況室)
4. 部署別 重点監查事項

室, 課 別	監 查 事 項	備 考
住 宅 課	行 政 事 務	
都 市 整 備 課	"	
地 域 交 通 課	"	
地 籍 課	"	
建 築 課	"	
建 設 管 理 課	"	
土 木 課	"	
下 水 課	"	
公 園 綠 地 課	"	

5. 是正 및 處理 要求事項

- 未 竣 工 建 築 物 措 置 疏 忽 (建 築 課)
- 無 許 可 自 動 車 整 備 行 爲 및 整 備 作 業 限 界 違 反 團 束 實 績 不 進
(운이 33160-32, 91. 1. 5호 指針) (地 域 交 通 課)
- 管 理 處 分 業 務 의 公 告, 共 覽 業 務 疏 忽 (住 宅 課)
- 大 峴 1地 區 處 理 業 務 遲 延 報 告 (住 宅 課)
- 마을버스 行 政 監 督 疏 忽 (地 域 交 通 課)
- 不 法 廣 告 物 團 束 疏 忽 (都 市 整 備 課)
- 豫 備 費 議 會 事 前 承 認 없 이 使 用 (2억 5천 2백 만 원) (土 木 課)

6. 建議事項

- 各種 審議委員會에 議會 所管 分科委員 1名 推薦要望
- 議會 專門委員 早速措置 要望
- 定期會期 期間中 人事移動 自制要望
- 都市整備課長 兼職業務 分擔要望
- 財政自立度 向上計劃 樹立要望
- 弘恩洞 9-507號, 508號 事業推進計劃 樹立要望

7. 總 評

- 行政을 處理할 때는 항상 住民의 편에서 處理할 것

第3監査特別委員會

1) 概 要

第3監査 特別委員會는 第7回 定期會議 第1次 本會議에서 承認된 監査計劃에 의거 1991年12月9日 第1次 委員會를 開議하여 市民局 및 保健所에 대한 行政事務監査 實施를 宣布하고 市民局長과 保健所長으로 부터 所管業務 現況을 報告받은 後 區政懸案에 대한 質問 答辯을 實施하였으며 12月 11日까지 3日間の 監査結果를 土臺로 是正要求事項과 建議事項을 議決, 監査結果 報告書를 作成 第7回 定期會議 第6次 本會議에 報告함으로써 特別委員會 活動을 終了하였다.

2) 第3監査特別委員會 構成

○ 委員會

委員長	幹 事	委 員	監査 對象 部署
林 在 鮮	朴 老 鉉	姜 碩 宗 鄭 日 出 金 永 一 成 明 濟 全 在 煥 全 聖 章 趙 敏 行	市 民 局 : 6 個 課 保 健 所 : 3 個 課

○ 監査組 運營

組 別	組 長	委 員	監 査 部 署
第 1 組	成明濟	姜碩宗 鄭日出	衛生課・環境課・保健行政課
第 2 組	全在煥	金永一 朴老鉉	清掃課・家庭福祉課・保健指導課
第 3 組	全聖章	林在鮮 趙敏行	社會福祉課・產業課・醫藥課

3) 監査經過

第3監査 特別委員會는 效果的인 監査活動을 爲하여 3個 監査組를 編成, 擔當公務員과의 問答式 監査를 實施하여 關聯書類, 現場確認 等 深度있는 監査活動을 展開하였으며, 3日間の 監査活動 中 追加로 提出要求된 資料 및 現場確認 狀況과 監査實施結果 是正을 要하는 事項 및 建議事項은 다음과 같다.

○ 追加資料要求事項

要求委員	資 料 (書 類) 名
全 在 煥	① 금화어린이집關聯書類 ② 保育施設運營費 執行內譯 ③ 清掃再活用器資料 ④ 송죽원. 우리. 延禧어린이집關聯書類
全 聖 章	① 精神疾患者 關係法規 ② 職業紹介所 및 就業斡旋現況
趙 敏 行	① 生活保護對象者策定基準 ② 洞別 就勞事業人員 配定差異事由
金 永 一	① 新星淨化槽 收入日計表提出 ② 반달어린이집 建築關係書類
朴 老 鉉	① 禮式場에 대한 陳情現況 ② 장의사 行政處分 內譯 ③ 病院영안실現況 및 行政處分 內譯
林 在 鮮	① 醫療保險組合 定款

○ 現地確認事項

確認日時	確 認 場 所	確認委員	確 認 事 由
91. 12. 10	금화어린이의집 우리어린이의집	全 在 煥 金 永 一	어린이의집 運營에 따른 問題点 確認
11 : 55 - 14 : 00	生活保護對象者 自宅訪問 (延禧1洞 居住者)	全 聖 章 趙 敏 行	生活保護對象者策定の 適 正與否 確認
14 : 50 -	신성칼라 外 3個業所	成 明 濟 鄭 日 出	廢水排出業所 實態把握
91. 12. 11 10 : 40 -	蘭芝島 埋立場	朴 老 鉉	清掃關聯 確認

監查實施結果報告書

第3監查特別委員會

1. 監查期間：1991. 12. 9~12. 11(3日間)

2. 監查對象部署：1局 1所(9個課)

市 民 局	保 健 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社會福祉課 ○ 家庭福祉課 ○ 衛生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產業課 ○ 環境課 ○ 清掃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保健行政課 ○ 保健指導課 ○ 醫藥課

3. 監查場所

- 議會 小會議室
- 區廳 小會議室
- 平統事務局

4. 部署別 重点 監查事項

部署別	監查事項	部署別	監查事項
社 會 福祉課	1. 生活保護對象者 選定 및 支援事項 ○ 生活保護對象者 策定基準 및 規定 ○ '91. 4. 15以後 新規策定者 現況 ○ 生活保護對象者 現地確認(延禧1洞) ○ 生活保護對象者 職業訓練 委託 및 訓練費 支援內譯 2. 社會福祉 專門要員 運營實態 3. 이웃돕기 誠金品接受 및 用途別 支出現況	社 會 福祉課	4. 就勞事業 洞別配定現況 5. 精神疾患者 關係法令 및 指針 6. 職業紹介所 現況 및 職業斡旋 現況 7. 地域醫療保險運營現況 및 職員人事管理
		家 庭 福祉課	1. 家庭福祉 關聯 工事關係 現況 [반달어린이집 工事關係] ○ 入札競爭業體 및 入札豫定價格 ○ 落札業體와 落札價格 ○ 工事契約 關聯書類

部署別	監 查 事 項	部署別	監 查 事 項
家 庭 福 祉 課	2. 社會福祉 施設 및 補助金 支援 現況 [孤兒院, 양로원, 애란원, 精薄兒 施設 等]	家 庭 福 祉 課	8. 管内 葬儀社에 대한 行政處分內 譯
	3. 송죽원 運營 現況 ○ 運營費 內譯書 및 豫算額 現況 ○ 人件費 및 收容人員 現況 ○ 補助金 支援基準指針과 分期別 支援現況		9. 病院 葬禮場 現況과 行政處分內 譯
	4. 託兒所 및 幼兒園 現況 ○ 保育施設運營費 執行內譯 ○ 금화, 延禧幼兒園受託 어린이 名單 ○ 금화, 延禧幼兒園教師 給料支 給現況 ○ 금화어린이집 月別支出內譯書 [公課金, 副食費, 間食費, 給食 費 等] ○ 금화(天然洞所在), 우리(弘濟 3洞所在) 幼兒園 2個所 現地 確認訪問	衛 生 課	10. 課職員의 人力管理 現況
	5. 공부방과 老人亭施設現況및 越冬對策		1. 食品衛生業所 指導團束結果 現況
	6. 市民알뜰場 運營 收入과 支出內譯		2. 食品衛生業所 變態營業行爲 2 回 以上 摘發業所 現況
	7. 禮式場 關係 陳情 및 行政處分內譯		3. 衛生課職員에게 支給되는 各種手 當現況
			4. 成人娛樂室 現況
			5. 犯因性 有害環境業所 및 靑少年 有害業所 月別 指導團束 現況과 摘發業所 現況
			6. 不良食品 製造業體 團束現況
			7. 食品衛生業所(朝鮮屋) 無斷擴張 營業行爲 措置關係
		產 業 課	1. 工產品 品質管理을 위한 團束實績
			2. 에너지節約 推進實績 및 對策
			3. 高地帶 低所得層 煉炭需給計 劃과 對策
			4. 담배小賣人 管理現況
			5. 計量器 定期檢査 現況
			6. 農產物 直販場 運營實態
			7. 物價모니터要員 運營關係

部署別	監 查 事 項	部署別	監 查 事 項
環境課	1. 公害業所 指導團束實績 및 處理現況 2. 大氣汚染 測定值와 管理實態 3. 公害排出業所 實態 및 指導團束現況 ○ 廢水排出業所 現地確認 實態把握 [신성칼라, 삼화교통, 흥제사, 현대세차장] 4. 環境公務員 勤務關係 現況	清掃課	○ 新星淨化 現地確認 訪問 8. 清掃 再活用用器 資料提出
	清掃課	1. 汚物收去와 關聯한 民願處理內譯 2. 環境美化員 現況과 充員計劃 3. 清掃裝備 現況과 修理內譯 ○ 蘭芝島 運行車輛의 現地訪問實態把握과 車輛運轉技士 面談 4. 洞別 汚物收去 形態別 現況(直營, 代行) 5. 代行業體와 多量 排出業所間 契約關係 및 關聯法規와 指針 6. 代行業體 現況과 補助金 支給現況 7. 新星淨化槽 收入日計表(總收入과 支出)	保健所

5. 是正 및 處理 要求事項

部署別	是正 및 處理要求 內容	部署別	是正 및 處理要求 內容
社 會 福 祉 課	<p>1. 地域醫療保險組合 運營의 非 効率性</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地域醫療保險 運營委員會 定款에 따르면 運營委員의 任務가 莫重한 바 現在 委 囑된 委員들은 大多數 專 門性이 缺如되어 運營委員 會 本來의 目的과 趣旨에 이긋나고 있음. － 定款을 改正 洞 醫療保險 支援協議會長을 當然職 運 營委員으로 委囑하여 保險 人口의 民願을 줄이고, － 專門性있는 人士를 委囑 合理的인 運營委員會가 構 成되어야 함. 	社 會 福 祉 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新規策定과 保護의 中止는 迅速히 審議決定 緊急保護 와 不必要한 保護로 인한 豫算支出을 防止토록 萬全 을 기하여야 할 것임.
	<p>2. 生活保護對象者 策定</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洞單位 生活保護對象者 策 定審議委員會가 形式的인 運營이 되고 있으며 選定 에 公正性을 잃을 수 있음. － 洞 새마을 推進委員은 生 活保護對象者에 대한 認識 이 깊고 內容을 잘 아는 人 士로 委囑하여 衡平에 맞 는 正確한 審議가 이루어 져야 하며, 	家 庭 福 祉 課	<p>1. 奉仕活動費豫算 精算撤去</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老人 奉仕活動費 執行內譯 中 豫算額 55,301千원, 執 行額 56,760千원으로 過多 支出額 1,459千원 發生 － 補助金에 대한 精算處理에 보다 正確性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 過多 支出事由가 發生하여 執行時는 明確한 內譯과 根據가 있어야 할것임
			<p>2. 어린이집에 대한 補助金執行 및 管理</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화어린이집 教師人件費 支給實態를 確認한 바 區 廳에서 補助金은 月2,459千 원이 支援된 바 어린이집 의 教師人件費 支給額은 月2,259千원으로 差引額 2, 364千원은 過多策定된 것 으로 判斷됨

部署別	是正 및 處理要求 內容	部署別	是正 및 處理要求 內容
家庭 福祉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教師人件費의 支給은 基準에 따라 補助金 金額이 支給되도록 하고, 會計管理에 萬全을 기할 수 있도록 措置 ○ 금화어린이집의 保育料 收入은 月1,420千원으로서 教師人件費 10% 充當金を 除外한 保育料는 託兒經費로 支出되어야 하는데 使用用途 不分明 - 保育料 收入에 대한 支出 內譯을 正確히 管理하여 會計管理에 萬全을 기하여야 할 것임. 	衛生課	<ul style="list-style-type: none"> 2. 無許可 營業業所 團束強化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坪 以上の 無許可 食品衛生業所 42個所 中 11個 業所가 營業을 하고 있는 바 團束 및 行政措置가 疏忽히 될 境遇 違法事例가 늘어날 것으로 豫想되는바 適期團束 및 措置가 確行되어야 할 것임. - 無許可業所의 營業行爲가 發生치 않도록 徹底한 團束을 確行 不法 營業行爲가 根絶될 수 있도록 措置하여야 할 것임.
衛生課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食品衛生業所(朝鮮屋) 無斷擴張 營業 行爲措置 遲延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滄川洞 18-1 所在 朝鮮屋은 91. 10. 31로 許可를 득하여 營業을 하면서 隣 建物을 無斷擴張 營業場으로 使用하고 있는데도 91年 12月 4日 摘發 是正토록 함은 團束業務를 疏忽히 한 바 隨時點檢 等 團束措置하여야 할 것이며, 12. 21까지 不法建物 使用에 대한 是正命令措置가 施行中인 바 未 移行時 強力한 行政措置를 確行할 것. 	衛生課	<ul style="list-style-type: none"> 3. 食品衛生業所의 業態 違反行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飲食店에서 茶를 팔고 찻집에서 酒類를 販賣하는 業態 違反 行爲가 非一非再한 바 이를 初期에 團束하여 바로 잡지 못할 境遇 法規程의 執行과 團束에 따른 公信力을 喪失할 憂慮가 있음. - 業態違反에 대한 指導團束을 強化하여야 하며 現實的으로 團束이 不可할 境遇 法規의 改善을 통한 現實에 맞는 業態의 調整을 建議하여야 할 것임.

部署別	是正 및 處理要求 內容	部署別	是正 및 處理要求 內容
産業課	<p>1. 工產品 品質表示 未履行에 대한 團束</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工產品 品質管理法 第4條1項의 規定에 의하여 製造業者가 品質表示를 하지않고 販賣業者에게 供給한 境遇 同法 第4條 2項에 의하여 販賣業所만 團束을 하고있는 實情인 바 製造業者를 團束치 않고 販賣業者만을 團束한다면 衡平의 原則에 어긋나며 效果的인 團束이 될수 없음. - 販賣業者에게 品質表示를 하도록 指導하는 것보다는 品質表示를 하지않는 製造業者를 團束하여 源泉인 團束이 될 수 있도록 推進하여야 할 것임. 	環境課	<p>2. 廢水排出事業場 管理團束 疏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弘濟洞22-3 흥제사外 2個所의 洗車場을 現地確認 結果 淨化施設을 제대로稼動치 않고 廢水를 放出하고 있으나 團束公務員의 人力不足 等の 理由로 團束이 效果的으로 遂行되지 못하고 있음. - 徹底한 現場確認과 團束을 確行하여 環境沮害要因을 事前防止하고 違反業所에 대한 行政措置를 強化하여 再發生事例가 없도록 推進 - 全擔監視 人力을 確保하고 市民申告 體系講究 및 弘報強化
環境課	<p>1. 官公署 等 公共施設의 大氣 汚染 防止를 위한 對策樹立</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主要公共施設의 暖房油類로 명카 C油를 使用 大氣 汚染防止를 위한 模範이 되고 있지 않음(例: 梨花女大, 延世大, 西部警察署) - 淸淨燃料인 LNG가스 및 硬質油 使用 暖房 施設 改善誘導 		<p>3. 廢水淨化施設 未備業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弘濟洞361-27所在 신성칼라는 現位置로 '91. 12. 5移轉後 淨化施設이 未備함에도 營業을 하고 있음. - '91. 12. 20까지 施設補修 指示後 移行치 않을 시 強力한 行政措置할 것.

部署別	是正 및 處理要求 內容	部署別	是正 및 處理要求 內容
清掃課	<p>1. 糞尿收去(淨化槽 清掃)및 清掃代行業體 獨占事業에 따른 問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糞尿收去業體인 新星淨化는 西部地域의 糞尿收去및 淨化槽清掃를 獨占事業으로 하고 있는 바 獨占에 따른 不當한 料金徵收와 迅速한 收去가 이루어지지 않는 境遇가 있는 바 이에 따른 問題點 - 糞尿收去業體를 追加指定 許可하여 自由競爭에 立脚한 營業을 通하여 基準金額 徵收, 迅速한 收去處理等이 될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保健指導課	<p>1. 保健所 區民利用率 低調</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現廳舍로 移轉後 弘報不足 및 交通不便等の 事由로 保健所 利用率이 低調함. - 保健所利用과 診療內容等을 弘報할 수 있는 方案 講究 - 마을버스의 保健所 經由 및 區廳通勤 버스 利用方案 樹立 交通便宜 圖謀
保健行政課	<p>1. 脆弱地 防疫消毒 非效果的 推進</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耐久年限이 超過된 煙幕消毒車輛과 耐久年限이 未到來되었으나 老朽, 不良한 噴霧消毒車輛의 運行과 防疫人力의 不足으로 高地帶 및 脆弱地 防疫業務에 支障을 招來하고 있음. - 老後煙幕消毒車輛을 92年度 早期購入 交替및 噴霧消毒車輛 追加購入裝備擴充 - 夏節期 集中防疫時, 防疫人力의 擴充方案講究(現在 高齡者 3名으로 미흡한 바 아르바이트學生雇傭 方案) 	保健醫藥課	<p>1. 病·醫院의 行政指導 非效率性</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病·醫院에 대한 行政職公務員의 團束은 專門性이 缺如되어 非效率的임. - 保健職 公務員이 行政指導를 專擔할수 있도록 措置 <p>2. 藥士補助員(非藥士)의 調齊 行爲에 대한 對策未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非藥士의 調齊行爲로 인한 醫療(藥士)事故發生可能 - 不時點檢, 市民申告體系 및 藥士會 自律團束 方案을 講究하고 市民弘報 推進

6. 建議事項

部署別	建議內容	部署別	建議內容
社 會 福祉課	<p>1. 生活保護對象者 策定基準 改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現행 생활보호대상자 策定기준인 가구별소득 및 재산액의 산출은 물가, 임금상승 등 경제외적 변화에 따라 변동되는 사정이 많으므로 策定기준으로는 비현실적임. - 現행 책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을 건의, 비현실적인 기준에 의하여 보호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비대상자 策定사례가 없도록 조치 	社 會 福祉課	<p>무수준을 유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할동장에게 지도감독권을 제도적으로 부여 복무관리를 할 수 있도록 건의
	<p>2. 地域醫療保險組合 職員의 服務管理</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現재 동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지역의료보험조합 직원의 근무기강이 解弛하여 민원처리에 불편을 주고 동사무소 직원과 위화감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수립이 필요함. - 조합의 철저한 복무단속과 정신교육을 통하여 공무원의 복 	產 業 課	<p>1. 製造담배 小賣人指定民願 不處理 改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現행 제조담배소매인지정 신청민원은 구청에서 접수하여 담배인삼전매공사의 지정기준에 적합여부를 조회하고 회신에 의거 민원을 처리하고 있어 20일 이상 지체되는 등 불합리한 점이 있음 - 지정기준에 의거 민원접수처인 구청에서 현지 확인을 하여 적합여부를 판단. 행정낭비와 민원불편을 해소하는 제도적 개선을 건의토록 하여야 할 것임
			<p>2. 農產物 直販場 運營</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읍, 면단위 농협과 동사무소간

部署別	建 議 內 容	部署別	建 議 內 容
産業課	<p>자매결연을 통한 농산물 직판장을 운영하는 사례는 농산물 수입 자유화에 따른 농민들의 어려움과 유통과정을 생략한 저렴한 가격으로 질 좋은 우리농산물을 국민에게 제공하는 바람직한 사업인 바 이를 확대하여 22개 전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을 건의함. [현행 6개동 실시]</p>	産業課	<p>4. 消費者 保護法上 販賣者와 消費者保護 不均衡</p> <p>○ 소비자 보호법 규정은 소비자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있으며 사업자의 의무와 협력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음. 사업자의 선의의 피해와 구제에 대한 명시 없이 법취지의 형평에 어긋남</p> <p>— 소비자 보호법상 정책심의 위원회(제24조) 및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법제34조) 등에 사업자의 정당한 의견제시와 주장의 권리를 규정토록 건의를 요함.</p>
	<p>3. 物價모니터制 運營</p> <p>○ 물가의 안정대책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는 모니터 요원에 대한 사기진작 등의 대우가 없어 적극적이고 정확한 물가 동향의 파악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임</p> <p>— 물가 모니터요원들에 대한 보수는 규정상 지급이 불가하다 하여도 보상품의 지급 등의 방법으로 사기를 진작 적극적인 구정참여와 효과적인 물가 동향 파악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p>		

豫算決算特別委員會 ('92本豫算)

1. 概 況

1991年 11月 30日 西大門區廳長으로부터 提出된 1990年度 歲入, 歲出 決算案 및 豫備費支出承認案.

1992年度 歲入歲出豫算案의 審査를 위하여 第7回 定期會議 第2次 本會議(91. 12. 4)에 豫算決算特別委員會 構成에 관한 件을 上程 議長이 推薦한 10名의 議員을 本會議의 議決로 選任하여 開院以後 두번째 豫算決算特別 委員會가 構成되었다.

豫算決算特別委員會는 第1次 委員會를 開議하여 委員長 및 幹事를 選出하고 本會議에서 回附된 豫算關聯 議案의 審査를 爲하여 1991年 12月 12日 부터 12月 23日까지 8次의 委員會를 열어 豫算編成 背景과 事業別 效果, 區民福祉 增進을 위한 配慮, 浪費要因 排除 等 깊이있는 審査活動을 展開 1990年度 決算案과 豫備費 支出承認案을 承認議決하고 1992年度 歲入歲出豫算案을 削減 및 增額 調整하여 豫算案 修正案과 審査報告書를 議決 採擇하고 第7次 本會議에 이를 報告하였다.

2. 委員長. 幹事 選出

第1次 委員會(91. 12. 4)에서 西大門區議會 委員會條例 第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委員中 年長者인 丁和鎭 委員의 司會로 委員長 選出에 관한 件을 上程하고 曹甲鉉 委員의 動議대로 無記名 投票를 實施하였으나 2次의 投票에도 委員過半數 得票者가 없어 宋榮于, 丁和鎭 委員을 對象으로 決選投票를 하려 하였으나 金鍾彩 委員이 委員長候補間 合議로 投票없이 滿場一致 推進하는 方案을 提議한 바 宋榮于 委員이 身上發言을 通하여 丁和鎭 委員을 委員長으로 選任할 것을 提議 이를 滿場一致로 可決함으로서 豫算決算 特別委員長에 丁和鎭 委員이 選出되었다. 이어 幹事 選出에 관한 件을 上程하였으나 李文馥 委員이 委員會 運營의 妙를 爲하여 委員長이 指名選任할 것을 提議하여 委員長이 推薦한 金廷炫 委員을 幹事로 選任 議決하였다.

3. 審查經過

- 豫算決算特別委員會는 第2次 會議(191. 12. 12)에서 全沅培 企劃豫算課長으로부터 1992年度 歲入歲出豫算案의 全般的이고 細部的인 提案說明을 聽取하였다.
- 第3次 會議(91. 12. 13)에서는 1990年度 歲入歲出決算案 및 豫備費支出 承認件을 上程 金光秀 財務局長으로부터 提案說明을 聽取하고 決算檢查委員인 李文馥 委員의 檢查結果 豫算執行의 不適正 事項은 意見書 提出 時 措置指示 하였음과 1992年度 豫算審議時 反映될 것임을 報告하였다.
-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 出席한 金光秀 財務局長은 向後 豫算 執行時 決算檢查 結果 不適正 事項은 반드시 改善하여 合理的인 豫算運營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答辯을 끝으로 質疑를 終結하고 1990年度 歲入.歲出決算案과 豫備費 支出承認件을 一括 上程하여 表決한 바 異議없이 可決되었으며 審査報告書를 採擇 本會議에 報告키로 한 後 停會하였다.
- 豫算決算特別委員會는 第3次 會議부터 第8次 會議까지 室, 課別 豫算案을 擔當 室, 課長이 出席하여 提案說明을 하는 가운데 質問答辯을 實施 細部的인 事項까지 徹底히 把握하여 檢討하고 討論을 通하여 不要한 分野의 豫算을 削減하고 반드시 必要한 事業의 豫算은 增額하여 事業의 效果를 極大化하는데 注力하였다.
- 豫算決算特別委員會는 第9次 委員會를 開議하여 計數調整小委員會를 構成 豫算審査過程 中 問題된 內容을 重點的으로 審査키로 하자는 曹甲鉉 委員의 動議에 따라 多數議員의 再請으로 議題가 成立, 表決한 바 計數調整 小委員會 構成이 議決되었다.
小委員會委員 選任은 委員長에게 委任 口頭互薦에 의하여 委員長, 幹事를 包含 金源珠, 李文馥, 金鍾彩 委員으로 構成하였다.
- 計數調整 小委員會는 豫算의 削減 및 增額範圍를 最終 確定하여 委員會에 報告하고 이를 委員會에 上程한 바 起立表決을 實施 在席委員 10名 中 7名の 贊成으로 豫算決算特別委員會 豫算案修正案이 確定 可決되었으며 本會議에 報告하기 위한 審査報告書와 豫算案 修正案은 다음과 같다.

1990년도 歲入.歲出決算案 및 豫備費承認案

審 查 報 告 書

1991年 12月 23日

豫算決算特別委員會

1. 審査經過

가. 提案日字 및 提案者 : 1991年 11月 30日 西大門區廳長

나. 上 程 日 字 : 第7回 定期會議 第1次 本會議-豫算特委構成 및 委員
選任

— 第1次 委員會(91. 12. 4) : 委員長, 幹事 選出

— 第3次 委員會(91. 12. 13) : 決算案 및 豫備費承認案 提案說明

1990年度 歲入.歲出決算案, 豫備費承認案 議決, 審査報告書 採擇

2. 提案說明의 要旨

(提案說明者 : 財務局長 金 光秀)

— 1990年度 歲入.歲出의 決算과 豫備費 支出은 地域開發에 대한 投資擴大와 福祉增進을 바탕으로 編成된 豫算의 效率的인 執行과 嚴格한 會計管理를 바탕으로 編成 提出된 案임.

歲入.歲出 決算規模

○ 1990年度 一般會計 및 特別會計의 決算 總括

— 歲入豫算額 44,238,730,160원, 收 納 額 46,203,352,869원

— 歲出豫算額 42,471,863,000원, 歲出豫算現額 44,238,730,160원

— 支 出 額 35,843,322,550원(差引殘額 10,360,030,319원)

翌年度 會計別移越	┌	事故移越 : 2,430,887,602원
		補助金執行殘額 : 44,000,602원
		純歲計 剩餘金 : 7,885,141,787원

○ 1990年度 一般會計 決算

- 歲入豫算額 41,101,796,000원, 收 納 額 44,882,347,390원
- 歲出豫算額 41,101,796,000원, 歲出豫算現額 42,868,636,160원
- 支 出 額 34,778,345,030원(差引殘額 10,054,002,369원)
- 翌年度 會計別移越

┌	事故移越 : 2,430,887,930원
	補助金執行殘額 : 44,000,602원
- 純 歲計 剩餘金 : 7,579,113,737원

○ 1990年度 特別會計 決算

- 收入豫算額 1,370,067,000원, 收 納 額 1,371,005,470원
- 歲出豫算額 1,370,067,000원, 歲出豫算現額 1,370,067,000원
- 支 出 額 1,064,977,520원(差引殘額 306,027,950원)
- 翌年度 會計別移越

┌	事故移越 : 0원
	補助金執行殘額 : 0원
- 純歲計剩餘金 : 306,027,950원

豫備費支出規模

- 一般會計 豫備費支出 承認額 254,009,000원, 支出額 222,053,580원
不用額 31,955,420원

3. 決算檢查報告

(報告者 : 決算檢查委員 李文馥)

가. 決算檢査經過

- 決算檢査委員選任：1991. 4. 16 第1回 西大門區議會 第2次 本會議
(李文馥 議員, 金源珠 議員, 崔容完 議員)
- 決算 檢査期間：1991. 6. 3~7. 2(1個月間)

나. 檢査報告 要旨

- － 總括報告 事項은 檢査意見書 參考 要望
- 違法 不當事項：없음
- 不適正 運營事例

(1) 豫備費 支出

- － 豫備費는 天災地變이나 豫測不可한 支出 즉 災害救護 等 緊急을 要하는 支出과 豫算超過支出 限度內에서 計劃性있게 支出되어야 함에도 土地管理課 施設에 다른 諸般經費 等 豫測 可能 事業을 本豫算으로 編成치 않고 豫備費로 支出하고 過多額의 不用額이 發生된 바 있음.

(2) 豫算의 計劃的 執行

- － 會計年度內 支出이 完了될 수 없는 豫算을 明示移越로 處理치 않고 文化會館 建立 等 26件에 대한 冬節期工事, 工期 絶對不足, 事前協議 遲延 等の 事由로 會計年度末에 契約을 締結, 事故移越하는 事例

(3) 豫算의 不用額 過多發生

- － 歲出豫算은 事業의 性格과 所要豫算을 正確히 豫測하여 適正 豫算을 編成 執行하여야 함에도 豫算成立 後 事業計劃의 變動이나 與件의 變動으로 執行事由가 削減될 때는 追加更正豫算編成時 이를 調整하여 財源의 不足으로 解決하지 못한 住

民不偏事業 및 宿願事業을 推進하는 財政運營의 合理性을 講究하지 못하고 不用額으로 處理함.

4. 質疑 및 答辯要旨

— 없 음 —

5. 討論要旨

- 決算檢査 委員이 1個月間 決算檢査한 總評과 內容을 參考로 하여 92年度 歲入歲出 豫算案의 深度있는 審査에 도움이 되도록 決議
- 決算檢査 委員이 檢査한 '90年度 歲入, 歲出決算案과 豫備費 支出內容에 대하여 充分한 檢査와 檢討가 된 것으로 判斷되니 不適正한 事案은 區廳長에게 向後 改善推進토록 促求하고 審議終結
- 不適正 事例는 92年度 歲入, 歲出豫算案 審議에 反映

6. 審査結果

1990年度 歲入, 歲出豫算案 및 豫備費支出承認案 滿場一致 承認議決

1991年 12月 24日

豫算決算特別委員會

1992年度 歲入. 歲出豫算案

審 查 報 告 書

1991年 12月 23日

豫算決算特別委員會

1. 審 查 經 過

가. 提案日字 및 提案者 : 1991年 11月 30日 西大門區廳長

나. 上程日字 : 第7回 定期會議 第1次 本會議 - 豫算特委構成 및 委員選任

- 第1次 委員會(91. 12. 4) : 委員長, 幹事 選出
- 第2次 委員會(91. 12. 12) : 豫算案上程, 提案說明, 審議日程 議決
- 第3次~第8次 委員會(91. 12. 13-20) : 各 局, 室, 課別 豫算案審議
- 第9次 委員會(91. 12. 23) : 計數調整 小委員會構成, 修正案議決
審查報告書採擇

2. 提案說明의 要旨

(提案說明者 : 企劃豫算課長 全沅培)

가. 區 財政與件

- 88年 自治區 分離 當時 189억원의 豫算規模가 92年 601억 6,400만원으로 財政需要가 317% 增加
- 歲入部門은 88年 54억 5,115만원에서 綜合土地稅施行, 財產稅 課標 現實化 免許稅 稅率의 引上要因 등으로 '92年度 豫算案 總 601억6,400만원中 215억 3,575만원으로 395%增加……財政自立度 29.7% → 36.5% (+7.8%)
- 財政需要部門 中 低所得市民 保護와 清掃行政의 革新을 위한 裝

備購入 및 環境美化員 處遇改善 等 福祉事業 積極 投資

- 地域開發의 集中的인 投資를 통한 建設事業, 治水下水事業 等 住居環境改善 및 災害 없는 西大門區 建設

나. 豫算編成의 基本方向

歲入部門

- 不足財源 調達の 多樣化를 圖謀하는 方向에서 稅收 推計와 移越 豫算 歲計剩餘金을 全額 財源化하고 脫漏稅源 및 新規稅源 發掘과 受益者 負擔原則에 立脚한 開發負擔金의 稅入化 推進

歲出部門

- 中期財政計劃에 따른 計劃的이고 合理的인 財政運營으로 投資效果의 極大化를 圖謀하는 豫算費目別 審議를 止揚하여 單位事業別 妥當性과 效果를 檢討 消耗性 經費를 最大限 抑制 自治時代에 符合하는 經營的 側面 事業選定
- 91年度 事業에 대한 全面 再檢討를 實施하여 地方化時代에 副應하는 區特性과 特色事業을 發掘 施行하고 保育施設, 綜合福祉館, 社會福祉施設 民資留置擴大와 民間委託管理 方式 導入
- 低所得市民生活支援 擴大, 清掃業務의 劃期的 改善, 地域開發推進과 時急한 宿願事業解決, 市民健全餘暇生活支援, 新秩序 新生活運動 持續推進을 市民不偏 解消을 위한 主要施策事業과 地域特性의 伸張을 위한 必需 事業으로 定함.

다. 92年度 豫算案의 主要內容

豫算規模

- 一般會計는 589억7,689만원으로 '91年度 本豫算보다 40.7%增加한水準이며 最終豫算對比 16.5% 增加
- 特別會計는 11억 8,989만원으로 '91年度 本豫算對備 4.9%增加 最終豫算對比 12% 減少

歲入豫算案

- 1992年度 歲入豫算案 589억7,689만원 中 自體財源이 總 215억3,575만원으로 地方稅 97억 9,854만원, 稅外收入 117억3,721만원이고 依存財源은 總 374억4,123만원으로 補助金 21억1,223만원, 調整交付金 353억2,900만원으로 充當 財政自立度는 36.5%
- 91年度 對比 179억6,800만원이 增加되었으며 增加內譯은 地方稅 16억7,489만원, 調整交付金 154억7,600만원 增加, 補助金은 18억 9,277만원이 減少

歲出豫算案

- 1992年度 歲出豫算案 589억7,689만원으로 議會費 10억5,986만원, 一般行政費250억908만원, 社會福祉費 135억4,471만원, 産業經濟費 10억3,065만원, 地域開發費 175억899만원, 民防衛費 1억8,673만원, 豫備費 6억3,698만원임.
- 經費 性質別 人件費 192억 2,137만원, 官署運營費 86억7,676만원, 基本經常費 45억8,129만원, 經常事業費 81억7,171만원, 主要事業費 176억 8,100만원 其他經費 6억 3,938만원

特別會計

- 醫療保護基金 特別會計規模 10억7,270만원, 歲入財源은 事業外收入 9,110만원 市費補助金 9억8,160만원이며, 歲出豫算은 診療費 9억6,972만원, 補填金 8,383만원 計上
- 새마을所得特別事業支援費 特別會計 規模 1억1,627만원으로 歲入財源은 事業外收入 1억1,627만원이며 歲出豫算은 低所得市民 및 低所得새마을 融資金 1억1,627만원 計上

3. 討論 要旨

- 서울新聞에 대한 統, 班長 無償購讀을 위한 豫算 補助는 서울新聞의 經營自立과 豫算節次 等を 위하여 漸次的으로 줄여 나가는 方案이 講究되어야함.
- 危險施設物 및 災害對策 補修費 豫算은 豫備費 性質로서 本豫算에 編成하여 事案이 發生되지 않을 境遇 不用額으로 處理케 됨으로 非效率的인 豫算 編成임.
- 幹線邊의 步道브릭 交替時 既存 步道브릭의 外形만을 基準으로하여 交替치 말고 老朽되어 반드시 交替하여야 할 곳만 施工하고 回收된 狀態가 良好한 步道브릭은 뒷골목에 鋪設하여 豫算을 節減하여야함.
- 우리 西大門區는 山地, 丘陵地域으로 降雨時 山沙汰가 憂慮되는 만큼 治山에 많은 關心을 가지고 綠地事業에 힘을 써야 할 것임.
- 道路施設 等 住民宿願事業의 年次的인 解決을 通하여 住居環境 改善에 많은 豫算이 編成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4. 小委員會 計數調整 報告 要旨

- 一般會計의 歲入, 歲出의 總計額 變動事項은 없음.
- 歲出豫算의 8個 事業費 中 614,644천원을 削減하여 다른 事業費로 368,838천원을 增額하고 削減殘額 245,806천원을 豫備費로 增額함.
- ※ 歲出豫算의 削減 및 增額內容 修正案 參考

5. 豫算案 修正 內容

가. 一般會計

- (1) 歲入調整.....58,976,985 천원
- (2) 歲出調整.....58,976,985 천원
 - 削 減.....614,644천원
 - 增 額.....614,644천원(豫備費 245,806천원 包含)

※ 別添 : 1992 年度 豫算案修正案

6. 修正案의 要旨

- 計數調整 小委員會의 報告要旨와 同一

7. 審査 結果

豫算決算特別委員會 在籍委員 10名中 9名 出席 表決處理. 在席委員 9名 中 贊成 8名, 反對 1名으로 修正案可決 및 審査報告書 採擇

1991年 12月 23日

豫算決算特別委員會

條例審查特別委員會

1. 概 況

鄭日洙 議員外 6人이 發議한 條例審查特別委員會 構成에 관한 決議案이 第6回 臨時會議 第2次 本會議(1991. 11. 15)에서 可決되어 第7回 定期會議 第2次 本會議(1991. 12. 3)에서 委員會條例 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9名의 委員이 選任되었다.

條例審查特別 委員會는 第1次 委員會(1991. 12. 3)를 開議하여 委員長 및 幹事를 選任하고 本會議로 부터 回附된 條例案의 審議를 爲한 會期를 決定하였다.

第2次 委員會(1991. 12. 24)에서는 區廳長으로 부터 提出된 12件의 改正 및 制定條例案을 審議하여 11件은 原案 可決하고 1件은 修正案을 可決하여 1991年 12月 26日 第7回 定期會議 第6次 本會議에서 成明濟 委員長이 審查結果를 報告하였다.

2. 委員長. 幹事 選出

年長者인 郭載滿 委員의 司會로 委員長 選任의 件을 上程, 選任方法을 討議한 바 多數委員이 投票없이 口頭推薦에 따른 滿場一致로 推戴方法을 提議하여 推薦된 成明濟 委員, 金平洛 委員을 對象으로 協議한 結果, 金平洛 委員의 辭意表明으로 成明濟 委員을 委員長으로 滿場一致 選出하였다. 이어 幹事 選任의 件을 上程하여 委員長이 指名할 것을 提議, 崔容完 委員을 幹事로 選任하였다.

그 名單은 다음과 같다.

委員長	幹事	委 員
成 明 濟	崔 容 完	趙 敏 行, 朴 老 鉉, 李 鳳 洙 郭 載 滿, 金 平 洛, 鄭 炳 八 具 滋 億

3. 審査 經過

- 條例審査特別委員會는 第2次 委員會(91. 12. 24)를 開議, 本會議로 부터 回附된 區廳長 提出 條例案을 審議하기 위하여 該當 課長이 出席한 가운데 提案說明을 聽取하고 委員別로 事前 檢討된 事項을 바탕으로 3件의 條例案을 各各 上程 審議하는 逐條審議 方法을 擇하여 質疑, 答辯을 實施하였으며 區稅減免에 관한 條例案 9件은 一括 上程 審議하여 區廳 原案대로 議決하였다.
- 서울特別市 西大門區 公印條例案을 審議하는 過程에서 金平洛 委員은 公印이 印刷된 用紙의 管理問題를 集中 質疑하였으며 問題點에 대한 對策으로 同條例 第13條 2項 條文의 修正과 第13條 3項의 新設을 骨子로 하는 修正案을 動議하여 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修正案이 可決되었다.
條例審査特別委員會는 第2次 委員會에서 回附된 12件의 條例案을 審議 議決하여 本會議에 報告토록 하고 會期中 活動을 終了하였다.

第 5 篇

議 政 活 動 및 行 事

▨ 初代議員 當選 記念植樹

▨ 區議員, 區廳幹部 交禮會

▨ 議政세미나 開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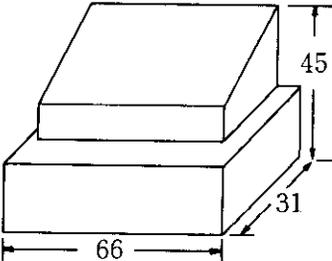
▨ 其他 活動 및 行事

— 初代議員 當選 記念植樹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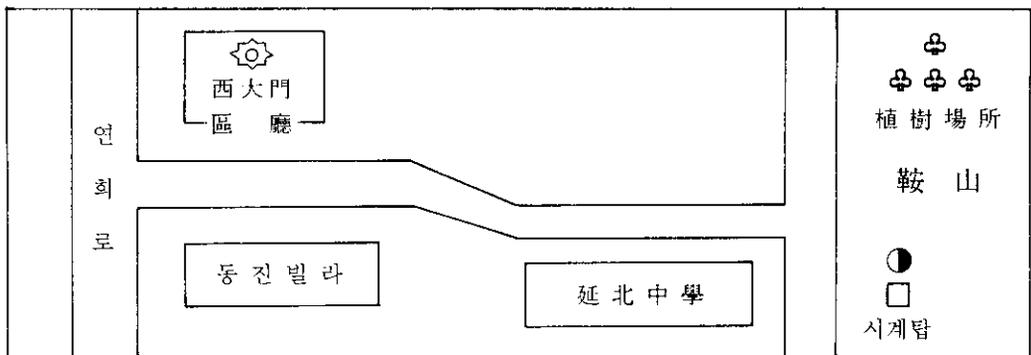
區議會 初代議員 當選 記念行事로 다음과 같이 記念 植樹를 實施하고 記念標石을 設置하여 그 뜻을 새겼다.

【概 要】

- 日 時 : 1991年 4月 5日(金) 10:00
- 場 所 : 西大門區 延禧洞 山2 (鞍山時計塔 앞)
- 植樹面積 : 800㎡
- 樹種및數量 : 丹楓(靑, 紅)58株
- 標石設置및 文案

<p style="text-align: center;">【 標石 模型 】</p>  <p style="text-align: center;">※ 標石才質 : 花崗石</p>	<p style="text-align: center;">【 全面 文案 】</p> <p>우리들 西大門區議會 初代 議員은 當選을 記念하고 힘모아 地域發展에 이바지 하고자 이곳 鞍山에 記念植樹 동산을 만들었습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191. 4. 5</p> <p style="text-align: center;">西大門區議會 議員一同</p> <p style="text-align: center;">※ 標石後面 議員姓名 새김</p>
---	--

○ 位 置



區議員. 區廳幹部 交禮會

區議會 開院前 當選議員과 管內 機關長 및 區廳幹部들과 相見禮를 갖고 區政 現況과 區議員 議政活動 內容을 紹介하였다.

- 日 時 : 1991年 4月 8日(월) 16:00
- 場 所 : 區廳 企劃狀況室
- 內 容
 - 當選議員 祝賀 및 區廳幹部와 議員 相互間의 相見禮
 - 區政現況
 - 區議員 議政活動 紹介
- 參席對象 : 94名
 - 當選議員 : 29名
 - 區廳幹部 : 區廳長 外 32名
 - 國會議員 : 2名(姜 聖模. 林 春元 議員)
 - 政黨代表 : 3名(安 聖燦. 金 學民. 金 相賢)
 - 管內機關長 : 5名(西大門, 西部警察署長. 西部教育區廳長 西大門稅務署長. 西大門郵遞局長)
 - 洞 長 : 22名

議政 세미나 開催

議員들의 地方自治에 대한 基本素養을 涵養하고 議會의 役割과 機能, 地方行政에 대한 理解 增進을 圖謀

1. 開催 概況

開催回数	參與 議員數	平均參與議員數	所要 時間
5 回	141 名	28 名	17 時間

2. 세미나 開催 狀況 一覽

日 時	場 所	主 題	講 士
1991. 4. 11 13:00~ 17:00	區 議 會 本會議場	地方自治法 解説 議會와 自治團體의 關係 議會的 機能과 役割 議員의 權限과 任務	國會事務處 議事課長 徐 又善
1991. 10. 15 16:00~ 18:00	올림피아 호텔	地方自治의 基本原理 바람직한 議政活動方向	서울大 行政學 教授 法學博士 朴 東緒
1991. 11. 8 15:00~ 18:00	區 議 會 本會議場	豫算, 決算審議技法 및 行政會計	明知專門大 稅務會計科 教 授 朴 玉順
1991. 11. 15 17:00~ 19:00	스위스 그랜드호텔	地方自治와 民主主義 地方自治의 本質과 傾向 外國의 地方自治 比較	漢陽大 地方自治研究所 教 授 趙 昌鉉
1991. 11. 19 10:00~ 17:00	區 議 會 本會議場	地域開發政策의 方向과 地方議會議員의 役割 豫算審議 主要內容과 着眼 事項 效率的인 區政 監查事務 知識과 着眼事項	地 方 議 會 研 究 所 研 究 委 員 國會事務處 豫算決算委員會 立法審議官 國會事務處 監查官

— 其他活動 및 行事 —

1. '91 市民體育大會 參加

서울市 各區 對抗 市民體育大會에 全議員이 參加하여 選手를 激勵하고 直接 選手로 出戰하기도 하여 區民과 呼吸을 같이하며 結束을 다졌다.

- 日 時 : '91. 9. 12 09:30~18:00
- 場 所 : 올림픽 主競技場
- 競技種目 : 씨름, 육상, 줄다리기, 文化行事 등
- 西大門區 參加內容
 - 選 手 團 : 104名
 - 應 援 團 : 350名
 - 文化行事要員 : 53名(假裝行列)
 - 區 民 : 1,769名

2. 不遇이웃돕기 誠金 募金

- 水災義捐金, 不遇이웃돕기 誠金 寄託
 - 日 時 : 1991. 9. 16
 - 誠 金 額 : 120만원
 - 寄 託 內 譯
 - 水災 義捐金 (70만원) : 韓國放送公社
 - 不遇이웃돕기(50만원) : 西大門區廳
- 年末 不遇이웃돕기 誠金 寄託
 - 日 時 : 1991. 12. 31
 - 誠 金 額 : 60만원
 - 寄 託 內 譯 : 不遇이웃돕기(西大門區廳)

3. 議員 産業視察

- 日 時 : 1991. 10. 18
- 視 察 地 : 清州(韓國陶磁器)
- 參 與 人 員 : 53名(夫婦同伴)
- 効 果 : 國內 優秀企業의 産業現場을 直接 體驗하고 議員相互間 親睦과 和合圖謀

4. 日本 區議會 招請訪問

韓日親善協議會 西大門區會長 鄭俊煥의 招請에 의하여 日本 墨田區議會를 訪問 日本의 地方議會를 見聞하고 議員間의 親善과 交流를 圖謀

- 訪 問 日 時 : 1991年 11月 20日~11月 23日(3박4일)
- 訪 問 地 : 日本 東京都 墨田區議會
- 訪 問 議 員 : 金銀天 副議長, 林在鮮 議員, 金平洛 議員, 姜碩宗 議員 宋榮于 議員

5. 基礎議員間 姊妹結緣 推進

他 市, 郡의 地方議會와 姊妹結緣을 맺어 相互交流를 통한 理解 增進과 議政 活動의 比較, 情報交換 等 地方自治 發展과 和合에 寄與하고자 推進

- 對象議會 : 慶南 巨濟郡 議會
- 推進經緯
 - 1991. 11. 15 第6回 臨時會 第2次 本會議時 議長 提案으로 議決
 - 姊妹結緣 實務推進班 巨濟郡議會 訪問
 - 日 時 : '91. 11. 18~19(1박2일)
 - 訪問議員 : 金鍾彩 議員, 朴老鉉 議員 (事務局職員 2名 帶同)
- 實務協議
 - 相互訪問 日程協議
 - 約定書, 記念牌 文案 및 製作關係 協議
- 姊妹結緣延期 : 定期會議日字 促迫 및 議長 身病으로 入院

第 6 篇

現況 및 統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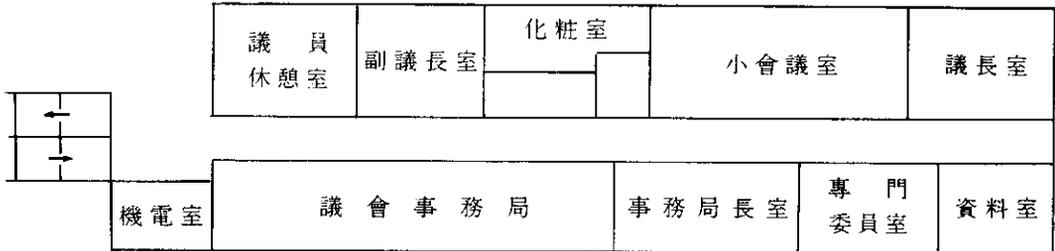
- ▨ 議會 施設
- ▨ 基礎議員 議員選舉
- ▨ 集會 및 會期
- ▨ '91議案 處理狀況
- ▨ 陳情書 處理

議會 施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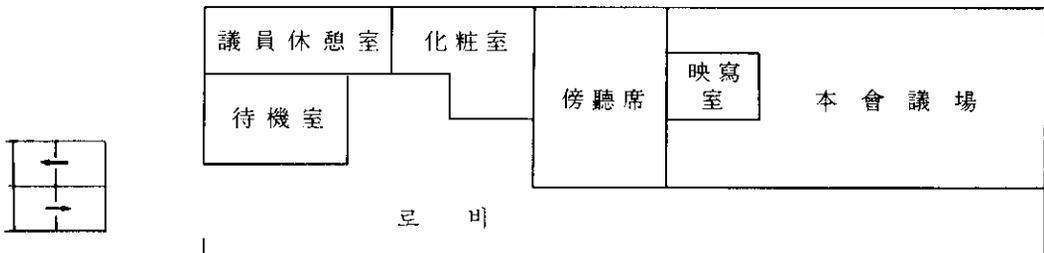
1. 議事堂 配置

(1. 2層 保健所)

《 3 層 》



《 4 層 》



2. 施設別 面積

計	本會議場	小會議室	議長室	副議長室	議員室	議員休憩室
1,138㎡	207.6㎡	79.2㎡	82.5㎡	50㎡	55.3㎡	49.6㎡

事務局長室	事務局	專門委員會室	資料室	映寫室	待機室	傍聽室	其他
37.3㎡	62.4㎡	38.8㎡	33.1㎡	7.2㎡	30.8㎡	33.6㎡	370.6㎡

3. 主要 裝備

放送設備	D S 시스템	V T R 프로젝트	V T R 再生器	電子複寫機	謄寫傳送機	퍼스널 컴퓨터	레이저 프린트	行政車輛
2조	1조4대	1조	1대	2대	1대	2대	1대	1대

基礎議會 議員選舉

地方自治가 中斷된지 30年만에 처음으로 實施된 地方選舉로서 選舉法 遵守에 대한 國民의 共感帶 形成으로 汎市民的인 監視體制가 確立되고 候補者가 自發的으로 同參하여 公明選舉 雰圍氣가 획기적으로 造成된 選舉였다.

■ 選舉 概況

1. 選舉 日

- 選舉 公告日 : 1991年 3月 8日 (金) 大統領 公告 第112號
- 選 舉 日 : 1991年 3月26日 (火)

2. 選舉人數 및 人口數

選舉 區數	投票 區數	世帶數 91. 2. 28	人 口 數			選 舉 人 數		
			男	女	計	男	女	計
22	101	118,110	198,983	199,719	398,702	133,899	139,052	273,052

3. 候補者 登錄 狀況

委 員 會	選 舉 區 數	議 員 定 數	候 補 者 登 錄 數			無 投 票 選 舉 區
			男	女	計	
計	22	29	53	5	58	4
西大門區 甲	14	14	29	1	30	4
西大門區 乙	8	15	24	4	28	

4. 當選者 및 登錄 狀況

委 員 會	選 舉 區 數	議 員 定 數	當 選 者 數			登 錄 者 數
			男	女	計	
計	22	29	29		29	29
西大門區 甲	14	14	14		14	14
西大門區 乙	8	15	15		15	15

候補者別 得票狀況

○ 西大門區 甲

選 舉 區 名	投 票 人 數	候 補 者	得 票 數	當 選 與 否
충 정 로 동	3,584	송영우	2,060	當選
		김의진	1,402	
천 연 동	6,356	전재환	2,581	當選
		이재환	1,520	
		정재연	2,124	
현 저 동	3,782	김용직	1,439	當選
		이봉수	1,554	
북 아 현 동 1	3,692	최병환	1,595	當選
		조민행	2,004	
북 아 현 동 2	4,046	윤익수	2,137	當選
		정현철	1,819	
북 아 현 동 3	5,112	전형종	927	當選
		김용철	1,853	
		전성상	2,209	
대 신 동	5,880	강석중	無投票	當選
창 천 동	4,289	김종철	1,964	當選
		정전춘	2,217	
연 회 1 동	5,570	김정현	3,098	當選
		최성식	2,303	
연 회 2 동		좌두행	無投票	當選
연 회 3 동		박노현	無投票	當選
홍 제 1 동		조갑현	無投票	當選
홍 제 2 동	3,785	이석문	1,834	當選
		이문복	1,869	
홍 제 4 동	3,994	임기훈	1,510	當選
		정화진	2,304	

○ 西大門區 乙

選 舉 區 名	投 票 人 數	候 補 者	得 票 數	當 選 與 否
홍 제 3 동	7,261	김영일	2,597	當選
		김종채	1,860	
		정철연	678	
		최은정	1,629	
홍 은 1 동	3,667	문군자	1,605	當選
		최용완	2,003	
홍 은 2 동	8,175	정병팔	2,785	當選
		성명제	2,580	
		공우영	1,125	
		박덕균	1,524	
홍 은 3 동	8,838	김은천	3,620	當選
		구자익	2,258	
		강달현	1,065	
		양윤두	1,726	
남 가 좌 동 1	6,851	정일출	2,247	當選
		권재일	2,216	
남 가 좌 동 2	9,456	박정래	2,222	當選
남 가 좌 동 2	9,456	김원주	3,227	當選
		임재선	4,939	
		김현중	1,022	
북 가 좌 동 1	6,152	이윤순	1,164	當選
		김평락	2,124	
		정혁주	2,733	
북 가 좌 동 2	9,315	곽재만	2,952	當選
		김현석	1,593	
		김홍기	1,519	
		정일수	3,004	

集會及會期

1. 會期別 集會公告. 開會. 閉會日

會 期 別	集會 公告日	開 會 日	閉 會 日
1 回 (臨時會)	1991. 4. 9.	1991. 4. 15.	1991. 4. 16.
2 回 (臨時會)	1991. 6. 19.	1991. 6. 26.	1991. 7. 1.
3 回 (臨時會)	1991. 7. 15.	1991. 7. 22.	1991. 7. 22.
4 回 (臨時會)	1991. 8. 5.	1991. 8. 13.	1991. 8. 22.
5 回 (臨時會)	1991. 10. 1.	1991. 10. 7.	1991. 10. 9.
6 回 (臨時會)	1991. 11. 1.	1991. 11. 8.	1991. 11. 15.
7 回 (定期會)	1991. 11. 25.	1991. 12. 2.	1991. 12. 26.

2. 會期別 開議日數와 會議時間

會 期 別	會 期	開議日數	總會議時間	1日 平均 會議 時間
1 回 (臨時會)	2日	2日	3 時間 11分	1 時間 36分
2 回 (臨時會)	6日	4日	13 時間 28分	3 時間 22分
3 回 (臨時會)	1日	1日	2 時間 38分	2 時間 38分
4 回 (臨時會)	10日	3日	5 時間 48分	1 時間 56分
5 回 (臨時會)	3日	2日	5 時間 3分	2 時間 32分
6 回 (臨時會)	8日	2日	3 時間 31分	1 時間 45分
7 回 (定期會)	30日	6日	16 時間 54分	2 時間 49分
8個 特別委員會會議	24日	24日	97 時間 16分	4 時間 3分
計	84日	44日	147 時間 49分	3 時間 21分

3. 會期別 集會要求 一覽

會 期 別	集會公告日	集會要求者	集 會 要 求 理 由
1回(臨時會)	1991. 4. 9.	區 廳 長	地方自治法 第39條 第1項에 의한 最初會議
2回(臨時會)	1991. 6. 19.	崔容完議員 外 11人	區政全般에 대한 質問
3回(臨時會)	1991. 7. 15.	鄭赫柱議員 外 10人	서울特別市教育委員會 委員候補者 選出의件
4回(臨時會)	1991. 8. 5.	區 廳 長	1991年度 追加更正豫算案 承認의 件
5回(臨時會)	1991. 10. 1.	金鍾彩議員 外 10人	西大門區議會徽章및 議員身分證規 程處理의 件
6回(臨時會)	1991. 11. 1.	區 廳 長	體育振興協議會條例改正案및 '92定數 物品取得 承認의 件
7回(定期會)	1991. 11. 25.		地方自治法 第38條에 依據

4. 集會 要求者別 統計

要 求 者	回 數	備 考
議 員 의 集 會 要 求	3回	臨 時 會
區 廳 長	3回	臨 時 會
定 期 會	1回	
計	7回	臨時會 6回, 定期會 1回

'91 議案 處理狀況

1. 種類別 議案處理 統計

區 分 議 案 別		回 附	處 理 內 容				否 決	計	撤 回
			可 決			計			
			原 案	修 正	小 計				
預算案、決算案、預備費		4	2	2	4		4		
條 例	議 員 發 議	2	2		2		2		
	區 廳 長 提 出	21	20	1	21		21		
	小 計	23	22	1	23		23		
建 議 案		2	2		2		2		
決 議 案		3	1		1	1	2	1	
承 認 案		6	5		5	1	6		
其 他		4	4		4		4		
總 計		42	36	3	39	2	41	1	

2. 會期別 議案處理 統計

區 分 會 期 別	預 算 案		條 例 案		建 議 案		決 議 案		承 認 案		規 則 案		其 他		計	
	提 出	處 理	提 出	處 理	提 出	處 理	提 出	處 理	提 出	處 理	提 出	處 理	提 出	處 理	提 出	處 理
1 回			2	2											2	2
2 回			2	2			2	2	1	1			1	1	6	6
3 回													1	1	1	1
4 回	1	1	2	2					2	2					5	5
5 回			2	2					1	1	1	1	1	1	5	5
6 回			2	2	1	1	1	1	1	1					5	5
7 回	3	3	13	13	1	1			1	1					18	18
計	4	4	23	23	2	2	3	3	6	6	1	1	3	3	42	42

3. 議案處理一覽

會議別			議案名	提出者 發議者	結果
會期	次數	日字			
1回 臨時 會議	2次	1991 4. 16	서울特別市西大門區議會議員의日費와旅費 支給에 관한條例案	李文馥 議員外 6人	原案 可決
			서울特別市西大門區議會決算檢査委員選任 運營및日費辨償條例案	金鍾彩 議員外 6人	原案 可決
2回 臨時 會議	1次	1991 6. 26	西大門區議會議員倫理綱領制定에 관한決議 案	宋榮于 議員外 7人	否決
			區有財產賣却承認에 관한件	區廳長	原案 可決
			서울特別市西大門區戶籍過怠料賦課徵收條 例中改正條例案	區廳長	原案 可決
			서울特別市西大門區地方雇傭職公務員人事 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區廳長	原案 可決
			서울特別市西大門區議會研究分科委員會構 成과運營에 관한規程	左斗行 議員外 5人	原案 可決
			西大門區議會議長不信任決議案	金平洛 議員外 7人	撤回
3回 臨時 會議	1次	1991 7. 22	서울特別市教育委員候補者選出方法및節次 案	鄭赫柱 議員外 6人	原案 可決
4回 臨時 會議	1次	1991 8. 13	서울特別市西大門區公共用地에編入된私權 制限土地綜合土地稅不均一課稅에 관한條例 中改正條例案	區廳長	原案 可決
			區有雜種財產(土地)賣却處分承認案	區廳長	否決

會議別			議案名	提出者 發議者	結果
會期	次數	日字			
4回 臨時 會議	1次	1991 8. 13	서울特別市西大門區地方別定職公務員人事 條例中改正條例案	區廳長	原案 可決
	3次	1991 8. 22	91年度定數物品取得承認要請件	區廳長	原案 可決
			91第1回西大門區追加更正豫算案承認案	區廳長	修正案 可決
5回 臨時 會議	1次	1991 10. 7	서울特別市西大門區保健所酬價條例中改正 條例案	區廳長	原案 可決
			區有雜種財產(土地)賣却處分承認案	區廳長	原案 可決
			서울特別市西大門區地方別定職公務員人事 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區廳長	原案 可決
			서울特別市西大門區議會議員身分證規則中 改正規則案	金源珠 議員外 6人	原案 可決
			서울特別市西大門區議會徽章規程案	金鍾彩 議員外 10人	原案 可決
6回 臨時 會議	1次	1991 11. 8	서울特別市西大門區體育進興協議會條例中 改正條例案	區廳長	原案 可決
			서울特別市西大門區行政權限委任條例中改 正條例案	區廳長	原案 可決
	2次	1991 11.15	條例審查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 \	鄭日洙 議員外 6人	原案 可決
			自動車稅및담배消費稅區稅轉換建議案	鄭日出 議員外 9人	原案 可決

會議別			議案名	提出者 發議者	結果
會期	次數	日字			
7回 定期 會議	2次	1991 12. 3	서울特別市西大門區都市가스事業基金設置 條例案	區廳長	原案 可決
			91年度定數物品取得承認案	區廳長	原案 承認
	3次	1991 12. 4	水道量水器分離設置에 관한建議案	金平洛 議員外 9人	原案 可決
	6次	1991 12.26	1990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案	區廳長	原案 可決
			1990年度豫備費支出承認案	區廳長	原案 可決
			1991年度歲入.歲出豫算案	區廳長	修正案 可決
			서울特別市西大門區行政權限委任條例中改 正條例案	區廳長	原案 可決
			서울特別市西大門區中古自動車賣買業者의 中古自動車에 대한課稅免除및不均一課稅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區廳長	原案 可決
			서울特別市西大門區國家有功者所有土地建 物및自動車의課稅免除에 관한條例中改正條 例案	區廳長	原案 可決
			서울特別市西大門區地方公社等에 대한區稅 課稅免除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區廳長	原案 可決
서울特別市西大門區賃貸住宅等建設에 대한 區稅課稅免除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區廳長	原案 可決	
서울特別市西大門區都市整理整頓에 따른區 稅課稅免除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區廳長	原案 可決			

會議別			議案名	提出者 發議者	結果
會期	次數	日字			
7回 定期 會議	6次	1991 12.26	서울特別市西大門區公共用地에編入된私權 制限土地에대한綜合土地稅不均一課稅에관 한條例中改正條例案	區廳長	原案 可決
			서울特別市西大門區새마을事業支援을위한 區稅課稅免除條例中改正條例案	區廳長	原案 可決
			서울特別市西大門區社會教育施設에대한區 稅課稅免除條例中改正條例案	區廳長	原案 可決
			서울特別市西大門區駐車場에대한課稅免除 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區廳長	原案 可決
			서울特別市西大門區稅條例中改正條例案	區廳長	原案 可決
			서울特別市西大門區公印條例案	區廳長	修正案 可決

陳情書 處理

陳情書 處理

接 受 : 8件
處 理 : 區廳 移送 處理

種類別 現況

計	道 路	建 築	安全對策	衛 生	交通施設
8件	2	2	2	1	1

陳情 件別一覽

連番	陳 情 內 容	處理結果(區廳通報事項)
1	都市計劃消防道路 開發 旣令 解除 要望	'92~3年度 豫算反映 中期計劃實行 豫定
2	石築崩壞憂慮 措置要望	築臺補強工事 施設 後 完了 通報
3	不法改築建物措置(朝鮮屋)	建築主告發, 原狀回復, 關係公務員措 置
4	弘恩洞 5-24 地上 交通安全燈設置 建議	서울地方警察廳 設置完了
5	弘恩2洞組合아파트工事場進入路擴張	現行道路障礙없음, 施工者措置指示
6	組合아파트施工에따른 安全對策要求	事前工事中止 및 安全對策樹立指示
7	朝鮮屋 營業許可에 따른 是正措置	許可瑕疵無, 是正措置疏忽公務員措置
8	新發生無許可建物 撤去時期 改善 【冬節期보일라실 撤去事例】	新發生 無許可建物 即時撤去 正當 한 事項

第 7 篇

議員主要經歷

— 議員主要經歷 —

(洞順位別)

姓名	出生年度	選舉區	學 曆 及 經 歷	備考
宋榮子	1944	忠正路洞	延世大經營大學院修了. 建國大行政大學院修了 美國하버드大學 行政學部(S.E.P)過程. 한진企業社, 건부建設, 韓國특전代表理事歷任. 초원建設代表理事(現), 延世라이온스會長. 西大門區行政諮問委員會理事, 西大門警察署 治安諮問委員	
全在煥	1941	天 然 洞	大邱대성高校卒, 慶北失業(주) 代表理事. 西大門警察署青少年先導委員, 바르게살기 協議會副會長, 天然洞새마을協議會拷問, 韓 國自由總聯盟西大門支部長, 天然洞名譽洞長. 民自黨中央委員商工分科委員	
李鳳洙	1939	峴 底 洞	崇文高校卒, 遞信部總務課勤務, 서울시새마을 運動指導委員, 民正黨第7地區委員, 西部靑少 年先導部委員長, 法務部更生保護委員, 自由總 聯盟갈현指導委員, 法務部西部管轄保護委員	
趙敏行	1939	北阿峴1洞	中央大法學科卒, 삼일家具代表, 西大門區廳 諮問委員, 西大門警察署對共指導副委員長, 平統諮問委員會西大門支會總務, 民正黨中央 委員歷任, 民自黨西大門甲地區黨副委員長	

姓 名	出生年度	選 舉 區	學 曆 및 經 歷	備考
尹益洙	1942	北阿峴2洞	世宗大經營大學院修了. 북성國校育成會長. 北阿峴2洞마르게살기委員. 北阿峴2洞 새마을指導者. 汎民族올림픽推進中央協議會代議員歷任. 중곡식품代表. 民自黨西大門甲地區黨黨務協議會長. 社會體育西大門區蹴球聯合會長	
全聖章	1933	北阿峴3洞	양도國校卒業. 새마을指導者研修院講師. 韓國電力社員研修院講師. 새마을金庫聯合會研修院講師. 새마을文化新聞理事. 88올림픽技術自願奉仕會奉仕局長歷任. 世界日報北阿峴支局長. 西部新聞北阿峴支局長	
姜碩宗	1947	大 新 洞	建國大行政大學院修了. 延世大經營大學院最高經營者過程修了. 日本國東京都東京製菓學校. 平統諮問委員. 民自黨西大門甲地區黨副委員長. 西大門區廳諮問委員. 韓日親善協會西大門區副委員長. 그린하우스製菓代表	
鄭田村	1940	滄 川 洞	中央大法大卒. 延世大行政大學院修了. 大韓요식업中央會長. 아시아7개국飲食聯盟會長歷任. 中央大同窓會理事. 滄川洞開發委員會會長. 民自黨西大門甲地區黨副委員長. 市政諮問委員. 區政諮問委員會副委員長. 平統諮問委員會西大門支會長. 民自黨西大門甲地區黨副委員長. 형제가든, 장미헬스經營.	

姓名	出生年度	選舉區	學歷 및 經歷	備考
金廷炫	1939	延禧1洞	延世大產業大學院修了. 延禧1洞 새마을金庫理社長歷任. 貯蓄推進中央委員歷任. 延禧1洞 새마을指導者協議會會長歷任. 새마을金庫西大門區理事長協議會總務歷任. 平統諮問委員西大門區廳諮問委員. 韓日親善協議會理事	
左斗行	1937	延禧2洞	濟州農高卒. 北濟州郡廳農政課勤務. 대원精密工業(주)代表理事. 韓日親善西大門區協議會理事. 西大門警察署諮問委員. 國際라이온스世界大會韓國代表. 韓國J地區삼다라이온스클럽會長歷任. 延禧2洞防衛協議會副會長. 西大門區在鄉軍人會會長. 南大門地域商人協議會會長	
朴老鉉	1950	延禧3洞	忠南大經營大學院修了. 延禧3洞防衛協議會委員. 延禧3洞바르게살기委員會委員. 鍾路區畜產企業聯合理事. 西大門警察署青少年先導委員會延禧派出所委員長. 延禧라이온스클럽會長. 新村中央침례教會執事. 고려숯불갈비代表	
曹甲鉉	1949	弘濟1洞	慶熙大行政大學院修了. 弘濟1洞새마을指導者協議會委員. 西大門區새마을協議會副委員長歷任. 고은國校育成會長. 西部新聞社專務理事. 弘濟第11區域再開發組合長. 環境保護協議會西大門支部長. 環境育成會運營委員	

姓 名	出生年度	選 舉 區	學 曆 및 經 歷	備考
李文馥	1948	弘濟2洞	東國大行政大學院行政管理43期卒. 밝은社會 韓國本部서울地域副總裁. 西大門區廳諮問委 員. 西大門區廳建築審議委員. 鞍山青少年指 導育成會長. 民自黨西大門甲地區黨副委員長. 수정電子產業專務理事	
金永一	1950	弘濟3洞	成均館大行政大學院修了. 民主黨西大門乙地 區黨運營委員. 國會議員林春元特別補佐役. 民主黨西大門乙地區黨地方自治對策委員. 天 主教弘濟洞教會司牧委員歷任. 마로크家具 弘濟洞展示場代表	
金鍾彩	1947	弘濟3洞	大田高卒. 弘濟3洞 淨化委員長. 月刊문화촌 發行人歷任. 弘濟3洞 防衛協議會副委員長. 弘濟3洞 民正黨指導長 歷任. 西大門區老人會 諮問委員. 서울시兒童委員. 民自黨 西大門區乙地區黨運營委員. 仁旺國 校育成會長. 정릉女商育成會長	
丁和鎭	1935	弘濟4洞	養正高校卒業. 서울유신商工社 自營. 근대화 連鎖店監查. 弘濟4洞 새마을金庫 理事. 平統 諮問委員. 西大門區새마을協議會副議長. 새 마을金庫聯合會서울시支部西大門區支會長協 議會會長. 環境育成會運營委員・協議會長	

姓名	出生年度	選舉區	學歷及經歷	備考
崔容完	1948	弘恩1洞	建國大法政大學卒. 建國大法政大學議會副議長. ROTC 7期. 弘恩1洞 豫備軍中隊長. 西大門區廳民防衛教育講師. 弘濟國校名譽教師. 弘恩1洞防衛協議會總務.	
鄭炳八	1938	弘恩2洞	世宗大經營大學院修了. 莞島郡山林組合勤務. 光州文化放送局報道部記者歷任. 農協直賣場代表. 國際라이온스協會309(韓國)J地區5地域副總裁. 大屯山觀光호텔理事.	
成明濟	1938	弘恩2洞	조지워싱턴大學行政大學院11期. 成均館大行政大學院修了. 西大門區防衛協議會委員. 西大門警察署青少年教育會委員. 民自黨西大門乙地區首席副委員長. 全國冷凍自動車合資會社代表	
金銀天	1939	弘恩3洞	世宗大經營大學院修了. 조지워싱턴大學行政大學院修了. 延世大產業大學院修了. 全國電子商聯合會長. 國際라이온스309-J地區 財務總長. 民自黨西大門甲地區黨副委員長. 西大門區鞍山獎學會理事. 西部警察署治安諮問委員	
具滋億	1938	弘恩3洞	報恩農高卒業. 忠北大農科大學卒業. 美國聯邦政府勞動省勞使紛糾調整委員會研究員過程修了. 同調整委員會研究員. 農協中央會勤務. 美조지워싱턴大經營大學院修了. 서울市洞長歷任. 大裕產業(株)商務理事. 富國開發(株)代表理事. 天主教弘濟洞教會老人大學初代學長	

姓 名	出生年度	選 舉 區	學 曆 및 經 歷	備考
鄭日出	1941	南加佐1洞	木浦商高卒業. 民族統一學校修了. 南加佐1洞第25統長. 新民黨青少年指導委員. 平和民主黨西大門(乙)地區 運營委員長・對策委員長	
朴正來	1937	南加佐1洞	明知大社會教育大學院修了. 再建國民運動麻浦區分會長. 서울시糧穀組合理事. 南加佐1洞防衛協議會委員長. 南加佐1洞새마을金庫理事長歷任. 民正黨 南加佐1洞 指導委員長歷任. 全國糧穀商協會西大門支部長. 바르게살기 南加佐1洞委員長	
林在鮮	1940	南加佐2洞	公州高卒. 延世大經營大學院修了 韓國沐浴業中央會西大門區支會長. 平統諮問委員西大門區幹事. 西大門區바르게살기協議會副會長. 명지, 천연목욕탕 經營	
金源珠	1947	南加佐2洞	조지워싱턴大學行政大學院修了. 韓國稅政新報次長歷任. 금원人力開發代表. 民主黨西大門乙地區黨租稅部長, 治安問題特別委員長, 行政代理人, 地方自治對策委員	
鄭赫柱	1937	北加佐1洞	大田師範大學校卒. 教師勤務. 西部警察署防犯委員長協議會副會長. 北加佐1洞 바르게살기委員長. 西大門區바르게살기協議會事務局長. 北加佐1洞醫療保險支援協議會長	

姓名	出生年度	選舉區	學歷 및 經歷	備考
金平洛	1942	北加佐1洞	全州高卒. 東國大學法政大學卒. 東國大學校總學生會副會長. 在京早안學友會第3代會長歷任. 國會議員林春元特別補佐役. 民主黨西大門區乙地區黨 運營委員. 地方自治研究員. 明知書店 經營	
鄭日洙	1942	北加佐2洞	協成高校卒業. (株)오성產業專務. 社會福祉法人성애원理事. 平和民主黨 西大門(乙)地區組職部長, 도서민對策委員長. 國會議員林春元特別補佐役	
郭載滿	1937	北加佐2洞	漢陽大工科學卒. 永登浦區廳, 西大門區廳 建築課勤務. 韓國建設新聞社編輯委員. 大韓建築士協會代議員. 西大門區建築民願調整審議委員. 재흥建築士事務所長	

附 錄

[議會關聯 諸規定]

서울特別市西大門區議會事務局設置條例	197
서울特別市西大門區議會行政事務監査및調査에관한條例	200
서울特別市西大門區議會議員의日費와旅費의支給에관한條例	203
서울特別市西大門區議會에出席하여答辯할수있는關係公務員의 範圍에관한條例	209
서울特別市西大門區議會委員會條例	210
서울特別市西大門區議會公印條例	213
서울特別市西大門區議會會議規則	217
서울特別市西大門區議會請願審查規則	236
서울特別市西大門區議會陳情書等處理에관한規程	241

서울特別市西大門區議會事務局設置條例

第1條(目的) 이 條例는 地方自治法 第82條내지 第84條의 規定에 의하여 서울特別市 西大門區議會의 事務를 處理하기 위한 機構와 그所屬 職員의 定員 其他 必要한 事項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事務局) ① 서울特別市 西大門區議會(以下 “議會”라 한다)의 事務를 處理하기 위하여 議會에 事務局을 둔다.

② 事務局에 事務局長 1人과 기타 必要한 職員을 둔다.

③ 事務局長은 地方書記官으로 보한다.

④ 事務局長은 서울特別市 西大門區議會 議長 (以下 “議長”이라 한다)의 命을 받아 議會의 事務를 통할하고 所屬 職員을 指揮, 監督한다.

第3條(下部組職) 事務局長의 業務를 補佐하기 위하여 專門委員과 議政係, 議事係, 議案係을 둔다.

第4條(職員의 定員) 區議會 事務局에 두는 職級別定員은 別表와 같다.

第5條(職員의 派遣要請) 議長은 議會 事務處理의 支援을 위하여 서울特別市 西大門區廳廳長에게 그 所屬 職員의 派遣을 要請할 수 있다.

第6條(施行規則) 이 條例의 施行에 관하여 必要한 事項은 서울特別市 西大門區 規則으로 定한다.

附 則

①(施行日) 이 條例는 議會의 最初 集會日부터 施行한다.

②(開院準備에 대한 臨時措置) 서울特別市 西大門區廳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議會의 最初集會日 前日까지 開院의 準備을 위하여 第4條의 規定에 의한 定員의 範圍 안에서 必要한 職員을 들 수 있다.

③(職務遂行에 관한 臨時措置) 第1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議會의 最初 集會日 前日까지 議會의 開院에 必要한 準備事項 中 幹事의 職務에 屬하는 事項에 관한 事務는 서울特別市 西大門區 總務局長이 이를 遂行한다.

【別表 1】

서울特別市西大門區議會事務局職員定員表

○ 別 定 職	
• 秘 書 (7級相當)	1
• 秘 書 (9級相當)	1
○ 別定職 또는 一般職	
• 地方行政事務官 또는 別定職 5級相當	2
○ 一 般 職	
• 地方書記官	1
• 地方行政主事	3
• 地方行政主事補	3
• 地方行政書記	2
• 地方行政書記補	2
○ 技 能 職	
• 8等級 地方事務補助員(조무)-速記士	2
• 10等級 地方事務補助員(조무)-速記士	2
• 9等級 地方事務補助員(조무)-表決士	1
• 10等級 地方事務補助員(打字)	2
• 10等級 地方防護員	2
• 10等級 地方運轉員	2

※ 別表2의 職員 定員表에 의한다.

【別表 2】

自治區議會事務局別職員定員表(條例 第4條の 別表)

區別	議員 數	定員	一般職					行政 ・ 別定 5 級	別定 (祕書)		技能職				
			4 級	6 級	7級以下				7 級	9 級	速記 職	打 字	運傳 員	防護 員	案內 表決士
					7 級	8 級	9 級								
西大門	29	26	1	3	3	2	2	1	1	4	2	2	2	1	

서울特別市西大門區議會行政事務監査및調査에 관한條例

第1條(目的) 이 條例는 地方自治法 (以下 “法”이라 한다) 第36條 및 同法施行令 (以下 “令”이라 한다) 第19條의 2 規定에 의하여 서울特別市西大門區議會 (以下 “議會”라 한다)가 행하는 行政事務監査 (以下 “監査”라 한다)와 行政事務調査 (以下 “調査”라 한다)에 관한 節次와 其他 必要한 事項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監査) ① 議會는 區의 行政事務에 관하여 所管 常任委員會別로 監査를 行한다. 다만, 本會議의 議決로 監査特別委員會(以下 “監査委員會”라 한다)를 構成하여 監査를 行할 수 있다.

② 令 第17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監査計劃書는 常任委員會 또는 監査委員會가 運營委員會와 協議하여 作成하며 監査日程, 監査委員會의 編成, 監査要領, 監査場所 等 監査에 必要한 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

③ 本會議는 第2項의 監査計劃書を 檢討한다음 議決로써 이를 承認하거나 返戻한다.

第3條(調査) ① 議會는 在籍議員 3分の 1 以上の 發議가 있는 境遇 本會議의 議決을 거쳐 區의 行政事務 中 特定事案에 관하여 調査를 行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調査는 調査의 範圍와 調査를 施行할 委員會 等を 記載하여 發議議員이 連署한 書面으로 發議 하여야 한다.

③ 議長은 第2項의 發議가 議決되면 지체없이 本會議 議決로 調査特別委員會 構成하거나 該當 常任委員會에 回附하여 調査를 施行할 委員會(以下 “調査委員會”라 한다)를 確定한다.

④ 調査委員會는 調査의 目的, 調査할 事案의 範圍, 調査方法, 調査日程, 所要經費 等を 記載한 調査計劃書を 本會議에 提出하여 承認을 얻어 調査를 實施한다.

⑤ 本會議는 第4項의 調査計劃書を 檢討한다음 議決로써 이를 承認하거나 返戻한다.

第4條(事務補助者) 議員이 監査 또는 調査를 함에 있어 事務補助가 必要한 때에는

議會 事務職員의 補助를 받을 수 있다.

第5條(監査 또는 調査의 對象機關) ① 監査 또는 調査의 對象機關은 다음 各 號와 같다.

1. 서울特別市 西大門區 (以下 “西大門區”라 한다)
2. 法 第104號 내지 製107號의 規定에 의한 西大門區의 所屬 行政機關과 法 第108條 및 第111條의 規定에 의한 下部行政機關
3. 西大門區가 設置한 法 第137條의 規定에 의한 地方公企業과 法 第138條의 規定에 의한 地方公社 및 地方公團
4. 法 第95條 第2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委任 또는 委託된 事務(西大門區에 委任 또는 委託된 事務를 除外한다)를 處理하는 團體 또는 機關. 다만, 本會議가 特別히 必要하다고 議決하는 境遇에 限한다.

② 議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監査 또는 調査의 對象機關의 事務가 다른 地方自治團體의 事務에도 該當하는 境遇에는 이를 監査 또는 調査함에 있어서 그 地方自治團體의 議會와 相互協議하여야 한다.

第6條(監査 또는 調査의 對象事務) 監査 또는 調査는 法 第9條에 規定된 地方自治團體의 事務範圍內의 事務에 대하여 實施한다.

第7條(調査委員會의 活動期間) 本會議는 調査委員會의 中間報告가 있는 境遇 이의 檢討후 議決로써 調査委員會의 活動期間을 延長 또는 短縮할 수 있다.

第8條(監査 또는 調査의 方法) ① 監査 또는 調査委員會는 監査 또는 調査를 위하여 必要한 때에는 그 議決로 現地確認을 하거나, 報告 또는 書類의 提出과 監査 또는 調査對象機關의 長이나 그 補助機關의 出席證言, 意見陳述을 要求할 수 있다. 이 境遇에 있어 現地確認의 通報 및 報告 또는 書類의 提出, 關係人의 出席證言 等に 관한 要求는 議長을 經由하여야 하며, 늦어도 그 該當日의 3日前까지는 該當者, 또는 該當機關에 到達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要求를 받은 關係人 또는 關係機關은 法令 또는 西大門區의 條例에서 特別히 規定한 境遇를 除外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監査 또는 調査委員會

의 活動에 協助하여야 한다.

第 9 條(監査 또는 調査의 場所) 監査 또는 調査는 監査 또는 調査委員會에서 定하는 바에 따라 議會 또는 監査, 調査의 對象現場이나 其他의 場所에서 할 수 있다.

第 10 條(監査 또는 調査結果의 報告) 令 第18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報告書에는 監査 또는 調査의 經過와 結果및 處理意見을 記載하고 그 重要 根據書類를 添附하여야 한다.

第 11 條(徽戒) 監査 또는 調査를 하는 議員이 令 第17條의6 規定에 의한 除斥事由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回避하지 아니하거나, 令 第17條의7 規定에 의한 注意義務에 違反한 때에는 法 및 議會會意規則이 定하는 바에 따라 徽戒할 수 있다.

第 12 條(準用規定 等) ① 監査 또는 調査委員會의 構成, 運營等に 관하여 이 條例에서 定하지 않은 事項은 議會委員會條例와 議會會議規則을 準用한다.

② 이 條例에 관하여 必要한 事項은 議會에서 따로 定할 수 있다.

附 則

①(施行日) 이 條例는 議會의 最初集會日 부터 施行한다.

②(監査 또는 調査의 事務에 대한 經過措置) 第6條의 規定에 의한 監査 또는 調査의 對象事務는 이 條例의 施行日 以後에 處理되는 事務에 限한다.

서울特別市西大門區議會議員의日費와旅費의支給에관한條例

第1條(目的) 이 條例는 地方自治法 第32號 및 同法施行令 第15條의 規定에 의하여 서울特別市 西大門區議會 (以下 “議會”라 한다) 議員 (以下 “議員”이라 한다)에 대하여 支給하는 日費와 旅費의 支給에 관하여 必要한 事項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日費支給) ① 議員이 議會에 出席할 境遇에는 會期 中에 限하여 日費를 支給한다.

② 日費는 會期가 끝나는 날에 支給한다.

第3條(出席日數計算) 會期 中 法令 또는 條例에 定하는 바에 의하여 議員으로서의 職務遂行上 議會에 出席하지 못하거나, 休會期間 또는 公休日의 境遇에는 이를 第2條의 出席日數로 본다.

第4條(旅費支給) 議員이 會期 中 議會의 會議(以下 “本會議”라 한다) 또는 委員會에 出席할 때와 本會議 또는 委員會의 議決이나 議長의 命에 의하여 公務로 旅行하는 때에는 旅費를 支給한다.

第5條(旅費의 種類) ① 會期 中 本會議 또는 委員會에 出席할 때와 國內旅行을 할 境遇에 支給하는 國內 旅費는 運賃(鐵道運賃, 船舶運賃, 航空運賃, 自動車運賃) 現地 交通費, 宿泊費, 食費, 食卓料로 區分한다.

② 外國에 旅行할 때 支給하는 國外旅費는 運賃(鐵道運賃, 船舶運賃, 航空運賃, 自動車運賃) 日費, 宿泊費, 準備金으로 區分한다.

第6條(日費支給 基準) 議員에게 支給하는 日費는 出席日數 1日에 30,000원으로 한다.

第7條(旅費支給 基準) ① 國內旅費는 別表1의 國內旅費 支給 基準表에 의하여 支給한다.

② 國外旅費는 別表2의 國外旅費支給 基準表에 의하여 支給한다.

第8條(議會事務室 所在地 內에서의出張時的 旅費) ① 議會 事務室 所在地內에서의出張에 있어서는 別表3에 의한 旅費를 支給한다.

② 第1項에서 “議會事務室 所在地 內에서의出張”이라 함은 西大門區에서의出張이나, 旅行거리가 12킬로미터 未滿인出張을 말한다.

第9條(準用) 이 條例에서 規定된 것을 除外하고 議員의 日費와 旅費의 支給에 관하여는 西大門區 公務員의 例에 따른다.

附 則

① 이 條例는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하되 最初 集會日로부터 適用한다.

【別表 1】

國內旅費支給基準表(第7條 第1項 關聯)

(單位：원)

구 분	鐵道 運賃	船 舶 運賃	航 空 運賃	自 動 車 運賃	現地交通費 (1日當)	宿 泊 費 (1夜當)	食 費 (1日當)	食卓料 (1夜當)
議 長 副 議 長	1等級	2等 定額	定 額	定 額	特地 4,500 甲地 4,500 乙地 4,000	特地16,000 甲地15,000 乙地13,500	特地10,500 甲地10,000 乙地 9,000	800
議 員	2等級	2等 定額	定 額	定 額	特地 4,000 甲地 4,000 乙地 3,500	特地13,500 甲地11,500 乙地10,500	特地10,000 甲地 9,500 乙地 8,500	800

- 備 考：1. “特地”는 서울特別市, 直轄市, 果川市, 慶州市 및 濟州市로 “甲地”는 道廳所在地, 城南市, 安養市, 富川市, 光明市, 議政府市, 安山市, 九里市, 原州市, 江陵市, 東草市, 忠州市, 裡里市, 群山市, 木浦市, 麗水市, 羅州市, 龜尾市, 浦項市, 永川市, 馬山市, 蔚山市, 晋州市, 西歸浦市로 “乙地”는 其他 地域으로 한다.
2. 自動車 運賃 및 航空 運賃 定額は 交通部長官의 認, 許可料金を 基準으로 하되 割引이 可能한 境遇에는 割引料金を 支給한다.
3. 鐵道運賃 區分表 中 1等級은 새마을호 特室, 2等級은 새마을호 普通室, 3等級은 無窮花號 普通室 또는 統一號 特室을 가르키며 當該 鐵道運賃 區分表를 適用할 수 없을 境遇에는 그 路線의 列車 最高等級에 該當하는 鐵道運賃을 支給한다.

【別表 2】

國外旅費支給基準表(第7條 第2項 關聯)

(單位：美佛貨)

區分	鐵道運賃	船舶運賃	航空運賃	自動車運賃	日費(1日當)	宿泊費(1夜當)	食費(1日當)	準備金				
								15日未滿	15日以上30日未滿	30日以上		
議長 副議長	<ul style="list-style-type: none"> 2等級以上の等級區別이 있는 境遇에는 最上等級의 鐵道運賃 等級區別이 없는 境遇에는 그 乘車에 요하는 實費額 	<ul style="list-style-type: none"> 2等級以上の等級區別이 있는 境遇에는 最上等級의 船賃 等級區分이 없는 境遇에는 그 乘船에 요하는 實費額 	1等定額	實費額	가等級 25	가等級 100	가等級 53	140	170	195		
					나等級 25	나等級 79	나等級 46					
議員	<ul style="list-style-type: none"> 公務上の事由로 인하여 急行料金 또는 寢臺料金を 必要로 하는 境遇에는 그 實費額 	<ul style="list-style-type: none"> 公務上の事由로 인하여 寢臺料金を 必要로 하는 境遇에는 그 實費額 	2等定額		가等級 20	가等級 83	가等級 48	130	155	180		
				나等級 20	나等級 66	나等級 42						
				다等級 20	다等級 50	다等級 36						
				라等級 20	라等級 33	라等級 30						

備考：1. 國家 및 都市別 等級區分은 다음과 같다.

가. 가等級：뉴욕, 런던, 파리, 스톡홀름, 東京, 홍콩

나. 나等級

(1) 아세아주, 대양주：일본, 파푸아 뉴기니아

(2) 남·북아메리카주 : 워싱턴,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트리니다드 토바
고, 자메이카

(3) 유럽주 :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오스트리아, 벨기에, 네델란
드, 스위스,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4) 중동, 아프리카주 : 쿠웨이트, 아랍 에미리트, 오만, 가봉, 중앙아프리카, 카
메루운, 코트디부와르, 우간다, 니제르, 자이르, 수단

다. 다等級

(1) 아세아주, 대양주 : 인도, 터키,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중화민국, 필리핀, 타이,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2) 남·북아메리카주 : 미국, 캐나다, 멕시코, 코스타리카, 파나마, 아이티, 바
베이도스, 브라질, 칠레, 수리남

(3) 유럽주 : 덴마크, 아일랜드, 포르투갈, 회랍

(4) 中東, 아프리카주 : 요르단, 바레인,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리비아, 이집트, 나이지리아, 케냐, 세네갈, 라이베리아,
모리타니아, 이디오피아, 부르키나파소모리시어스, 시에
라리온

라. 라等級

(1) 아세아주, 대양주 : 인도네시아, 버마, 스리랑카, 튀지, 네팔

(2) 남·북아메리카주 : 구아테말라, 엘살바도르, 도미니카공화국, 콜롬비아, 베
네수엘라, 에쿠아도르, 페루, 볼리비아, 우루구아이, 파
라구아이, 아르헨티나

(3) 유럽주 : 該當國家 없음

(4) 中東, 아프리카주 : 레바논, 북예멘, 모로코, 튀니지, 루안다, 말라위, 수와지
랜드, 가나, 소말리아

2. 1의 國家 및 都市別 等級區分에 없는 國家는 施行地에서 1의 國家의 首都까지
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國家의 等級을 適用한다.

【별표 3】

議會所在地內出張時旅費支給基準表(第8條 第1項 關聯)

施 行 거 리	支 給 額
12 킬로미터 以上	別表 1의 現地交通費 全額
12 킬로미터 未滿 8 킬로미터 以上	別表 1의 現地交通費의 5할
8 킬로미터 未滿 2 킬로미터 以上	大衆交通料金 實費 定額
2 킬로미터 未滿	支給하지 아니함

備 考：大衆交通이라 함은 버스 또는 地下鐵 料金を 基準으로 하되 大衆交通手段의 定期 運行 間隔이 1時間 以上인 地域에서 緊急을 要하는 境遇에는 一般 택시 料金を 支給할 수 있다.

서울特別市西大門區條例 第 號

서울特別市西大門區議會에出席하여答辯할수있는關係公務員의範圍에관한條例

第1條(目的) 이 條例는 地方自治法 (以下 “法”이라 한다) 第37條의 規定에 의하여 서울特別市 西大門區議會 (以下 “議會”라 한다) 또는 委員會에 出席하여 答辯할 수 있는 關係公務員의 範圍를 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範圍) 議會 또는 委員會에 出席하여 答辯할 수 있는 關係公務員의 範圍는 다음 各號와 같다.

1. 副區廳長
2. 區廳長의 補助機關 中 局·室長 및 5級 以上으로 補職되는 課長級
3. 法 第104條 내지 107條의 規定에 의한 所屬行政機關長
4. 所屬行政機關의 所屬公務員 中 區廳의 室·課長과 同一職級 以上인 者

附 則

이 條例는 議會의 最初集會日 부터 施行한다.

서울特別市西大門區議會委員會條例

第1條(目的) 이 條例는 地方自治法 第54條의 規定에 의하여 서울特別市西大門區議會 (以下 “議會”라 한다)委員會의 構成과 運營에 관한 事項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常任委員會의 設置) 議會에 두는 常任委員會와 그 委員定數는 다음과 같다.

1. 議會運營委員會 9 名
2. 總務委員會 14 名
3. 都市 建設委員會 13 名

第3條(常任委員會의 職務와 그 所管) ① 常任委員會는 그 所管에 속하는 議案과 請願審查등을 處理하는 職務를 행한다.

② 常任委員會의 所管은 다음과 같다.

1. 議會運營委員會

- 가. 議會 運營에 관한 事項
- 나. 會議規則 및 議會 運營과 關聯된 各種 規則에 관한 事項
- 다. 議會事務局 所管에 속하는 事項

2. 總務 委員會

- 가. 總務局 所管에 속하는 事項
- 나. 財務局 所管에 속하는 事項
- 다. 市民局 所管에 속하는 事項
- 라. 保健所 所管에 속하는 事項
- 마. 文化公報室 所管에 속하는 事項
- 바. 監查室 所管에 속하는 事項
- 사. 市民奉仕室 所管에 속하는 事項

3. 都市·建設委員會

가. 都市整備局 所管에 속하는 事項

나. 建設局 所管에 속하는 事項

第4條(常任委員會의 委員) ① 議員은 하나의 委員(以下 “常任委員”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議會 運營委員은 檢할 수 있다.

② 議長은 常任委員이 될 수 없다.

第5條(常任委員의 任期) ① 常任委員은 選任된 날로부터 2년간 在任한다. 다만, 總選舉 後 처음 選任된 委員의 任期가 閉會期間中에 滿了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委員을 새로 選任한 전일까지 在任한다.

② 보임된 常任委員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任 期間으로 한다.

第6條(常任委員長) ① 常任委員會에 委員長(以下 “常任委員長”이라 한다)1인을 둔다.

② 常任委員長은 常任委員中에서 議長選舉의 예에 준하여 本會議에서 選舉한다.

③ 常任委員長の 任期는 常任委員의 任期와 같다.

④ 常任委員長은 本會議의 動議를 얻어 그 직을 辭任할 수 있다. 다만, 閉會 中에는 議長의 許可를 받아 辭任할 수 있다.

第7條(特別委員會) ① 議會는 특정한 案件을 審査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本會議의 議決로써 特別委員會를 둘 수 있다.

② 議會는 豫算案과 決算을 審査하기 위하여 豫算決算特別委員會를 둔다.

③ 議會는 議員의 懲戒와 資格에 관한 事項을 審査하기 위하여 懲戒資格特別委員會를 둔다.

④ 特別委員會는 그 委員會에서 審査한 案件이 本會議에서 議決될 때까지 存續한다.

第8條(特別委員會의 委員長) ① 特別委員會에 委員長 1人을 두되 委員會에서 互選하고 本會議에 報告한다.

② 特別委員會의 委員長이 選任될 때 까지는 委員 中年長者가 그 職務를 代行한다.

③ 特別委員會 委員長은 그 委員會의 動議를 얻어 그 職을 辭任할 수 있다. 다만, 閉會 中에는 議長의 許可를 받아 辭任할 수 있다.

第9條(委員의 辭任) ① 常任委員의 選任은 議長이 추천하여 本會議의 議決로 選任한다.

② 特別委員會의 委員은 第1項의 規定에 따라 常任委員 中에서 選任한다.

第10條(委員長의 職務) ① 委員長은 委員會를 代表하고 議事를 整理하며 秩序를 維持하고 事務를 監督한다.

第11條(幹事) ① 委員會에는 幹事 1人을 둔다.

② 幹事는 委員會에서 互選하고 이를 本會議에 報告한다.

③ 委員長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幹事が 委員長의 職務를 代理한다.

第12條(小委員會) ① 委員會는 效率的인 案件 審査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小委員會를 둘 수 있다.

② 小委員會에서 審査를 마친 때에는 小委員會의 委員長은 그 審査經過와 結果를 委員會에 報告한다.

第13條(準用規定) 이 條例에 規定한 事項외의 委員會의 會議의 運營, 議事 等に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會議規則을 準用한다.

附 則

이 條例는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서울特別市西大門區議會公印條例

第1條(目的) 이 條例는 서울特別市西大門區議會(이하 “議會”라 한다)에서 使用하는 公印의 規格, 登錄, 管理등 기타 필요한 事項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種類) ① 公印은 의회청인과 職印으로 구분한다.

② 職印의 種類는 다음과 같다.

1. 議會議長
2. 各 常任委員會委員長
3. 議會事務局長

③ 第1項에 明示된 이외의 公印이 필요한 때에는 議長의 承認을 얻어 필요한 公印을 따로 備置할 수 있다.

④ 第2項 第2號의 職印은 서울特別市西大門區議會내에서 發信하는 公文書에 한하여 使用할 수 있다. 다만, 議長의 承認을 얻은 事項에 대하여는 對外 發信 公文書에 使用할 수 있다.

第3條(印影의 內容) ① 청인의 印影은 議會 다음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이고 職印의 印影은 職位의 名稱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

② 公印의 印影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第4條(規格) 公印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規格은 별표 1과 같다.

第5條(交付 및 登錄) 公印은 事務局長이 새겨 交付하되 별지 제1호 서식의 公印臺帳에 그 印影을 登錄하여 保存하여야 한다.

第6條(管理) 公印은 議政係長이 管理하며 보관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한다.

第7條(捺印의 位置) 公印은 그 機關 또는 職位의 名稱 끝자가 印影의 가운데 오도록 捺印한다.

第8條(再交付 및 廢棄) ① 公印이 紛失 또는 消滅되거나 更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事由를 明示하여 事務局長에게 公印의 再交付를 要請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경우 또는 기타의 事由로 公印을 廢棄할 때에는 이를 消却한 후 事務局長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第9條(公告) 公印을 交付, 再交付 또는 廢棄한 때에는 이를 公報에 公告하여야 한다.

附 則

① (施行日) 이 條例는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 (經過措置) 이 條例 시행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使用된 公印은 이 條例에 의 한 것으로 본다.

【別表 1】

公印의 規格

區 分	規 格	備 考
서울特別市西大門區議會印	3.6cm	목 인 쇄
서울特別市西大門區議會 議長의印	2.4cm	목 인 쇄
서울特別市西大門區議會 ○○○○委員會委員長의印	1.8cm	목 인 쇄
서울特別市西大門區議會 事務局長의印	1.8cm	목 인 쇄

【別紙 第1號 書式】

公 印 臺 帳

機關名



登 録	年 月 日	檢 印	
새 긴 날	年 月 日		
새 긴 사 람			
材 料		印 影 的 像	
摘 要			

서울特別市西大門區議會會議規則

第 1 章 總 則

第 1 條(目的) 이 規則은 地方自治法 第63條 等의 規定에 의하여 서울特別市西大門區議會(以下 “議會”라 한다)의 會議進行과 內部規律 等에 관하여 必要한 事項을 規定함으로써 議會의 民主的이고 能率的인 運營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 2 條(登錄) 議會議員(以下 “議員”이라 한다)은 任期初에 當選證書를 事務局長에게 提示하고 登錄하여야 한다.

第 3 條(議席配定) ① 議員의 議席은 議長이 運營委員會와 協議하여 이를 定한다. 다만, 協議가 이루어지지 않을때에는 議長이 暫定的으로 이를 定한다.
② 總選舉 後 議長이 選出되기 前의 議席은 事務局長이 地域 選舉區 順序에 따라 臨時로 定한다.

第 4 條(開會式) 議會는 集會日에 開會式을 行한다. 다만, 總選舉 後 最初의 臨時會에 있어서는 議長과 副議長이 選舉 後에 開會式을 行한다.

第 5 條(宣誓) 議員은 任期初에 議會에서 다음의 宣誓를 한다.

“本議員은 法令을 遵守하고 西大門區民의 權益과 福利를 增進하며 區政의 健全한 發展을 위하여 議員의 職務를 誠實히 遂行할 것을 西大門區區民앞에 嚴肅히 宣誓합니다.”

第 2 章 議長과 副議長

第 6 條(議長, 副議長의 選舉) ① 議長과 副議長은 議會에서 無記名 投票로 選舉하되 在籍議員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議員 過半數의 得票로 當選된다.

② 第1項의 得票者가 없을 때에는 2次 投票을 하고 2次 投票에서도 第1項의 得票者가 없을 때에는 最高得票者가 1人이면 最高得票者와 次點者에 대하여, 最高得票者가 2人 以上이면 最高得票者에 대하여 決選投票을 하여 多數得票者를 當選者로 한다.

③ 第2項의 決選投票結果 得票數가 같을 때에는 年長者를 當選者로 한다.

④ 議長과 副議長을 同時에 選舉할 境遇에는 議長의 選舉가 끝난 後 前 各項의 方法으로 副議長을 選舉한다.

第 7 條(議長, 副議長 任期) ① 議長選舉日이 副議長 選舉日보다 먼저인 境遇의 副議長의 任期는 議長의 任期와 같이 終了된다.

② 議員 總選舉 後 選出된 議長 또는 副議長의 任期가 閉會 中에 滿了된 때에는 그 議長 또는 副議長은 다음 會期에서 議長 또는 副議長을 選出한 날의 前日까지 在任한다.

第 8 條(臨時議長의 選舉) 臨時議長의 選舉는 議長, 副議長의 選舉에 準한다.

第 9 條(副議長의 議長職務代理) 議長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副議長이 그 職務를 代行한다.

第 10 條(議長, 副議長의 辭任) ① 議長과 副議長은 議會의 同意를 얻어 그 職을 辭任할 수 있다.

② 辭任에 대한 同意 與否는 討論을 하지 아니하고 票決한다.

第 3 章 會 議

第 1 節 開議, 休會, 會期, 宣布, 議事日程 等

第 11 條(開議) 本會議 開議時는 議長이 定한다. 다만, 議決이 있거나 議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이를 變更할 수 있다.

第 12 條(休會) ① 議會는 議決로 期間을 定하여 休會할 수 있다.

② 休會中이라도 西大門區廳長(以下 “區廳長”이라 한다)의 要求가 있거나 議長이 緊急한 必要가 있다고 認定될 때 또는 在籍議員 3分の 1 以上の 要求가 있을 때에는

會議을再開한다.

第 13 條(會期) ① 議會의 會期는 集會 後 即時議決로 이를 定하되 議決로 延長할 수 있다.

② 會議에 附議된 案件을 모두 處理하였을 때에는 會期 中에도 議決로서 閉會할 수 있다.

第 14 條(會議에 관한 宣布) ① 開議, 停會, 散會 및 流會는 議長이 宣布한다.

② 議長은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開議時로 부터 1時間이 經過할 때까지 地方自治法(以下 “法”이라 한다)第55條 第1項의 定足數에 達하지 못할 때에는 流會를 宣布할 수 있다.

③ 會議 中 第2項의 定足數에 達하지 못할 때에는 議長은 會議의 中止 또는 散會를 宣布한다.

④ 議長이 開議를 宣布하기 前이나 停會, 散會 및 流會를 宣布한 後에는 議事에 관한 發言을 할 수 없다.

第 15 條(議事日程) ① 議長은 開議 日時, 附議 案件과 그 順序를 記載한 議事日程을 作成하여 미리 議員에게 配付한다. 그러나 再開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議事日程의 作成에 있어서는 議會運營委員會와 協議하되 協議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議長이 이를 決定한다.

③ 議長은 特히 緊急을 要한다고 認定할 때에는 會議의 日時만을 議員에게 通知하고 開議할 수 있다.

第 16 條(議事日程의 變更) 在籍議員 5分の 1 以上の 連署에 의한 동의로 本會議의 議決이 있거나 議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議長은 議事日程의 順序를 變更하거나 다른 案件을 議事日程에 追加할 수 있다.

이 境遇 議員의 동의서에는 理由를 添附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하여는 討論을 하지 아니하고 表決한다.

第 17 條(議事日程의 未了案件) 議長은 議事日程에 올린 案件에 대하여 會議을 열지 못하거나 會議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日程을 定한다.

第2節 議案 및 動議

第18條(議案의 提出, 發議) 議會에서 議決할 議案은 區廳長이나 委員會 또는 議員이 提出하거나 發議한다. 다만, 議員은 在籍議員 5分の 1 以上の 連署로 發議하며 委員會의 發議提出은 그 所管에 속하는 事項에 限한다.

第19條(常任委員會 回附) ① 議長은 議案이 發議 또는 提出된 때에는 이를 印刷하여 議員에게 配付하고 本會議에 報告하며 所管 常任委員會에 回附하여 그 審査가 끝난 後 本會議에 附議한다. 다만, 閉會 또는 休會中에는 本會議 報告를 省略하고 回附할 수 있다.

② 議長은 案件이 어느 常任委員會의 所管에 속하는지 明白하지 아니한 때에는 議會 運營委員會와 協議하여 常任委員會에 回附하되 協議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議長이 所管 常任委員會를 決定한다.

第19條의2(特別委員會 回附) ① 議員의 動議가 있거나 議長이 필요하다고 認定하는 案件에 대하여는 本會議의 議決을 얻어 이를 特別委員會에 回附한다.

② 議長은 特別委員會에 回附된 案件과 關聯이 있는 다른 案件을 그 特別委員會에 回附할 수 있다.

第19條의3(審査期間) ① 議長은 審査期間을 定하여 案件을 委員會에 回附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경우 委員會가 理由없이 그 期間內에 審査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議長은 中間報告를 들은 後 다른 委員會에 回附하거나 바로 本會議에 附議할 수 있다.

第19條의4(委員會의 提出議案) 委員會서 提出한 議案은 그 委員會에 回附하지 아니한다. 다만, 議長은 議會運營委員會와 協議하여 이를 다른 委員會에 回附할 수 있다.

第20條(動議의 議題 成立) 이 規則에 다른 規定이 있는 境遇를 除外하고 動議는 動議者外 1人 以上の 贊成으로 議題가 된다.

第21條(修正動議) ① 議案에 대한 修正動議는 그 案을 갖추고 理由를 붙여 在籍議員

4분의 1 以上の 贊成者가 連署하여 미리 議長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② 委員會에서 審査報告한 修正案은 贊成없이 議題가 된다.

③ 委員會는 所管事項 外의 案件에 대하여는 修正案을 提出할 수 없다.

④ 議案에 대한 代案은 委員會에서 그 原案을 審査하는 동안에 提出하여야 하며 이를 그 委員會에 回附한다.

第 22 條(議案, 動議의 撤回) ① 議員이 發議한 議案을 撤回하고자 할 때에는 發議者 全員, 動議를 撤回하고자 할 때는 動議한 者가 請求하여야 한다. 다만, 本會議에서 議題가 된 後에는 本會議의 委員會에서 議題가 된 後에는 委員會의 動議를 얻어야 한다.

② 區廳長이 本會議 또는 委員會에서 議題가 된 區廳長 提出의 議案을 修正 또는 撤回하고자 할 때에는 本會議 또는 委員會의 動議를 얻어야 한다.

第 23 條(翻案) 翻案動議는 本會議에서는 議案을 發議한 議員이 그 議案을 發議할 때는 贊成者 3분의 2 以上の 動議로, 委員會에 있어서는 委員의 動議로 發議한다. 그러나 本會議에 있어서는 案件이 區廳長에게 移送된 後에는 翻案할 수 없으며 委員會에 있어서는 本會議에 議題가 된 後에는 翻案할 수 없다.

第 24 條(案件審議) ① 本會議는 案件을 審議함에 있어서 提案者의 趣旨說明을 듣고 質疑 討論을 거쳐 表決한다. 다만, 委員會의 審査를 거친 案件에 대하여는 委員長의 審査報告를 듣고 質疑 討論을 거쳐 表決하되 議決로 質疑와 討論 또는 그 中の 하나를 省略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提案者가 區廳長일 境遇 趣旨說明의 忠實을 위하여 必要한 때에는 關係 公務員으로 하여금 代理하여 說明하게 할 수 있다.

③ 議長은 必要하다고 認定할 境遇에는 2件以上の 案件을 一括해서 議題로 할 수 있다.

第 24 條의2(再回附) 本會議는 委員長의 審査報告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議決로 다시 그 案件을 같은 委員會에 再回附하거나 다른 委員會에 回附할 수 있다.

第 25 條(議案의 整理) 本會議는 議案의 議決이 있는 後 서로 抵觸되는 條項, 文句, 숫자, 其他의 整理를 必要로 할 때에는 이를 議長 또는 委員會에 委任할 수 있다.

第 26 條(議案의 移送) 議會에서 議決된 議案은 議長이 이를 지체없이 區廳長에게 移送한다.

第 3 節 發 言

第 27 條(發言의 許可) ① 議員이 發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議長에게 通知하여 許可를 받아야 한다.

② 發言通知를 하지 아니한 議員은 通知한 議員의 發言이 끝난 다음 議長의 許可를 받아 發言할 수 있다.

③ 議事進行에 대한 發言은 發言要旨를 議長에게 미리 通知하여야 하며, 議長은 議題에 直接關係가 있거나 緊急히 處理할 必要가 있다고 認定되는 것은 即時 許可하고 그 外의 것은 議長이 그 許可의 時期를 定한다.

第 28 條(發言의 場所) ① 發言은 登壇하여 하되 극히 簡單한 事項이나 討論 또는 議長이 許可한 때에는 議席에서 發言할 수 있다.

② 議長은 必要한 때에는 議席에서 發言하는 議員을 登壇하도록 할 수 있다.

第 29 條(發言의 繼續) 發言은 그 途中에 다른 議員의 發言에 의하여 停止되지 아니하며 散會 또는 會議의 中止로 發言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議事が 開始되면 議長은 먼저 그 發言을 繼續하게 한다.

第 30 條(議題外 發言의 禁止) ① 모든 發言은 議題 外에 미치거나 許可 받은 發言의 性質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議長은 議員의 發言이 第1項의 規定에 違反된다고 認定할 때에는 그 議員에 대하여 注意를 주거나 發言을 禁止시킬 수 있다.

第 31 條(發言回數의 制限) 議員은 같은 議題에 대하여 2회에 限하여 發言할 수 있다. 다만, 質疑에 대하여 答辯하거나 委員長, 發議者 또는 動議者가 그 趣旨를 說明할 때

와 議長이 許可할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 32 條(發言時間의 制限) ① 議員의 發言時間은 20分을 超過할 수 없다. 다만, 質疑·補充發言·議事進行發言 및 身上發言 時間은 10分을 超過할 수 없다.

② 議員이 時間制限으로 發言을 마치지 못한 部分에 대하여는 議長이 認定하는 範圍안에서 이를 會議錄에 掲載할 수 있다.

第 33 條(補充報告) 議長은 委員長 또는 委員長이 指名한 少數意見者가 委員會의 報告를 補充하기 위하여 發言하려고 할 때에는 다른 發言에 優先하여 發言하게 할 수 있다.

第 34 條(討論의 通知) ① 議事日程에 올린 案件에 대하여 討論하고자 하는 議員은 미리 反對 또는 贊成의 뜻을 議長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② 議長은 第1項의 通知를 받은 順序를 考慮하여 可及的 反對者와 贊成者를 교대로 發言하게 하되 反對者에게 먼저 發言하게 한다.

第 35 條(議長의 討論參加) ① 議長이 討論에 參加할 때에는 議長席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案件에 대한 表決이 끝날 때까지 議長席에 돌아갈 수 없다.

② 第1項에 의해 議長이 議長席에서 물러날 때에는 副議長이 議長을 代理한다.

第 36 條(質疑 또는 討論의 終結) ① 質疑 또는 討論이 끝났을 때에는 議長은 그 終結을 宣布한다.

② 議員 2人 以上の 發言이 있는 後에는 議員의 議決로 議長은 質疑나 討論의 終結을 宣布할 수 있다. 다만, 質疑나 討論에 參加한 議員은 그 終結을 動議할 수 없다.

③ 第2項의 動議는 討論을 하지 아니하고 表決한다.

第 4 節 表 決

第 37 條(表決의 宣布) ① 表決할 때에는 議長이 表決할 案件의 題目을 宣布하여야 한다.

② 議長이 表決을 宣布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案件에 대하여 發言할 수 없다.

第 38 條(表決의 參加) ① 表決할 때에는 會議場에 있지 아니한 議員은 表決에 參加할 수 없다. 그러나 投票에 의하여 表決할 때에는 投票函이 閉銷될 때까지 表決에 參加할 수 있다.

第 39 條(意思變更의 禁止) 議員은 表決에 있어서 標示한 意思를 變更할 수 없다.

第 40 條(表決方法) ① 表決할 때에는 議長이 議員으로 하여금 起立하게 하여 可否를 決定한다.

② 議長의 提議 또는 議員의 動議로 本會議의 議決이 있을 때에는 記名 또는 無記名 投票로 表決한다.

③ 議長은 案件에 대한 異議 有無를 물어서 異議가 없다고 認定한 때에는 可決되었음을 宣布할 수 있다. 그러나 異議가 있을 때에는 第1項 또는 第2項의 方法으로 表決하여야 한다.

④ 議會에서 實施하는 各種 選舉는 法令에 特別한 規定이 없는 限 無記名 投票로 한다.

第 41 條(投票節次) ① 投票할 때에는 各 議員은 먼저 名牌를 名牌函에 넣은 다음 投票用紙를 投票函에 投入한다.

② 投票할 때에는 議長은 議員 中에서 약간人의 監票委員을 地名하고 그 委員의 參與下에 投, 開票 狀況을 點檢 計算하게 한다.

③ 投票의 數가 名牌의 數보다 많을 때에는 再投票를 한다. 다만, 投票의 結果에 影響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監票委員은 다른 議員 모두의 投票가 끝난 後에 投票한다.

第 42 條(修正案의 表決順序) ① 同一議題에 대하여 數個의 修正案이 提出된 때에는 議長은 다음 各號에 의하여 表決의 順序를 定한다.

1. 最後로 提出된 修正案부터 먼저 表決한다.

2. 議員의 修正案은 委員會의 修正案보다 먼저 表決한다.

3. 議員의 修正案은 數個가 있을 때에는 原案과 差異가 많은 것부터 먼저 表決한다.

② 修正案이 全部 否決된 때에는 原案은 表決한다.

第 43 條(表決 結果宣布) 表決이 끝났을 때에는 議長은 그 結果를 宣布한다.

第 5 節 會 議 錄

第 44 條(會議錄의 作成) ① 議會는 會議錄을 作成하고 다음 事項을 記載한다.

1. 開會, 閉會에 관한 事項
2. 開會, 會議中止, 散會의 日時
3. 議事日程
4. 出席議員의 姓名 및 數
5. 出席公務員의 職과 姓名
6. 議員의 移動과 議席의 配定, 變動
7. 諸般報告事項
8. 議案의 發議, 提出, 回附, 還付, 移送과 撤回에 관한 事項
9. 附議案件과 그 內容
10. 議 事
11. 議決 및 記名投票의 投票者 姓名
12. 書面名質問과 答辯書
13. 議員의 發言補充書
14. 其他 本會議 또는 議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事項

② 發言者의 發言에 관한 記錄은 發言內容 全部를 그대로 記錄한다.

第 45 條(會議錄의 署名과 保存) ① 會議錄에는 議長·議長을 代理한 副議長, 臨時議長과 議會에서 選出된 2인 以上の 議員 및 事務局長이 署名·捺印한다. 다만, 選出된 議員은 한 會期동안만 署名·捺印한다.

② 會議錄은 議會에 保存하고 保存年限은 永久로 한다.

第 46 條(字句의 訂正과 異議의 決定) ① 發言한 議員과 公務員 其他 發言者는 會議錄이 配付된 날의 다음날 午後 5時까지 그 字句의 訂正을 議長에게 要求할 수 있다.

그러나 그發言의趣旨을變更할 수는 없다.

② 議員이 會議錄에 記載한 事項과 會議錄의 訂正에 關하여 異議를 申請한 때에는 討論을 하지 아니하고 本會議의 議決로 이를 決定한다.

第 47 條(會議錄의 配付 및 公開) ① 會議錄은 議員에게 配付하고 一般에게 公開한다.

그러나 議長이 祕密을 要하거나 社會의 安寧 秩序 維持를 爲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한 部分에 關하여는 發言者와 協議하여 이를 配付 및 公開되는 會議錄에 掲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議員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掲載하지 아니한 會議錄 部分에 關하여 閱覽, 複寫等を 申請한 때에는 正當한 事由가 없는 한 議長은 이를 拒絶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第2項에 의하여 許可받은 議員은 他人에게 이를 閱覽하게 하거나 轉載, 複寫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公開하지 아니한 會議의 內容은 公表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本會議 議決 또는 議長의 決定으로 第1項 但書의 事由가 削滅되었다고 判斷되는 境遇에는 配付 및 公開되는 會議錄에 掲載할 수 있다.

⑤ 公表할 수 있는 會議錄은 一般에게 有償으로 配布할 수 있다.

⑥ 會議錄 發刊에 關한 期間·節次·方法等 其他 必要한 事項은 議會에서 따로 定한다.

第 4 章 委 員 會

第 48 條(議事日程과 開會日時) 委員會의 議事日程과 開會日時は 委員長이 幹事와 協議하여 定한다.

第 49 條(本會議中 委員會 開會) 委員會는 本會議의 議決이 있거나 議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한 境遇를 除外하고는 本會議 中에는 開會할 수 없다.

第 50 條(委員會에서의 動議) 委員會에서의 動議는 特別히 多數의 贊成者를 要하지 아니하며 動議者外 1人 以上の 贊成으로 議題가 된다.

第 51 條(委員會의 審査) ① 委員會는 案件을 審査함에 있어서 먼저 提案者의 趣旨說明과 專門委員(專門委員을 두는 境遇)의 檢討報告를 듣고 質疑, 討論 및 逐條審査를 거쳐 表決한다. 다만, 委員會의 議決로 逐條審査를 省略할 수 있다.

② 委員會는 審議하는 案件이 豫算上의 措置를 隨伴하는 境遇와 重要하다고 認定되는 條例案에 대하여는 區廳長의 意見을 들어야 한다.

③ 第1項의 提案者가 區廳長일 境遇나 第2項의 境遇 說明의 忠實을 위하여 必要한 때에는 關係公務員으로 하여금 代理하여 說明하게 할 수 있다.

第 51 條의2(委員會의 提案) ① 委員會는 그 所管에 속하는 事項에 관하여 條例案 其他 議案을 提出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議案은 委員長이 提出者가 된다.

第 52 條(委員의 發言) ① 委員은 委員會에서 同一議題에 대하여 回數 및 時間等に 制限없이 發言할 수 있다. 다만, 따로 發言의 方法을 議決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委員은 委員會에서의 質疑를 1問1答 方式으로 할 수 있다.

第 53 條(委員아닌 議員의 發言 聽取) 委員會는 案件에 관하여 委員아닌 議員의 發言을 들을 수 있다.

第 54 條(委員會의 議事, 議決定足數) ① 委員會는 在籍議員 3分の 1以上の 出席으로 開會하고 在籍委員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委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② 委員長은 票決權을 가지며 可否同數일 때에는 否決된 것으로 본다.

第 54 條의2(連席會議) ① 委員會는 다른 委員會와 協議하여 連席會議를 열고 意見을 交換할 수 있다. 그러나 表決은 할 수 없다.

② 連席會議를 열고자 하는 委員會는 委員長이 附議할 案件名과 理由를 書面으로 提示하여 다른 委員會의 委員長에게 要求하여야 한다.

③ 連席會議는 案件의 所管委員會의 會議로 한다.

第 55 條(公聽會) ① 委員會는 重要한 案件 또는 專門知識을 要하는 案件을 審査하기 위하여 公聽會를 열고 理解關係者 또는 學識, 經驗이 있는 者等(以下 “陳述人”이라

한다)으로 부터 意見을 들을 수 있다.

② 委員會에서 公聽會를 열 때에는 案件, 日時, 場所, 陳述人, 經費 其他 參考事項을 記載한 文書로 議長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③ 陳述人の 選定과 發言時間은 委員會에서 定하며 陳述人の 發言은 그 意見을 듣고자 하는 案件의 範圍를 넘어서는 아니된다.

④ 委員會가 주관하는 公聽會는 그 委員會의 會議로 한다.

⑤ 其他 公聽會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議會에서 따로 定할 수 있다.

第 56 條(審査報告書의 提出) ① 委員會는 案件의 審査를 마친 때에는 審査經過와 結果 其他 必要한 事項을 書面으로 議長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報告書에는 小數意見의 要旨를 記載하여야 한다.

③ 議長은 報告書가 提出된 때에는 本會議에서 議題가 되기前에 印刷하여 議員에게 配付한다. 다만, 緊急을 要할 때에는 이를 省略할 수 있다.

第 57 條(委員長의 報告) ① 委員長은 所管委員會에서 審査를 마친 案件이 本會議에서 議題가 된 때에는 委員會의 審査經過와 結果를 本會議에 報告한다.

② 委員長은 다른 委員으로 하여금 第1項의 報告 또는 補充報告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委員長이 第1項의 報告를 하는 때에는 自己의 意見을 가할 수 없다.

第 58 條(委員會 會議錄) ① 委員會는 委員會 會議錄을 作成하고 다음 事項을 記載한다.

1. 開議, 會議中止와 散會의 日時
2. 議事日程
3. 出席委員의 姓名
4. 出席한 委員 아닌 議員의 姓名
5. 出席한 公務員, 陳述人の 姓名
6. 審査案件名
7. 議 事
8. 表決數

9. 委員長의 報告

10. 委員會에서 終結되거나 本會議에 附議할 必要가 없다고 決定된 案件名과 그 內容

11 其他 委員會 또는 委員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事項

② 委員會에서 發言者의 發言에 관한 記錄은 要約하여 記錄할 수 있다.

이 境遇 要約한 記錄이 發言者의 發言趣旨를 벗어나거나 지나치게 要約되어서는 아니된다.

③ 委員會 會議錄에는 委員長 또는 委員長을 代理한 幹事가 署名捺印한다.

第 59 條(非公開 會議錄 等の 閱覽과 貸出禁止) 委員長은 議員으로부터 非公開 會議錄 其他 祕密 參考資料의 閱覽要求가 있을 때에는 審査, 監査 또는 調査에 支障이 없는 한 이를 許容하여야 한다. 다만, 議會 밖으로는 貸出하지 못한다.

第 5 章 豫算案과 決算審査

第 60 條(豫算案 審議) ① 議會에 豫算案이 提出되는 때에는 區廳長으로 부터 豫算案에 대한 提案說明을 들은 後 議長은 이를 所管 常任委員會에 回附하고 所管 常任委員會는 豫備審査를 하여 그 결과를 議長에게 報告한다.

② 議長은 第1項의 報告書를 添附하여 이를 豫算決算特別委員會(以下 “豫決委員會”라 한다)에 回附하고 그 審査가 끝난 후 本會議에 附議한다.

③ 議長은 豫算案을 所管 常任委員會에 回附할 때에는 審査期間을 定할 수 있으며 常任委員會가 이를 理由없이 그 期間內에 審査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豫決委員會에 回附할 수 있다.

第 61 條(豫算案의 修正動議) 豫決委員會의 審査를 거친 豫算案의 修正動議는 在籍議員 3분의 1以上の 贊成으로 議題가 된다.

第 62 條(豫算案의 議決) ① 豫算案의 審査報告가 있을 때에는 豫算의 各 部門別로 會議에 附議할 수 있다.

② 豫算 各 部門의 審査가 끝나면 總額에 대하여 議決한다.

第 63 條(豫算案의 再審査要求) 豫決委員會에서 다시 審査할 必要가 있는 事項이 發見된 때에는 議會의 議決로 그 事項에 한하여 期間을 定하여 豫決委員會에 再審査를 要求할 수 있다.

第 64 條(決算의 審査) ① 議會에 決算이 提出된 때에는 議長은 이를 所管 常任委員會에 回附하고 所管 常任委員會는 豫備審査結果를 議長에게 報告한다.

② 議長은 第1項의 報告書를 添附하여 이를 豫決委員會에 回附하여 綜合審査케 한後 그 結果를 本會議에 附議하도록 한다.

③ 議長이 決算을 所管 常任委員會에 回附할 때에는 第60條 第3項을 準用한다.

第 6 章 區廳長 또는 關係公務員의 出席答辯

第 65 條(區廳長等の 出席要求) ① 本會議는 그 議決로 區廳長 또는 關係公務員의 出席을 要求할 수 있다. 이 境遇 發議는 在籍議員 5分の 1以上이 理由를 明示한 書面으로 하여야 한다.

② 委員會는 그 議決로 議長을 經由하여 區廳長 또는 關係公務員의 出席을 要求할 수 있다.

③ 第1項 또는 第2項의 要求가 있을 때에는 區廳長 또는 關係公務員은 出席答辯 하여야 하며, 區廳長이 出席要求를 받은 境遇 出席할 수 없는 事由가 있거나 答辯의 忠實을 위하여 關係公務員의 出席이 必要한 때에는 그 事由書를 議長에게 事前提出한後 關係公務員으로 하여금 代理出席, 答辯하게 할 수 있다.

④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質問을 하고자하는 議員은 미리 質問의 要旨와 所要時間을 記載한 質問要旨書를 議長에게 提出하여야 하며 議長은 이를 늦어도 質問時間 24時間 前까지 區廳長에게 到達되도록 送付하여야 한다.

第 66 條(區廳長에 대한 書面質問) ① 議員이 區廳長에게 書面으로 質問하려고 할 때에는 質問書를 議長에게 提出하여야 하며, 議長은 지체없이 이를 區廳長에게 移送한다.

② 區廳長은 質問書를 받은 날로부터 10日 以內에 書面으로 答辯하여야 한다. 그 期間內에 答辯하지 못할 때에는 그 理由와 答辯할 수 있는 期限을 議會에 通知하여야 한다.

③ 第2項의 答辯에 대하여 補充하여 質問하고자 하는 議員은 書面으로 다시 質問할 수 있다.

第 67 條(區廳長等の 發言) 區廳長 또는 關係公務員이 本會議나 委員會에서 發言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議長 또는 委員長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第 7 章 議員의 請假, 缺席, 辭職 및 資格審査

第 68 條(議員의 請假 및 缺席) ① 議員이 事故로 인하여 議會에 出席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缺席届를, 못할 때에는 請假書를 그 理由와 期間을 記載하여 議長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② 其他 議員의 請假 및 缺席에 관한 事項은 議會에서 따로 定한다.

第 69 條(議員의 辭職) ① 議員이 辭職하고자 할 때에는 本人이 署名 捺印한 辭職書를 議長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② 辭職의 許可與否는 討論없이 表決한다. 다만, 閉會中에는 議長이 이를 許可할 수 있다.

③ 議員은 提出한 辭職書에 대하여 議會의 議決 또는 議長의 許可가 있기 前까지 撤回할 수 있다.

第 70 條(請求書의 委員會 回附와 答辯書 提出) ① 議長은 法 第71條의 規定에 依據 議員의 資格審査 請求가 있을 때에는 그 請求書를 懲戒資格特別委員會에 回附하고 그 副本을 被審議員에게 送達하여 期日을 定하여 答辯書를 提出하게 한다.

② 被審議員이 天災地變 또는 疾病 其他 事故에 의하여 期日內에 答辯書를 提出하지 못함을 證明한 때에는 議長은 다시 期日을 定하여 答辯書를 提出하게 할 수 있다.

第 71 條(答辯書의 委員會 審査 等) ① 議長이 答辯書를 接受한 때에는 이를 懲戒資格

特別委員會에 回附한다.

② 懲戒資格 特別委員會는 請求書와 答辯書에 의하여 審査한다. 다만, 期日內에 答辯書를 提出하지 아니한 때에는 請求書만으로 審査를 할 수 있다.

③ 懲戒資格特別委員會는 審査報告書를 議長에게 提出한다. 이때 議長은 이를 本會議에 附議하여야 한다.

④ 資格喪失 議決이 있는 때에는 議長은 그 結果를 請求議員과 被審議員에게 送付한다.

第 72 條(當事者の 審問과 發言) ① 懲戒資格特別委員會는 必要한 때에는 議長을 經由하여 請求議員과 被審議員을 出席하게 하여 審問할 수 있다.

② 請求議員과 被審議員은 懲戒資格特別委員會의 許可를 받아 出席, 發言할 수 있다. 이 境遇 被審議員은 다른 議員으로 하여금 出席·發言하게 할 수 있다.

③ 被審議員은 本會議에서 스스로 辯明하거나 또는 다른 議員으로 하여금 辯明하게 할 수 있다.

第 8 章 秩 序

第 73 條(警護) ① 議長은 議會의 警護를 위하여 必要한 때에는 議會運營委員會의 同意를 얻어 一定한 期間을 定하여 管轄警察官署에 대하여 警察官의 派遣을 미리 要求할 수 있으며 議會의 警護가 급히 필요한 境遇는 議長이 單獨으로 事態가 解決될 때까지 警察官의 派遣을 即時 要求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警察官은 議長의 指揮를 받아 會議場 밖에서 警護한다.

③ 其他 議會의 警護에 관한 事項은 議會에서 따로 定한다.

第 74 條(會議의 秩序維持) ① 議員은 本會議 또는 委員會의 會議場 안에서 다음과 같은 行爲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國家 또는 地方自治: 團體의 機關이나 議會의 위신을 損傷시키는 言動

2. 議事進行을 遲延시키거나 妨害할 目的으로 新聞, 雜紙, 刊行物 其他 文書를 朗讀

하는 行爲

3. 議長의 許可를 받지 아니한 資料, 文書 等の 印刷物 配布 및 錄音, 錄畫, 撮影行爲
4. 飲食物의 攝取와 喫煙
5. 會議와 關係없는 物品의 携帶 搬入
6. 其他 暴力의 行事等 會議場의 秩序를 紊亂시키는 行爲

② 第1項의 規定에 違背하는 議員이 있을 때에는 議長 또는 委員長은 當日의 會議에 서 發言을 禁止하거나 退場시킬 수 있다.

③ 議長 또는 委員長은 會議場이 騷亂하여 秩序를 維持하기가 困難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會議을 中止하거나 散會를 宣布할 수 있다.

第75條(議長의 制止에 服從하지 아니하는 議員) 會議場 안에서 議長의 警告, 制止 또는 發言 取消에 服從하지 아니하는 議員은 懲戒對象者로서 懲戒資格特別委員會 또는 本會議에 附議할 수 있다.

第76條(會議場 出入의 制限) 會議場 안에는 議員, 關係公務員 其他 議案審議에 必要한 者와 議長이 許可한 者 外에는 出入할 수 없다.

第77條(傍聽) ① 議長은 傍聽權을 發行하여 傍聽을 許可한다.

② 其他 傍聽에 관한 事項은 議會에서 따로 定한다.

第78條(錄音·錄畫·撮影·中繼放送 等) ① 會議를 公開하지 아니 하기로 한 境遇를 除外하고는 議長 또는 委員長은 議會에 登錄된 記者에 限하여 會議場안(本會議場은 傍聽席에 限한다)에서의 錄音·錄畫·撮影 및 中繼放送 等を 許容할 수 있다.

② 本會議 및 委員會에서의 錄音·錄畫·撮影 및 中繼放送 等에 대하여는 議會에서 따로 定한다.

第 9 章 懲 戒

第79條(懲戒의 要求와 回附) ① 議長은 法 第78條에 該當하는 懲戒對象 議員(以下 “懲戒對象者”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本會議에 報告하고 懲戒資格特別委員會에

回附한다.

② 委員長은 所屬委員 中에서 懲戒對象者가 있을 때에는 議長에게 이를 報告한다. 이 境遇 議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本會議에 報告하고 懲戒資格特別委員會에 回附한다.

③ 議員이 懲戒對象者에 대한 懲戒를 要求할 때에는 在籍議員 5分の 1以上の 贊成으로 懲戒事由를 記載한 要求書를 議長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다만, 法 第75條의 規定에 의거 侮辱을 당한 議員이 懲戒를 要求할 때에는 贊成議員을 要하지 아니하며 懲戒事由를 記載한 請求書를 議長에게 提出한다.

④ 第3項의 懲戒要求가 있을 때에는 議長은 이를 本會議에 報告하고 懲戒資格特別委員會에 回附한다.

⑤ 第1項, 第2項 및 第4項의 規定에도 不拘하고 議長은 懲戒對象 行爲가 지극히 輕微하다고 認定되는 境遇에는 이를 本會議에 바로 附議할 수 있다.

第 80 條(懲戒의 要求 또는 回附의 時限) ① 第79條 第1項과 第2項 및 第4項의 規定에 의한 懲戒回附는 議長이 懲戒事由가 發生한 날, 懲戒對象者가 있는 것을 알게된 날, 委員長의 報告를 받은 날 또는 同條 第3項의 懲戒要求가 있는 날로부터 閉會 또는 休會期間을 除外한 3日 以內에 하여야 한다. 同條 第5項의 本會議 附議時限 또한 같다.

② 第79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委員長의 懲戒對象者 報告와 同條 第3項 規定에 의한 懲戒要求는 懲戒事由가 發生한 날, 懲戒對象者가 있는 것을 알게된 날로부터 5日 以內에 하여야 한다. 다만, 閉會期間中에 懲戒對象者가 있을 境遇에는 次期 議會의 集會日로부터 3日 以內에 하여야 한다.

第 81 條(議事의 非公開) 懲戒에 관한 會議는 公開하지 아니한다.

第 82 條(審問 및 辯明) ① 懲戒資格特別委員會는 議長을 經由하여 懲戒對象者와 關係 議員을 出席하게 하여 審問할 수 있다.

② 議員은 自己의 懲戒案에 관한 本會議 또는 委員會에 出席할 수 없으나 議長 또는 委員長의 許可를 받아 스스로 辯明하거나 다른 議員으로 하여금 辯明을 하게 할 수

있다.

- 第 83 條(懲戒의 議決과 宣布) ① 議長은 懲戒資格特別委員會로부터 懲戒에 대한 審査 報告書를 接受한 때에는 지체없이 本會議에 附議하여 이를 議決하여야 한다.
- ② 懲戒를 議決한 때에는 議長은 公開會議에서 이를 宣布한다.

第 10 章 補 則

第 84 條(期間의 起算日) 이 規則에 의한 期間의 計算에는 初日을 算入한다.

第 85 條(規程等 制定) 議會는 이 規則 外에 다른 法令에 抵觸되지 아니하는 範圍안에서 議事에 관한 事項을 따로 定할 수 있다.

附 則

이 規則은 最初 集會日로부터 施行한다.

서울特別市西大門區議會請願審查規則

第 1 條(目的) 이 規則은 地方自治法施行令 第24條의 規定에 의하여 서울特別市西大門區議會(以下 “議會”라 한다)에 提出되는 請願의 效率的인 審査를 위하여 필요한 事項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 2 條(請願紹介書 等) ① 請願書에는 請願의 趣旨와 理由를 구체적으로 明示하여야 하며 필요한 參考資料를 添附할 수 있다.

② 請願書에 添附되는 紹介하는 議員의 紹介意見書는 別紙 第1號書式에 의한다.

第 3 條(不修理事項의 通知) 議長은 請願이 請願法 第5條, 第8條 및 地方自治法 第66條에 該當되어 修理하지 아니할 경우 그 事由를 明示하여 紹介議員과 請願人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第 4 條(異議申請) ① 請願人이 請原法 第8條 第1項의 規定에 該當되어 受理되지 아니한 境遇 請願人은 紹介議員을 經由하여 異議申請을 할 수 있다.

② 議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異議申請이 理由가 있다고 認定한 때에는 그 請願을 接受하여야 한다. 이 경우 議長은 그 請願을 回附할 所管 常任委員會 또는 第5條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特別委員會 委員長과 미리 協議하여야 한다.

第 5 條(請願의 回附와 審査) ① 議長은 請願을 接受한 때에는 請願要旨書를 作成하여 各 議員에게 印刷·配付하는 동시에 그 請願書를 所管常任委員會(以下 “委員會”라 한다)에 回附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認定될 경우에는 本會議의 議決을 얻어 請願 審査特別委員會(以下 “委員會”라 한다)를 構成, 回附한다.

② 請願要旨書에는 請願者의 住所, 姓名, 請願의 趣旨, 紹介議員의 姓名과 接受年月日을 記載한다.

③ 議長은 이미 設置된 委員會와 關聯이 있는 請願은 그 委員會에 回附할 수 있다.

④ 委員會는 請願의 回附日로부터 특별한 事由가 없는 한 閉會 期間을 除外하고 10

日 내에 審査結果를 議長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이 期間內에 請願의 審査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議長에게 中間報告를 하고 審査期間의 延長을 要求할 수 있다.

第 6 條(紹介議員의 趣旨說明) 請願을 紹介한 紹介議員은 所管委員會의 要求가 있을 경우에는 그 委員會에 出席하여 請願의 趣旨를 說明하여야 한다.

第 7 條(請願人 等 陳述) ① 委員會는 請願審査에 필요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請願人, 理解關係人 및 學識과 經驗이 있는자로부터 陳述을 들을 수 있다.

② 이 경우 請願人을 除外하고는 議員의 日費, 旅費支給 基準을 準用하여 旅費와 日費를 支給할 수 있다.

第 8 條(除斥과 忌避) ① 議員은 직접 理解關係가 있거나, 公正을 기할 수 없는 現저한 事由가 있는 경우에는 그 請願의 審査・議決에 參與할 수 없다.

② 本會議 또는 委員會는 第1項의 事由가 있다고 認定하는 때에는 그 議決로 當該 議員의 請願의 審査, 議決에 參與할 수 없게하고 다른 議員으로 하여금 審査, 議決하게 하여야 한다.

③ 第2項의 措置에 대하여 當該 議員의 異議가 있을 때에는 本會議가 議決하는 바에 의한다.

④ 第1項의 事由가 있는 議員은 本會議 또는 委員會의 許可를 받아 그 請願의 審査, 議決을 回避할 수 있다.

第 9 條(本會議에 附議하지 아니하는 請願) 委員會는 請願이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할 때에는 本會議에 附議하지 아니하기로 議決한다.

1. 國家機關이나 西大門區의 措置 또는 理解關係者間의 合議가 이미 完了되어 請願目的이 達成된 境遇

2. 請願의 趣旨는 理由가 있으나 豫算 事情 等 現實的으로 그 實現이 불가능한 境遇

3. 請願의 趣旨가 國家 및 西大門區의 施策에 어긋나는 등 妥當性이 없는 境遇

第 10 條(審査報告) ① 委員會에서 本會議에 附議할 필요가 없다고 議決한 請願은 그 審査結果를 議長에게 報告하고 議長은 請願人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다만 閉會 또는 休會中인 期間을 除外한 7日 以內에 議長 또는 在籍議員 3분의 1이상의 要求가 있을

때에는 그 議案을 本會議에 附議하여야 한다.

② 委員會가 請願을 本會議에 附議하기로 決定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議決하고 그에 따른 意見書를 添附하여 本會議에 報告한다.

1. 區廳長이 처리함이 妥當하다고 認定하는 請願
2. 議會에서 처리함이 妥當하다고 認定하는 請願

第 11 條(請願人에 대한 通知) 議長은 다음 各號의 事實을 請願人에게 通知한다.

1. 請願接受 및 本會議 또는 委員會에 回附
2. 委員會가 請願을 本會議에 附議할 필요가 없다고 議決하여 議長에게 審査報告한 때
3. 請願에 대한 本會議의 議決이 있을 때
4. 區廳長에게 移送한 請願에 대하여 그 處理結果 報告가 있을 때
5. 第10條 第2項 第2號에 該當하는 請願이 本會議에서 處理되었을 때

第 12 條(請願의 撤回) 請願人이 請願을 撤回하고자 할 때에는 撤回理由를 明記하고 請願人과 紹介議員이 署名 捺印을 한 別紙 第2號 書式의 請願 撤回要求書를 議長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請願人 또는 紹介議員이 다수일 경우에는 代表者와 代表紹介議員이 署名 捺印하여야 한다.

第 13 條(紹介의 撤回와 請願의 效力) 請願이 接受된 때에는 그 請願을 紹介한 議員이 紹介를 撤回하더라도 當該 請願의 效力에는 影響을 미치지 아니한다.

第 14 條(懲戒) 請願을 審査, 議決하는 議員이 第8條의 規定에 의한 除斥事由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回避하지 아니한 때에는 地方自治法 및 議會會議規則에 정하는 바에 따라 懲戒할 수 있다.

第 15 條(準用規定) 委員會의 構成, 運營등에 관하여 이 規則에서 정하지 않은 事項은 議會 委員會條例와 議會 會議規則을 準用한다.

附 則

이 規則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別紙 第1號 書式】

請 願 紹 介 意 見 書

請 願 件 名			
請 願 人	住 所：		
	姓 名：	住 民 登 録 番 號	
紹 介 議 員	印		
紹 介 年 月 日			
紹 介 意 見			

【別紙 第2號 書式】

請 願 撤 回 要 求 書

請 願 件 名			
請 願 人	住 所：		
	姓 名：	住 民 登 錄 番 號	
紹 介 議 員	印		
請 願 提 出 日 字		請 願 撤 回 日 字	
<u>撤回要求事由</u>			

서울特別市西大門區議會陳情書等處理에관한規程

第1條(目的) 이 規程은 서울特別市西大門區議會에 提出되는 陳情書 等を 迅速 正確히 處理하기 위하여 必要한 事項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定義) 이 規程에서 陳情書 等이라 함은 陳情人이 서울特別市西大門區議會 議長(以下 “議長”이라 한다), 서울特別市西大門區議會議員(以下 “議員”이라 한다) 및 서울特別市西大門區議會事務局長(以下 “事務局長”라 한다)에게 提出한 陳情書, 建議書, 歎願書, 問議書, 呼訴文 等(以下 “陳情書”라 한다)을 말한다.

第3條(接受) 서울特別市西大門區議會(以下 “議會”라 한다)에 提出되는 모든 陳情書는 事務局長이 接受한다.

第4條(處理 및 結果通知) 議長은 接受된 陳情書를 處理하고 그 處理結果를 陳情人에게 通知한다.

第5條(移送 및 處理報告) ① 議長은 서울特別市西大門區廳長(以下 “區廳長”이라 한다)이 處理함이 妥當하다고 認定되는 陳情書는 區廳長에게 移送한다.

② 區廳長은 第1項의 陳情書를 處理期間내에 處理하고 그 結果를 議長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第6條(不受理 事項) ① 陳情書의 內容이 다음 各 號의 1에 該當하는 때에는 이를 受理하지 아니한다.

1. 裁判에 干涉하는 事項
2. 國家元首를 모독하는 事項
3. 同一人이 同一한 內容의 陳情書를 2件 以上 提出하였을 때 後에 提出한 陳情書
4. 陳情人(多數인 境遇에는 그 代表者)의 住所, 姓名 및 陳情書의 內容이 分明하지 아니한 것

② 事務局長은 第1項 第1號 내지 第3號에 該當하는 陳情書에 대하여는 그 趣旨를 陳

情人에게 通知하며 第1項 第4號의 境遇에는 이를 廢棄한다.

第7條(內規等制定) 이 規程의 施行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議長이 따로 定할 수 있다.

附 則

이 規程은 1991年 4月 15日부터 施行한다.